

2026년도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지도정책분야**



경기도농업기술원

<http://nongup.gg.go.kr>

이 계획은 경기도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중장기계획 및 농촌진흥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조의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의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작성하여 시군농업 기술센터 및 지도부서에 송부하는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사업 중 세부 예산이나 지침이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공문을 통해 변경 내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지도부서에서는 본 실시계획에 의거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통 합 차 례

I. 농촌지도사업 기본방향	5
II. 2026년 중점추진 핵심사업	49
III. 2026년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61
• 지도정책분야	63
• 기술보급분야	269
• 농촌자원분야	805
 【 부 록 】	1087
I. 농촌지도사업 관련 법령 및 조례 현황	1091
1. 농촌진흥법	1093
2. 농촌진흥법 시행령	1099
3.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약칭: 4에이치법)	1104
4. 식물방역법	1105
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농어업인안전보험법)	1128

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도시농업법)	1134
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9
8.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41
9.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145
10.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50
1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53
12.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1156
13.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1158
14.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1185
15.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농업과학기술정보법)	1296
16. 경기도 농촌지도사업 관련 조례	1300

2026년도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변화의 중심
기획의 결기

농촌지도사업 기 본 방 향

I

I 농촌지도사업 기본방향

- ◆ 매년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신속한 기술보급을 위한 새기술시범 사업 및 시책사업과 교육훈련 등의 추진요령이 수록된 농촌지도사업 시행계획을 시달하여 사업추진 효과 제고
- ◆ 시군농촌진흥기관에서 도원 실시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농촌지도활동을 전개할 시군단위 실시계획 수립시 기본자료로 활용

□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조에 의거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의 추진계획이 포함된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신속한 보급
- 동법,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8528호, 2025. 7. 18., 일부개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 활동을 전개할 지방단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가에 신속하게 새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을 보급

□ 추진방향

- 2026년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 기본계획 총괄
-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목표 및 시책방향
-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
- 농업과학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등

□ 시군단위 2026년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수립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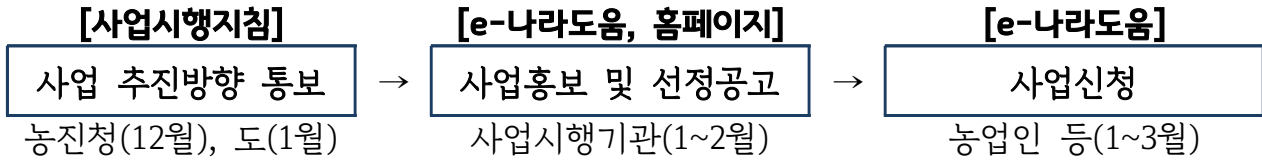
- 시군에서는 중앙, 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추진

□ 사업 추진 주요 일정

사업 신청 단계	사업 추진방향 통보	<농촌진흥청, 도> (12월~1월)	•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확정·공개
	↓		
	자체 사업계획 수립	<도, 시군> (12~1월)	• 사업 시행지침 확정·공개 및 사업 공고 - 필요시,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 선정 단계	사업 신청 및 접수	<시군> (1~2월)	• 사업신청[사업대상자→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시군> (사업연도 3월~)	• 서류·현장심사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을 거쳐 평가 • 사업대상자 통보[시군→보조사업자]
	↓		
사업 시행 단계	시행계획 수립 및 자금 교부	<보조사업자, 시군> (사업연도 3월~)	• 시행계획 수립[시군→도→농촌진흥청] • 보조금 교부[농촌진흥청→도→시군]
	↓		
	사업시행	<보조사업자, 시군> (사업연도 3월~)	• 관련 법에 따른 물품구입 및 설치·시공 등 추진
	↓		
	준공검사 등 사업완료	<시군>	•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군(검사)→도(보고)→농촌진흥청]
	↓		
사후 관리 단계	시범사업 성과평가	<도, 시군>	• 시범사업 투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체 확산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사업 관리 운영
	↓		
	사후관리	<도, 시군>	• 지자체 등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후관리 • 농업기술원은 이행점검

1. 2026년 사업시행 추진체계

□ 사업 신청단계



- 2026년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 시달: 농촌진흥청(12월), 도원(1월)
- 도원은 시군별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계획을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 부서장에게 통보
- 시군농업기술센터,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시군별 사업 물량 및 예산배정계획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 예산집행 등을 포함한 자체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시군농업기술센터, 일반시군은 수립된 세부추진 계획을 토대로 e-나라도움, 누리집 등에 사업 대상자 신청 홍보 및 공고(2026년 1월중)
 - 사업 수행부서에서는 적격 사업대상자가 다수 신청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세부과제별 신청홍보
 - 주요 공고내용: 사업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 ※ 2024.11월부터 사업대상자는 중앙에서 추진하는 국비보조금 관련 교육(신청일 기준 3년 이내)을 선정 심사전까지 미수료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안내 및 공고
 - 안내서 비치: 사업안내서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에 비치(필요시 읍·면·동사무소 등에 비치)
 - ※ 공고기간: 30일 이상(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
 - ※ 시군농업기술센터,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장은 사업추진이 심각하게 지연된 경우 사업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모바일 알림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홍보한 경우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을 공고할 때 사업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조회 또는 확인이 가능할때는 사업 대상자가 별도 제출 하지 않도록 안내
 - 국비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대상자(농업인 등)는 사업 선정 전 반드시 중앙 국고보조금 이해 및 실천과정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사업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국고보조금 교육 이수 의무화

- 교육대상 : 민간보조사업 참여 희망자(농업인, 법인, 생산자 조직 등)
- 교육방법
 - ① (개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온라인(e-러닝) 개별교육
 - 과정명: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및 실천사항
 - 방법: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누리집>온라인교육>농업기술교육>과정명
 - ② (집합) 지방농촌진흥기관이 개설한 집합(또는 동영상 등) 교육
- 실적반영 : 수료실적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신청일 기준 3년간 유효
 -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청한 농업인에 대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수료시 사업선정 심사전까지 수료하도록 안내
 - ※ 단지 또는 법인 등의 경우 대표자만 수료로도 인정, 추가모집은 선정이후 수료 가능
 - ※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전까지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 국비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 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장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제24조~31조)에 관한 지침 준수(15일 이상 접수기간 부여, 중요재산 등록 등)
 - ※ 제출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사업자 대상자

- 농업인(농업인 단체 및 생산자 조직, 마을, 단지 등은 대표자 기준) 또는 법인 등은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
 - ※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정보취약계층의 보조금통합관리망 이용지원 규정을 참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7조)
-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하여 예치형으로 집행·정산 등 보조금 관련 사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 신청 전 농촌진흥청 국고보조금 관리와 관련한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조사업 선정 심사 전 농촌진흥청과 사업수행기관에서 개설한 보조금 교육을 이수하고 발급받은 수료증을 첨부하여 사업 신청
 - 사업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 권장

- 기술보급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현장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개발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 ※ 시범사업 대상지를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또는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우선 선정 사업대상자 요건
 - GAP·친환경 인증 등 안전농산물 생산 실천의지가 높은 단체
 - ICT 및 노지·시설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의 효과 증대를 위해 청년 농업인, 스마트강소농 교육 이수자 등 기술 숙련도가 높은 농업인
 - ※ 첨단농업 기술 등 젊은 세대의 수요가 높은 스마트팜 등 사업은 청년농업인, 스마트 강소농 교육 이수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최근 개발된(10년 이내) 국내육성 품종의 확대 보급에 추진 의지가 높은 농업인, 단체 등
 - ※ 국내 종자자급(보급)률이 낮은 채소·과수분야의 시범사업은 국내육성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가점 부여 또는 우선 선정
 - 지원대상 과제와 연관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자, 농산물소득조사 또는 농가경영기록장 작성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 과수 화상병 발생으로 폐원한 경영체와 과원에 대해 사업공고일로부터 재식재가 가능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 과수 국내육성품종 보급사업은 무병묘목 구입이 원칙(단, 해당 작물의 품종 식재시 무병묘목이 없는 경우 예외로 인정)
 - ※ 시설물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낙뢰 등 피해에 대비(권장)
 - 농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경영체
 - ※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은 이수증(교육명, 주관기관, 교육시간, 성명, 이수일자 기재 필수)을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로 제출
 - ※ 농가 안전교육 이수 교육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농업교육 포털(농정원),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산업안전보건공단)
- 본 사업은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개별 사업의 세부지침에 따라 대상자(사업 신청 시 단체 설립일, 구성원, 인원 등을 확인), 지원범위 등 선정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참고

농작업 안전교육 이수 관련 교육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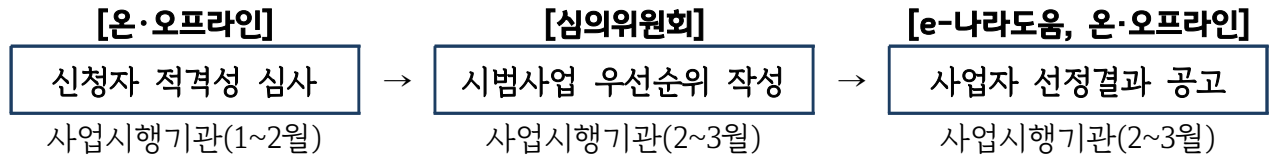
교육기관	교육대상/시기	주요 교육과정		이수증 발급 방법
관할 지방농촌진흥기관	· 대상: 농업인·농업근로자 · 시기: 관할지역 상이	대면 교육	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교육 종료 후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
			②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 실무 교육	
			③ 농업기계 순회·임대 교육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농진청)	· 대상: 농업인·농업근로자 · 시기: 상시학습+정규과정 (기간제)	온라인 교육	④ (e-러닝) 농작업 재해의 특성과 관리	‘나의 강의실 → 완료된 과정’에서 출력 가능 (http://rda.go.kr)
			⑤ (e-러닝)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 사업*연계	
			⑥ (e-러닝) 농작업 안전 지침 재설정	
농업교육포털 (농정원)	· 대상: 지역농업인·농업근로자 · 시기: 정규과정(공지기간), 공개과정(연중)	온라인 교육	⑦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	나의 강의실 → 학습종료 과정→ 수료증 출력/다운로드 (https://agriedu.net)
			⑧ 농기계 안전교육	
			⑨ 농업인 안전교육	

※ 기타인정 :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문화의 이해 등)

- 동일한 교육(과정)이 아니라도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기술 등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군농업기술센터 판단하에 우선 대상자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시범사업 참여농가 사전교육 시 농작업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시범농가의 농작업 안전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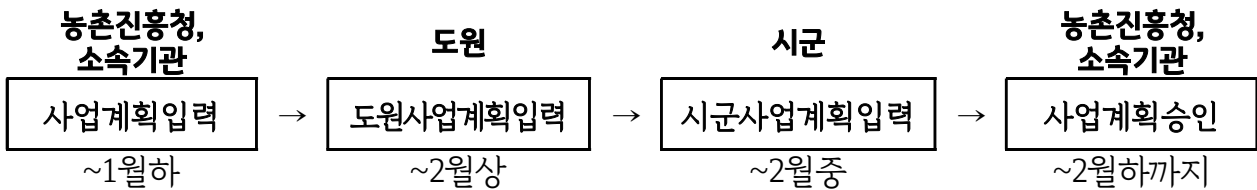
※ 농작업 안전교육 참여농업인은 이수증을 발급하여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망
(할인율 : 농업인안전보험 5%, 농기계종합보험 3%)

□ 사업자 선정단계



- 농촌진흥청 및 도원은 신기술보급사업에 대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ASTIS) 입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 등록과 분기별 실적, 결과 보고 등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ASTIS 지도사업계획 입력 및 승인 일정]



※ 입력, 승인 일정은 별도 수립한 세부계획 또는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도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심사를 하되,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의 평가에 의하여 사업대상자 선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8항 각 호에 따른 중복·편중지원 방지, 유사자금 지원여부 등 검토 및 확인, 제8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56조 제4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기술수요와 사업의 추진의욕이 높으나, 영농기반이 취약한 청년에 대한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중앙에서 제공하는 ‘신기술보급사업 대상자 선정 표준심사표’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추진
- ※ 반영 내용, 점수 등 반영 범위는 사업시행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2인 이상 현장조사 및 평가 실시
- ※ 현장조사 사진첨부 등 공정성 확보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 등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 및 의결요청
-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 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 여부, 지원 제외대상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업관련 기관, 대출취급 기관 등의 사업검토 의견을 수렴 반영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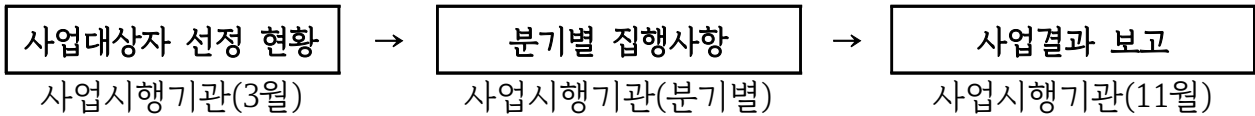
- 신기술 실증시험 사업장을 인근농가 교육장으로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업대상자 중 해당 사업과 연관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자를 우선 선정
 - ※ 재해보험 가입 신청기간이 아닐 경우, 사업 선정 후에도 사업대상자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단,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작목이 없는 경우 예외)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신청서 등을 심의
 - ※ 사업특성상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판단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추후 산학협동심의회에 통보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관외경작자가 사업 지원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농지 등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적인 지원 제한 금지
 - ※ 관외경작자가 신청제한, 선정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도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는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산학협동심의회 등에 상정하여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 부서장은 당해연도 3월 이전에 사업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확정하여 e-나라도움에 사업자 선정결과를 공고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를 활용하여 농업기술원장에게 제출 후 농업기술원장은 타당성 검토 후 농촌진흥청장에게 승인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대상자에 대해 탈락한 사유에 대하여 우편 또는 전화 등을 활용하여 안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설치 및 운영기준

- 근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제30368호, 2020. 1. 29., 일부개정)
- 위원회 구성(시군 기준): 20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
 - 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 위원: 해당지역 농학계열 대학교수, 시군 농업관련 담당공무원, 농업단체대표, 선도 농업인 등
- 주요기능: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 후계 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과 시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등
-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위촉시 행정·지도·학계 등 폭넓은 대상자를 위촉 (농업인학습단체, 퇴직농촌진흥공무원, 농촌진흥청 지역담당관 활용 등)
- ☞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에서 제척

□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국비사업]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입력 / [도비사업] 공문제출



※ 사업결과(분기별) 보고는 세부사업별 별도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경우 해당 기한 준용

- 농업기술원장은 필요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시범요인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군 사업시행기관은 조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농업기술원장,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 부서장은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 농업인에게 통보하고 보조금 신청·교부조건, 집행 절차 등의 관련 사항에 대해 반드시 교육 실시
 - 보조금 교부조건에 교육장 활용 의무화와 시범사업 위험요인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시범농가는 사전에 안내한 위험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 보조금 교부조건(예시)은 의무적으로 포함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6조제3항 [별지제7호서식]을 참조

-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 보조사업자가 업체와 계약(거래)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 준수 및 이해관계자와 거래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보조사업자는 해당사항을 반드시 준수

보조금 교부조건(예시)

1.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법, ○○○○시행령)과 ○○○○규정, ○○○○지침 등의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농촌진흥청장, 농업기술원장 승인없이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중요재산 범위 중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은 부기등기를 실시)
3. 다음의 경우 보조금 교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경우
 - 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 다. 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라.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농촌진흥청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3.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4.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집행 시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열 관계에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나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함
6. 보조사업자는 시범사업의 위험요인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시범사업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장 방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8. 보조사업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시범사업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시군농업기술센터,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 부서는 국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세부사업별 예산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정해진 기간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에 등록
-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부기등기제도에 관한 사항을 보조조건에 명시
 - ※ 부기등기제도에 대한 사업대상자에게 교육·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제도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시군농업기술센터,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 부서는 시범사업 효과와 목적 달성을 위해 보조사업자와 사업계획수립 지원·협의·조정 추진
- 사업의 관리책임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2조 제4항 별표3에 준하여 표찰(입간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신기술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 표찰(입간판) 설치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안전관리 또는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약용작물 등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제외 가능
- 사업대상 농가는 통보일로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사업시행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에 제출
- 사업대상 농가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관할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또는 사업 포기서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지 아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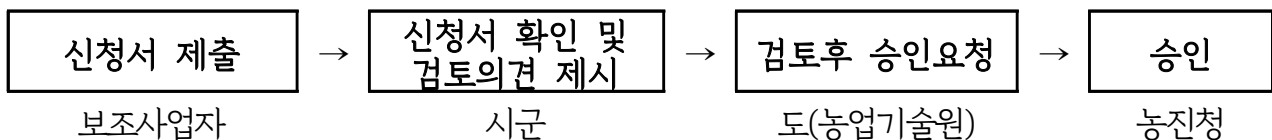
- 중대한 사항의 경우 시군은 도농업기술원으로 승인요청 공문을 시행, 농업기술원은 내용 검토 후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농촌진흥청 사업부서와 소속기관 기술지원과로 승인요청 공문 시행, 최종 검토 후 승인여부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사업부서에서 농업기술원으로 공문회신, 이후 시군에서는 보조사업자 결과통보

<도(농업기술원) 승인>

-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해당 지방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 내용 변경과 보조사업 소요 경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법’ 제14조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도)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도)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지 아니한다.
 - 시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변경요청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검토후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도농업기술원 해당 과로 승인요청 공문 시행, 도농업기술원 해당 부서에서는 최종 검토 후 승인여부에 대해 시군으로 공문회신, 이후 시군에서는 보조사업자 결과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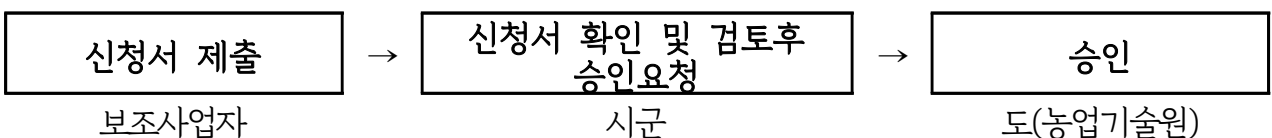
<농촌진흥사업 승인절차>

○ 국비 보조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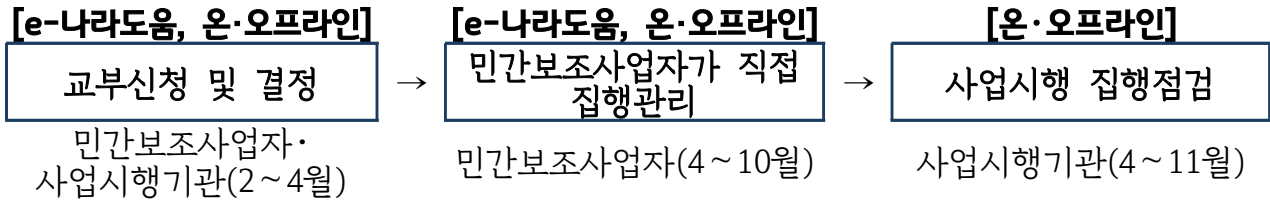
※ 결과통보 절차: 청 → 도 → 시군 → 신청인(보조사업자)

○ 도비 보조사업



※ 결과통보 절차: 도 → 시군 → 신청인(보조사업자)

□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농업기술원은 자금교부, 집행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추진하고, 사업진척도에 따른 보완 등 조치
- (교부·집행) 증빙자료 제출(보조금 전용 계좌·카드 사용, 전자증빙자료 e-나라도움 등록 후 지출) → 민간보조금 예탁 → e-나라도움 이용 직접 집행(계약, 집행정보등록, 지출 등)관리
 -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 전용 카드 등 국세청 등 중복지출 여부, 부적정 사용 검증 후 집행
 - 사업 예산 집행시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할 수 없음(농협 등)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제6항(예외사항 등 확인)
 - 시범사업으로 구매하는 시설, 장비, 농자재 등에 대해 보조사업자와 설치 업체간 표준계약서 작성하도록 안내
 - 스마트농업, 농산물 가공시설·장비 등은 2단계 검사(1차: 단순, 2차: 정밀)를 시행하여 설계서, 규격서(내역서) 기준 주요 부품들을 검사
 - ※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 자문을 통해 검수 추진

자재구입 및 설치·시공 시 유의사항

- 시군농업기술센터,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현장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를 확인
- 시군농업기술센터,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 부서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또는 사후관리 보증서 등을 확인
- 보조사업자 주관으로 시범사업에 투입된 시설·장비 설치 후 성능시험 등 작동여부를 추진하고 미비 사항은 보완 조치
- 시군농업기술센터,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 부서는 보조사업자의 성능시험 확인 등에 대해 검수 후 대금(잔금) 지급
- 주요 시범요인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일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공고일 이전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착수에서 완료기간까지 기술이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의 제품을 구입

- (계약 체결 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는 사업대상자의 추진상황에 따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 등의 절차에 의거 추진

제21조 보조금관련 계약 관련사항

- 민간보조사업자가 아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함.
 -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
 -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계약,
 -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계약,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그 밖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 ②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③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 체결
- ※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사업의 시급성,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되므로 사전에 지자체 예산부서 등과 협의 추진

- (모니터링) 온라인·오프라인 수시 점검(사업부서, 지자체)
 - 사업대상자 교육·기술지원,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수시 점검
 - 자금집행 적정, 위약,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 확인
- (내용변경)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실적보고서 제출 전 도→농촌진흥청 승인 필요
- (실적보고) 사업 완료시 실적보고(2개월 이내, 정산보고 포함)
- (잔액반납)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보조금 반납은 반드시 e-나라도움으로 민간보조사업자→시군→도원→농촌진흥청 반납
- (자금이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금지, 보조사업비의 이월 또는 재이월 시 농업기술원 사전협의 후 농촌진흥청 승인 필요

이월이 가능한 경우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재이월 불가)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경비(재이월 가능)
-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재이월 불가)
 - ※ 이월액 또는 재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

- 농업기술원장,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 부서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규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의 절차에 의거 추진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④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에 대한 시험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 보조금으로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는 반납하여야 하므로 보조사업 통장 개설 시 무이자 약정 금지
-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함(1사업 1계좌 원칙)
- 민간보조사업자는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과 설치전에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불성실한 업체에 대한 안전조치 마련
- 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보조금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시설·장비 구입과 설치계약 이행에 대해 불성실한 경우 계약이행 독려와 불이행시 계약취소·지체상여금 등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보조금 집행관련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특히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가족·임원 등 특수이해관계에 있는 업체와의 계약(거래), 사업계획(구입 물품, 시설·장비 등)의 변경, 세금계산서의 재발행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시행 기관과 사전 협의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e-나라도움, 오프라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민간보조사업자

[e-나라도움, 공문 등]

제출서류 확인 및
정산보고

사업시행기관

[e-나라도움 등 온·오프라인]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농업기술원장,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부서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 농가에 대해 핵심기술과 경영기록장 작성요령 등을 교육 및 현장기술 지원 실시

- 중앙단위 사업이행 및 점검 추진에 따라 시군에서는 자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사업 추진·예산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 확인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 부서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보조금법 등의 절차에 의거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 추진 중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의거 처리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②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③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농업기술원장,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 부서장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수행 여부를 확인
- (부가가치세 환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라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보조비율 만큼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목적 외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내역의 적합성 여부 등을 농업기술원 검토·승인 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정산보고서 검증) 보조사업 대상자(1개 단체)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국비 1억원 이상(지방비 제외)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후 제출
-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장 사후관리 제72조~제88조에 따라 관리하며, 보조사업 관련정보 대국민 공개(e-나라도움)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총액이 국비 1천만원(지방비 제외) 이상인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공시
 - ※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감사 지적사항, 재무재표 등
 - (중요재산) 부동산, 기계·장비 등 취득시 관련 정보 보고 및 공시
 - ※ 재산명, 목적·용도, 취득가액, 현재가액, 주소, 사진 등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규정 제77조)

- 민간보조사업자는 청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필요할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 ① 중요재산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환수명령된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환수한 경우
 - ②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청의 사업부서장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간주
 - ③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음). 다만 제2호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청의 사업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청 또는 농업기술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본 지침 내 농촌진흥사업 승인 절차를 따름

- 시군에서는 자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행 및 점검 실시
- 취득한 재산(부동산, 장비 등)는 기재부 재산등록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목록 제출(반기별) 및 사후관리 실시
- 기술보급사업으로 생산된 제품 관련 농촌진흥청 명칭 사용기준
 - 기술보급사업 수행을 포함하는 서술형 문장에서 기관명칭 사용 가능하며, 글자체, 글자크기, 글자색은 동일하게 표현
 - 농촌진흥청 CI나 농촌진흥청 기관명칭을 단독 사용하거나, 기관명칭을 부각하여 표현 불가
 - 날개 제품과 포장 용기에 각각 한군데씩 사용(위치는 자율)

사용 가능	사용 불가
◦ 기술보급사업 수행 사실을 포함하는 서술형 문장에서 기관명칭 사용 ◦ 글자체, 글자크기, 글자색은 동일 <예시> “본 제품은 농촌진흥청의 0000년 신기술보급사업(사업명) 수행으로 생산한 제품입니다”	◦ 농촌진흥청 CI, 기관명칭 단독 사용 ◦ 기관명칭을 부각하여 표현  농촌진흥청  RDA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사업수행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신기술보급사업 농촌진흥청

- 사업대상자는 농가경영기록장을 작성하고 사업완료시 해당 시군에 제시하며, 사업장 방문 농업인 등에 대해 사후관리기간 동안 작성·비치하고 기록장을 3년간 보관
- ※ 노지 등 기록장의 상시 비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교육 내용을 결과보고에 기재

참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카드 및 집행 제한 사항

□ 인건비 관리

- (중복인건비) 본 사업의 참여 인력을 명시하고 참여율(실 지급 급여를 100%로 하고 참여율관리)을 관리 하여야 하며, 타 사업과 참여율(실 지급 급여)의 합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 국비, 지방비, 연구비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 등

□ 용역 및 제화 계약 관리

- (계약)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계약을 우선으로 하고 공고문을 참고 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 (수의계약) 2,000만원(부가세 비포함)이하의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비교견적 등의 서류는 보조사업자가 직접 받아야 하며, 한거래처를 통해 일괄로 받거나 비교거래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한 거래처를 밀어주는 경우 등 부정한 거래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약금액을 환수 조치 할 수 있다.(예 : 휴업 또는 폐업업체, 무등록업체, 거래와 무관한 업종 등)
-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반드시 상위 보조사업자에 승인 받아서 계약절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조달을 통한 일반경쟁을 우선으로 한다.

※ 견적을 받을 경우 조달청 견적요청을 통한 견적을 우선으로 한다.

- (일반경쟁계약) 2,000만원 이상의 거래는 조달을 통한 일반경쟁을 우선으로 하며,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발생시 상위 보조사업자에게 지체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 계약금액에 따라 조달 입찰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시 계약금액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 가족간의 거래 및 특수 관계자 거래 불허

- (가족간의 거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 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담당부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특수관계자 거래) 보조사업자의 주주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담당부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성과측정 단계

-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으로 성과측정을 위한 보고 서식 등 제공
- 신기술확산면적 등 세부적인 성과측정을 위해 별도의 성과분석,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는 시범사업 효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사업효과로 인한 매출장부, 농가경영기록장 등을 작성·비치하고 보관
- 사업대상자는 시범사업 효과가 현장에서 활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추진

<신기술 실천면적 증가율 등>

- 전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과제 중 해당 기술요인을 당해년도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지방 사업으로 변화된 재배면적 등 성과
 - 조사기관 : 농촌진흥청 사업담당부서(도-시군 협조)
 - 조사시기 : 1 ~ 12월
 - 조사내용 : 개발기술 보급·확산을 통해 변화되는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수 등

<수혜자 만족도 조사>

- 시범사업 추진실태, 기술지도 서비스, 지원자금의 적정성 등 사업운영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농정현장 중심으로 시범사업 수혜농가 등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연중(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조사기관 : 농촌진흥청 사업담당부서(도-시군 협조)
 - 조사대상 :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등 세부사업별 참여농가
 - 조사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 사업담당자를 통한 설문(지) 조사
- ※ 수혜자만족도는 매년 개발되는 영농기술·정보의 현장만족도 조사와 병행 추진

<경제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성과분석>

- 기술보급사업 세부과제 중 종료과제를 중심으로 기술확산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등 사업 성과 측정
 - 조사시기 : 5~12월중
 - 조사대상 :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등 세부사업별 참여농가
 - 조사방법 : 외부 연구 용역
 - 주요내용 : 세부 과제별 기술 파급효과, 가치 평가 및 투자효과 등

□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환류단계

- 농촌진흥청은 사업완료 이후에도 사업관리와 성과분석을 위해 도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사업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한 사업효과나 보완 요인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 추진

<사업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에 상시적으로 등록·변경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 및 도원에서 시범사업 관련 정보와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사업평가>

가. 원 칙

- 세부사업별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편성 및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등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농촌진흥청 세부사업별 담당부서(도-시군협조)
- 평가기간: 11~12월 중
- 평가대상: 1년 이상 추진된 세부사업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 평가기준: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 시행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개최
 - 사업에 따라 인근농가와 대비하여 소득분석 실시
 - 인근농가의 기준: 동일지역내 동일작목, 유사규모, 유사작기 농가 중 해당 시범요인을 수용하지 않은 3농가 내외의 평균 경영성과
 - ※ 시범·인근농가 조사는 대표성 등을 고려 조사규모를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 가능
 - ※ 사업성격에 따라 인근농가와 대비가 어려울 경우 시범요인 투입 전과 후를 비교한 평균 경영성과로 분석 가능
 - 농가별 조사한 세부자료는 시·군센터에서 별도로 관리하여 보관

다. 보급실적 추적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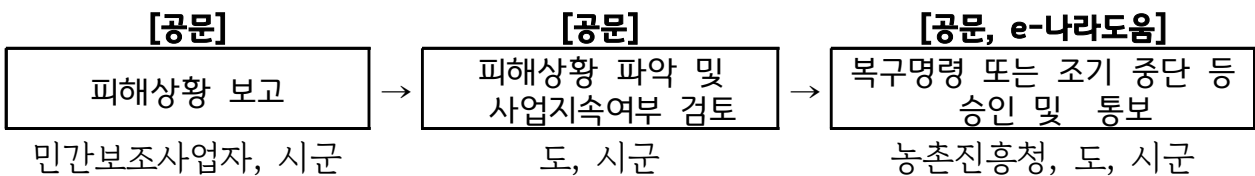
- 종료사업에 대한 성과 심층조사, 확산현황, 기술유지여부, 우수사례 등
 - ※ 별도 조사계획에 따라 추진

<성과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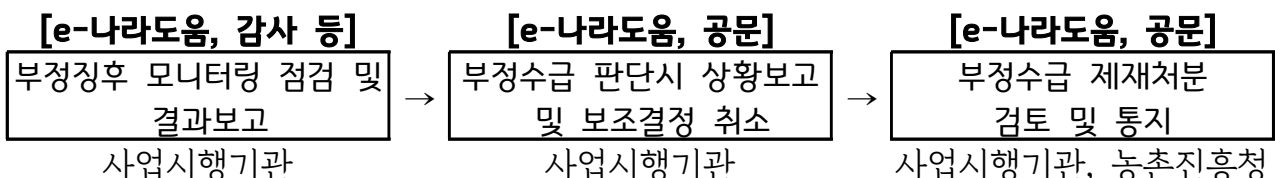
- 농촌진흥청 사업 담당부서의 자체 평가에 의해 세부사업별 성과 달성치가 낮게 나타나는 사업은 예산 삭감, 사업 폐지 등 구조조정 실시
 - 세부과제 중 보완되어야 할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기관·부서에 환류
 - 단위과제별, 분야별 현장 컨설팅·연시·평가회 등에 대한 계획·결과
 -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일반 시군은 국비 시범사업으로 도출된 정보를 수집·분석·가공하여 자체 시범사업으로 활용하거나, 행정기관·부서와 협력을 통해 정책사업으로 반영하여 확대 추진
- ※ 시범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기술 실천면적 증가율’을 측정하여 자체 사업확산 노력이 높은 시도(시군)은 사업 추가배정과 시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사업장 피해 또는 부정수급 등 발생 시 처리절차

- 농업재해 또는 화재 등 피해 발생시
 - 천재지변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청장 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사고(화재 등)의 경우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고의성 유무를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조기중단 등 조치
- 사업대상자는 시범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에 대해 사후관리 철저
- 사업대상자는 중요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 시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변동요인 보고



○ 부정수급 등 발생시 처리절차



붙임 1**ASTIS 시스템 및 e-나라 도움 활용 처리절차****□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용(ASTIS)**

농촌진흥청에서 구축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입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계획 등록과 분기별 실적, 결과보고 등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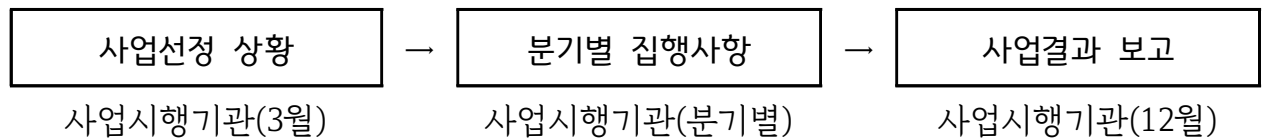
○ 지도사업계획 입력 및 승인

[ASTIS 지도사업계획 입력 및 승인 일정]



※ 입력 및 승인 일정은 별도 수립한 세부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활용(e-나라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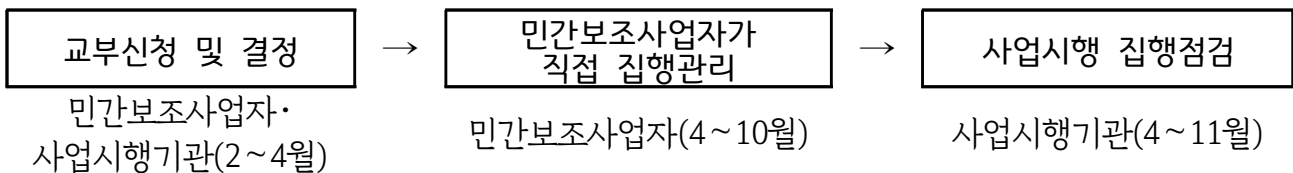
○ 내역사업 정보: 예치형

○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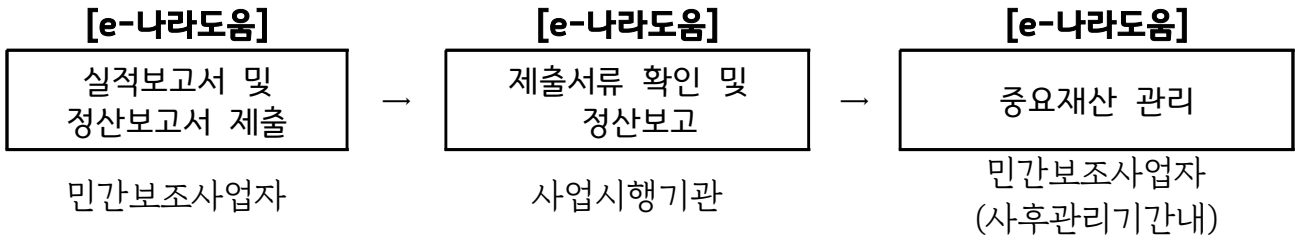
○ 사업대상자 선정·지원 시 관외경작자 제한 완화

- (관외경작자) 주거지는 A시에 있으나 경작지(토지)는 B시에 있는 농업인
- 2023년 국정감사(농식품부) 시 관외경작자 지원 제한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요구
- 관외경작자가 사업 지원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적인 지원 제한 금지

※ 필수 조치사항: 시군 사업담당자는 집행 내역 상시 점검 실시(매달)

- e나라도움 경로: 집행정산 → 정산관리 → 상시점검 → 점검대상사업 조회(상위) → 사업별집행내역조회 → 세부내역 검토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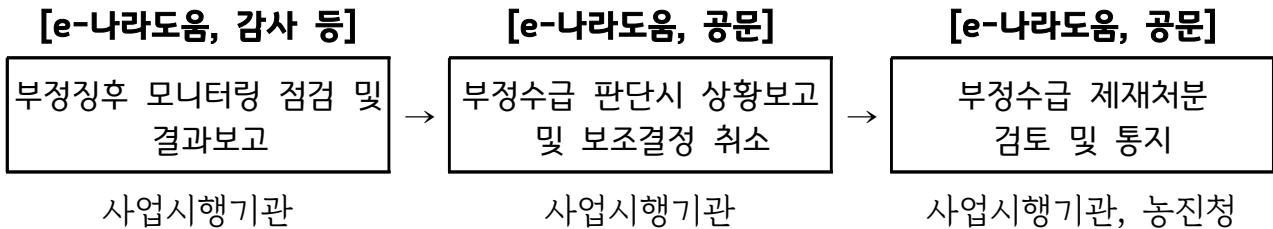


정산보고 검증대상 금액 → 1억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 ② 법 제27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 부정수급 등 발생시 처리절차(부정수급 발생시)



붙임 2 사업 대상자 선정 표준심사표(안)

구분	심의항목	배점
사업추진 기초역량	• 사업계획 및 기반 구축 정도 ※ 당해연도 사업 수행가능성, 절차지연 등 장애요인 해소정도	30
	• 시범요인 투입 기반 보유 정도 ※ 시범요인 투입에 필요한 작물, 시설 등 기술투입 용이성	
	• 보조금 통합관리망 이용 역량 ※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역량 정도	
시범요인 수행역량	• 해당분야 기술력 정도 ※ 관련분야 전문성 등 선도농가로 사업수행 정도	40
	• 사업이해도 및 추진 의지 ※ 시범요인 이해정도, 기술투입 활용 계획성 등	
	• 전문교육 수료 정도 ※ 해당분야 관련 교육 수료 횟수, 시간 등 평가	
	• 사업관리 역량 ※ 작물 및 사업장 관리 상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	
시범요인 확산역량	• 사업위치(접근성) 정도 ※ 시범농가로 현장 평가, 연사회 개최 등 접근성 판단	30
	• 해당 분야 선도농가 정도 ※ 관련분야 단체 활동, 주변농가 교육, 컨설팅 경험 등	
	• 기술확산 활동 수행 정도 ※ 정책참여, 기술보급 요청 수용 가능성, 주변농가 평판 등	
가점사항	• 청년농업인(만39세 이하) ※ 적용조건 : 영농경력 3년이상, 사업 후 취득재산보다 보유 기반이 많은 경우만 적용	10
	• 기술개발 및 현장실증 참여 ※ 해당기술 관련	10
제외요인	• 최근 5년간 유사지원사업으로 3회이상 지원받은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35조 관련) ※ 2회이상인 경우 평가실시, 3회이상인 경우 지원제외	회

※ 사업수행 대상자 선정기준은 참고안으로 해당사업·추진여건에 따라 적의조정 및 활용

※ 분야별 평가는 5점척도(매우높음 5점, 높음 4, 보통 3, 낮음 2, 매우낮음 1) 등 활용

붙임 3 표준 설치계약서(안)

【○○○시범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계약 당사자	신청자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시공 업체	(주)○○○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약 내용	공사명	○○○시범사업 ○○○설치공사					
	계약금액	일금 원(일금 원)					
	설치장소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완료기한	사업승인일로부터 ()일 이내					
본문 조항	제1조 (사전안내) ①“시공업체”는 “신청자”와의 계약 체결 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설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지원사업 공고, 지원설비, 설치장소, 사업비, 설비 설치·관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시공업체”에게 충분한 안내를 받은 후, “○○시범사업 안내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제2조 (사업의 준공) ①“시공업체”는 설치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 (이하 센터)”에 설치 확인을 요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자”와 “시공업체”는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신청자”와 “시공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센터”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해당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쌍방간 합의에 의해 “센터”에 사업포기 동의 및 신청을 한 경우						
	2.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제4조 (해석) 본 계약서 내용상 해석은 농업기술협력지원 사업공고, “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할 경우, “신청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 “시공업체”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하여야 한다.						

특약 조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시공업체”은 “신청자”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 부터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시공업체”의 하자 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시공업체”는 “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시공업체”가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 년 월 일 (신청자명) (서명) (설치업체명) (서명)	

붙임 4 시범사업 추진 절차별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항목	사전 확인 및 준수사항
사업선정	공고기간 준수	○ 공고기간 : 30일이상 ※ 사업추진이 심각하게 지연된 경우 사업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모바일알림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홍보한 경우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농업법인 지원요건 적합확인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적용
	사업지역 적정성	○ 대상 사업지역 담보설정 여부 (시설·장비 설치사업인 경우)
	사업대상이 단지인 경우	○ 대표자 소속을 단지명으로 명기 ※ 단지대표가 법인 대표인 경우 보조사업자에 법인표기 제외
사업비 집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취소	○ e-나라도움 부정징후 유형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신생기업 거래	
	보조사업자 가족간 거래	
	특정거래처 편중	
	동일거래처 분리, 세금계산서 발행	○ 보조사업 대표가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 업체와 거래 여부
	보조사업자가 실소유 거래처 거래	
	보조사업 종료 후 집행	○ e-나라도움 정산완료일 확인
점검·확인	물품구입 및 시설·장비설치	○ 당초 사업계획과 물량, 규격, 사양 등 확인
사후관리 (중요재산관리)	정보공시 확정	○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 정보공시
	중요재산 무단 담보제공	○ 사업자 변동여부 등 점검 확인
	중요재산 양도	
	휴·폐업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붙임 5 부정수급 유형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망 (수급자의 의도적 부정)	가족간거래	가족등록*채용 가족간거래
	공모	내부공모 외부공모
	임의처리	무단 담보
		무단 양도
		무단 임대
		무단 인출
		임의 사용
	허위	자부담금 대납
		가격부풀리기
		허위처리
부패 (행정담당자의 의도적 부정)	가족간거래	가족등록*채용 가족간거래
	공모	내부공모 외부공모
	임의처리	무단 담보
		무단 양도
		무단 임대
		무단 인출
		임의 사용
	허위	자부담금 대납
		가격부풀리기
		허위처리
수급자 오류 (수급자가 비의도로 부적정 수령)	증빙미비	전자세금계산서 미비 카드영수증 미비 기타 증빙
	중복처리	중복 등록 중복 신청 중복 증빙
	업무착오	규정 미숙
		절차 미숙
		사용 미숙
	관리미비	거래처 착오
		자격관리 미흡
		평가관리 미흡
		신청관리 미흡
		타당성 미검토
		과다 집행
		집행 오류
		정산 오류
행정 오류 (행정담당자 비의도 부적정 지급)	증빙미비	전자세금계산서 미비 카드영수증 미비 기타 증빙
	중복처리	중복 등록 중복 신청 중복 증빙
	업무착오	규정 미숙
		절차 미숙
		사용 미숙
	관리미비	거래처 착오
		자격관리 미흡
		평가관리 미흡
		신청관리 미흡
		타당성 미검토
		과다 집행
		집행 오류
		정산 오류
		분리 계약

붙임 6 청렴 이행서약서 작성예시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시(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사용에 있어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관할기관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관할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적,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제42조) >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40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제41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 행위를 한 자

(제42조)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국고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3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026. 00. 00.(월)

구분	소속	직위(급)	서명
보조사업자	○○○상호명	○○대표	○○○(서명)
보조사업 관리자	○○시군농업기술센터	○○○○팀장	○○○(서명)
보조사업 실무자	○○시군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	○○○(서명)

붙임 7 국비 신기술보급사업 데이터 연계 사업

- 국고보조 데이터 연계사업(참고)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농업기술센터와 보조사업자는 시범사업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공개에 협조
-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필요한 경우 사업별 세부 지침의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업비 총액 내에서 구입·설치 지원 가능
 - 시범요인에 명시된 데이터 수집 장비는 설치 필수, 수집방법 등 준수
 - (IoT 자동)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농촌진흥청의 데이터 수집 플랫폼으로 정보가 자동 송신되도록 우선 조치
 - ※ 플랫폼으로 자동 송신은 사전 신청 절차와 시스템 반영이 필요하므로 개별 사업별 담당자 연계 시점, 방법 등 사전 협의
 - (IoT 수동) 데이터의 자동 송신이 어려운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설치업체의 데이터 제공 안내 등 농촌진흥청으로 데이터가 수집 될 수 있도록 협조
 - (수기등록)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 조사항목 전반(생육정보, 재배 정보, 경영정보 등)을 농촌진흥청의 데이터 수집 플랫폼에 직접 등록 되도록 조치
 - 사업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는 사업 기간 내에 농촌진흥청의 데이터 수집 플랫폼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사업관리 부서는 데이터 연계 사업에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활용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수집데이터의 관리, 분석을 추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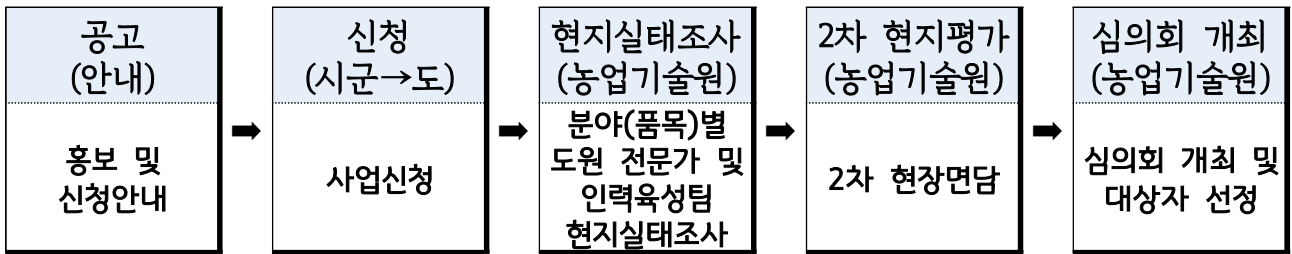
2026년 국고보조사업 데이터 연계사업 목록

연번	소관	사업명	조사항목	R&D 플랫폼연계 (자동, 수동)
1	농과원	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증대 기술 시범(신규)	수확량	수동(사업담당자)
2	농과원	사료곤충 동애등에 대량생산시스템 보급	먹이원량(kg), 온습도, 유충 수확량(kg)	수동(농업인)
3	농과원	시설과채류 결로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내부) 온습도, 이슬점, 과실온도, 광량 (외부) 온습도, 광량, 풍량, 풍속, 강우	자동
4	농과원	봄, 여름배추 저장기간 연장기술(CA 저장고 시범)	온도, 상대습도, 산소, 이산화탄소	자동
5	농과원	미세먼지 및 저일조대응 시설딸기 보광 기술 시범	광도, 습도, 온도	자동
6	농과원	누에 사육환경 개선 기술 시범	습도, 온도 등 환경개선 데이터	수동(사업담당자)
7	농과원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시범	수확량	수동(사업담당자)
8	농과원	극한폭염 온열질환 예방기술	온도, 습도 등 온열지수 관련 데이터	수동(사업담당자)
9	식량원	밥쌀용 고품질 신 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 시범	수량, 단백질함량, 밥맛선호도	수동(농가, 사업담당자)
10	식량원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조성	직파방법(직파량) 또는 재식밀도별 수량, 경제성	수동(농가, 사업담당자)
11	식량원	벼 수요자 참여 개발품종 조기확산 시범	수량, 단백질함량, 밥맛선호도	수동(농가, 사업담당자)
12	식량원	노동력 분산 및 생산비 절감 무쓰레질 재배단지 조성 시범	수량, 용수 이화학성	수동(농가, 사업담당자)
13	식량원	가루쌀 내수발아성 품종 대체 단지 조성	수량, 수발아율	수동(농가, 사업담당자)
14	식량원	탄소감축 논 물관리·깊이비료주기 시범단지 조성	수량, 양분함량변화	수동(농가, 사업담당자)
15	식량원	발작물 나방류 스마트트랩 무인예찰 시범	기상정보, 해충 포획량, 방제일자	자동, 수동(농가, 사업담당자)
16	식량원	기상정보 활용 노지 발작물자동관개 기술 시범	기상정보, 관수량, 수확량	자동, 수동(농가, 사업담당자)
17	식량원	배수불량 논콩 생산단지 왕겨충진형 땅속배수 기술 시범	토양수분, 기상정보, 수확량	수동(농가, 사업담당자)
18	식량원	정밀농업기반 밀-콩 작부체계보급 시범	재배 이력(파종, 수확)	수동(농가, 사업담당자)
19	식량원	노지 발작물 국산 지중점적 자동관개 시스템 보급	토양수분, 관수량, 수확량	수동(농가, 사업담당자)

연번	소관	사업명	조사항목	R&D 플랫폼연계 (자동, 수동)
20	원예원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 체계구축 시범	기상정보, 수확량, 생육조사	수동(농가, 사업담당자)
21	원예원	지황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온도, 습도, 수량	수동(사업담당자)
22	원예원	감귤원 원격방제기 활용 안전방제 기술 시범	방제 횟수	수동(사업담당자)
23	원예원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 시범	온도	수동(사업담당자)
24	원예원	저온성필름 이용 스마트 노지환경 조 절기술 시범	온도	수동(사업담당자)
25	원예원	사과원 저온피해 경감 통로형 온풍공 급 기술 시범	온도	수동(사업담당자)
26	원예원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 활용 기술 보급 시범	자원절감 효과(비료사용량, 농업용수량), 수량	수동(농가, 사업담당자)
27	원예원	채소 일사·강우 센서기반 스마트 관수 시스템 시범	토양습도, 관수량, 수량	수동(농가, 사업담당자)
28	원예원	시설원에 2세대 스마트팜 플랫폼 보급 시범	(외부) 온도, 상대습도, 일사량, 풍향, 풍속, 강우 (내부) 온도, 상대습도, CO ₂	자동
29	원예원	미래세대 대상 식물 활용기술 시범	미세먼지	수동(사업담당자)
30	축산원	모돈 체형 영상진단 기반 정밀 영양 공급 기술시범	모돈 사료섭취량	자동
31	축산원	인공지능 기반 모돈 비육돈 출하 선 별시스템 보급 시범	비육돈 체중	자동
32	축산원	인공지능기반 가축 이상징후 탐지시 스템 보급시범	이상징후(뒤집힘) 탐지 횟수	수동(사업담당자)
33	축산원	인공지능기반 모돈 임신진단 자동화 기술보급	임신진단횟수	자동
34	축산원	돈사냄새 모니터링 및 저감 기술보급 시범	암모니아, 황화수소	수동(사업담당자)
35	축산원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보급 시범	발정탐지횟수	자동

□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농촌지도자육성계정)사업

○ 사업추진체계



○ 사업 신청단계

- 도원은 사업별 물량 및 예산배정 계획을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 부서장에게 통보
- 시군농업기술센터, 일반 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시군별 사업물량과 예산배정 계획에 의거 사업대상자 추천

○ 사업자 선정단계

- 도원 품목전문가 및 인력육성팀 주관으로 심사를 하되,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와 농촌지도자육성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사업대상자 선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8항 각 호에 따른 중복·편중지원 방지, 유사자금 지원여부 등 검토·확인, 제8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56조 제4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현장조사 사진첨부 등 공정성 확보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증·검토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상정

※ 신청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 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업관련 기관 등의 사업검토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농촌지도자육성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신청서 등을 심의
- 농업기술원은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 부서장은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 농업인에게 통보하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조건, 집행 절차 등의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
- 사업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사업시행 계획서를 수립 하여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 부서에 제출

사업계획 수립 시 주의사항

- 신기술보급사업은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만 사업계획에 포함

※ 토지 매입비, 단순 농기계·시설 설치 등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비 편성 금지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 부서장은 사업 시행계획서 승인 후, 사업대상자가 영농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의 요청에 대하여 검토 후 도원에 보고하고, 농업 기술원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보고 후 승인
- 지원대상 사업자는 사업 신청서와 최종 확정 지원액 등을 근거로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자금교부) 농업농촌진흥기금(농촌지도자육성계정) 보조금 교부
- (모니터링) 온·오프라인 수시 점검(사업부서, 지자체)
 - 사업대상자 교육·기술지원,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수시 점검
 - 자금집행 적정, 위약,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 확인
- (실적보고) 사업 완료시 실적보고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 부서장은 사업 대상자의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규정 등의 절차에 의거 추진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 부서장은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과 경영기록장 작성요령 등을 교육하고 현장기술지원 실시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
- 농업기술원장,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시군 농촌지도사업 추진 부서장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수행 여부 확인

※ 사업 추진 중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의거 처리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②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③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를 해야 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림사업자금의 용도와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2. 2026년 농업 여건과 전망

□ 농가인구 감소·고령화 및 세대교체, 인공지능·디지털전환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요구

- 농촌인구 급감, 초고령화로 인해 기존 대면중심·생산기술 전달 위주 농촌지도사업은 한계 봉착

※ 道농가인구: ('10)135천명→('15)129천명→('20)109천명→('24)106천명

※ 65세 이상 고령화: ('02) 26.2% → ('22) 46.8% → ('32) 52.0%(전망)

-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의 디지털·인공지능화의 신속한 전향과 농업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확대, 청년 농업인구 유입 등을 위한 세대 통합형 농촌지도사업 모델 발굴 필요

※ 특정기업·플랫폼기업 등 민간영역 데이터 독점 가속화 대응 ASTIS 관리강화

※ 고령농·소농 등 기술격차가 심화되는 디지털 격차 최소화 모델발굴 필요

□ 농업 전반 인공지능 실용화 및 데이터 고도화에 따른 영농 의사결정 가속화

-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이 데이터로 연결되는 스마트 고도화 농장의 확산으로 농업인은 숙련된 경험 대신 AI가 제공 정보로 농업경영

※ 디지털·데이터로 무장한 숙련농업인 급부상에 의한 AI도입 방해요인 제거 필요

- AI가 단순 보조 도구를 넘어 영농 의사결정의 핵심주체로 전환 및 가속화 되고 있음에 따라 시대를 반영한 농촌지도사업 발굴 필요

※ 농업인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농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농업인 재해 예방과 안정적 영농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대책 강화

- 초고령화 및 노동 강도 강화로 인한 농작업 사고와 스트레스를 포함한 정신 건강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

※ 농작업 사망재해: ('20)252명→('22)253명→('24)297명

- 국정과제 수행 및 각종 농작업 사고예방 교육, 안전장비 보급 및 농작업 현장 안전을 위한 적극적 기술지원사업 추진

※ 사전진단(3~4월) → 개선활동(4~8월) → 사후평가(9월이후)

- 산업·농업계 전반의 안전 강화 국정 기조속 안전재해 예방과 농장 경영 안전 사이의 새로운 균형점 모색 필요

※ 5인 이상 농사업장(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24.1.)

□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한 농업기술혁신 요구 지속

- 국내 농업기술과 타 산업 기술격차, 기술개발과 현장 간의 괴리 존재
- 민간·대학 첨단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는 실증 중심 협업체계 필요
- 기후변화 등 병해충·생리장해·기상재해 발생 증가, 수급 안정 대책 필요

□ 농산물 수급안정, 탄소중립에 따른 환경보호와 프리미엄 농산물 소비 결정을 위한 농업가치 급부상

- 밭농업 기계화, 기후변화 등 농업현안과제 해결 시급
 - * 기계화율: ('20) 61.9% → ('22) 63.3 → ('26 목표) 77.5
- 대외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업인 등의 새로운 기술수요 증가추세
 - * 농업인의 디지털 정보화수준('24, 과기부): 종합 78.9, 접근 95.7, 역량 70.6, 활용 78.8
- 농업인의 혁신역량과 교육·네트워크 수준에 따라 확산경로 다양화 필요
 - * 확산경로 항목별 만족도(1순위): 농촌진흥기관-전문성, 대학-신뢰성, 농협-접근성

□ 치유농업의 관심 증대에 따른 확산 및 도시농업 활성화로 도민 행복 증진

- 치유농업의 정신건강 증진 기여 및 농업·농촌의 가치 증대
 - * 농업활동을 통한 신체활동 및 인적상호작용, 치유환경을 통해 치유효과 확인
 - 치유농업의 정신건강 증진 기여 가능성('24, 원예원): 87%(성인 남녀 506명 조사)
- 도민에게 농업과 농촌자원의 다원적 가치 확대 보급
 - * 도시농업인 전문능력 강화로 도시농업 참여 확대 및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확대 운영

□ 소셜미디어 중심의 농업정보 유통 환경 고착화

- 모바일·영상 기반 뉴스 소비 보편화로 소셜미디어가 주요 정보 전달창구로 기능
 - 알고리즘 기반 정보 노출 확대로 공공 농업정보의 신뢰성·정확성을 확보한 선제적 홍보 필요
 - * 농업정책, 기상·재해, 병해충, 농산물 수급 정보를 영상 중심으로 신속 제공 요구

□ SNS 활용 디지털 마케팅 활용 확대

- 숏폼 중심 디지털 홍보 및 소셜커머스 연계 확대
 - SNS가 홍보를 넘어 생산·유통·소비를 연결하는 채널로 확장됨에 따라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 중요성 증가
- AI 기반 맞춤형·체험형 농업 홍보 확대
 - AI 분석을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확대
 - AR·VR 등 체험형 콘텐츠 활용으로 농업기술 이해도 및 참여도 제고 필요

3. 농촌지도사업 기술보급 추진방향

□ 농업현장 중심 농촌지도 강화 기반 조성

- 농촌지도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및 협의회 지원: 8회 400명
-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추진 우수기관 평가 및 시상·홍보: 10개소
-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 지원: 12개시군 38개소
-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기술 중추기관으로 육성: 6개소 3,040백만원
- 농업인 교육 및 지도사업 활성화 장비 지원: 3종 282대 833백만원

□ 수요자 맞춤형 농촌진흥사업 우수사례 및 성과 홍보

-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온라인 홍보 강화: 1,200건
- 주요 연구·기술보급성과 다각적 집중 홍보: 183건
- 주요정책·성과홍보 기고문 확대 홍보: 25건
- 농업기술 우수사례 언론사 연계 기획연재
- 월간지 「경기농업+」 발간·농업정보 확산: 48천부(4,000부/월)
- 수요자 맞춤형 농촌진흥사업 사례 및 성과 홍보: 1종 250부

□ 미래후계인력 육성 및 농업인학습단체 자립역할 강화

- 청년농업인4-H회원 영농기반 조성: 3개사업 28개소
- 차세대 농업인재 학교4-H회 활성화 지원: 2개사업 69개소
- 농업인학습단체 자립역할 및 역량강화 교육 추진: 4개단체 28,654명

□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경기농업 경쟁력 제고

- 창의·혁신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교육 추진: 190명
- 농업기계 안전사용 및 전문인력 양성: 140명
- 성공적인 귀농창업을 위한 신규 인력 육성: 100명
- 기술보급 확산의 주체로서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개발: 300명

□ 기후변화·AI전환 대응 기술확산으로 식량작물 안정생산

- 기후변화 대응 지역맞춤형 식량작물 품종전환 지원: 23개소 10,356ha
- AI전환 대응 데이터 기반 농업기술 확산으로 안정생산 기반구축: 21개소 183ha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 13개소 76ha
-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지역전략작목 육성: 15작목 41개소

□ 최적 생산모델 적용을 통한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 경기도형 스마트팜 기술적립 및 및 플랫폼 서비스 제공: 16개소 6.4ha
- 저온, 폭염피해 등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기술 확산: 22개소 17.3ha
- 원예작물 물가안정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 41개소 70.1ha
-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과수연구회 육성 및 사과·배 품평회 추진: 2,142명

□ 디지털 과학기술 기반 축산·곤충산업 경쟁력 제고

- 인공지능(AI) 기반 가축관리 기술보급: 17종 21개소
- 국내육성 조사료 생산 및 가축 사양관리 기술 개선: 2개소 10ha
- 고품질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 12,800톤
- 소비자 참여 「곤충도슨트투어」 운영(4,000명) 및 판촉전, 기술교육 등 강화: 12회
- 양봉·양잠 스마트기술 보급과 전문교육으로 산업 활성화: 5종 8개소 300명

□ 농작물 병해충·기상재해 신속대응 및 과학영농서비스 강화

- 도·시군 합동 사전 정밀 예찰 강화 및 적기 방제지원: 10,735ha
-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운영으로 화상병 당일 진단 분석지원
- 규제병해충(과수화상병) 확산방지 공적방제 및 손실보상: 31.3억원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17개시군 1,580ha
- 기상관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노후 농업기상관측 최신화: 9개소
- 영농피해 예방 사전대응 영농종합상황실 운영: 도·시군 21개소
- 종합검정실 안전관리 컨설팅 및 담당자 전문 역량강화교육: 6회 200명

□ 농작물병해충 선제적 대응 및 과학영농지원 강화

- 돌발·외래 병해충 예찰방제 활동 지원: 5종 관찰포 170개소
- 친환경 병해충·시설재배 종합방제 지원: 2종 11개소
- 검역병해충 신속대응 및 공적방제 추진: 30개시군
- 영농철 미세먼지 저감,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 17개소
- 농산물안정생산을 위한 정밀·신속분석기반 고도화 지원: 9개소
- 분석 데이터 기반 농가 맞춤형 과학영농 서비스 안정 지원: 20개시군
- 시군 종합검정분야 업무담당자 전문역량 제고 교육: 6회 200명

□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기술 및 농작업 안전기반 구축

- (농산물가공) 농산물 가공 신기술 보급을 통한 안전한 가공제품 개발
 -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가공창업·보육 지원: 12시군
 - 특화작목 및 R&D기술 연계 가공제품 개발·상품화 시범: 2개소
 -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및 제품개발·상품화 시범: 8개소
 - 공동이용 가공장비·시설 개선 및 기반구축: 4개소
 -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창업 활성화 및 시설개선: 15개소
- (식문화·농촌노인) 농업·농촌 가치 활용 식문화·농촌노인 공동체 사업추진
 - 분야별·세대별 맞춤형 식문화 교육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실천: 18개소
 - 농촌노인 공동체 문화조성을 통한 소일거리 및 복지생활 실천: 1개소
- (농작업) 농업인의 안전의식 향상 및 재해예방 실천 생활화 확산
 - (보급)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현장 맞춤형 사업 추진: 8종 64개소
 - (교육) 농작업현장 위험성 분석 컨설팅 및 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 (협력) 민·관 협력 농업인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 치유-도시농업 융합 생태계 조성 및 도·농 협력 농업 모델 확산

○ (치유농업) 치유농업 서비스 확대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

-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1개소), 치유농장육성(20개소) 및 품질인증 지원(9개소)
-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65개소(유관기관 연계, 학교치유타발 조성 등)
- 맞춤형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 3과정(운영자교육 1, 심화교육 2)
- 경기도치유농업센터 전문프로그램 운영: 24회 240명(목적 영역별)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운영 및 관리: 4개기관(1급양성기관 지정예정)

○ (도시농업) 미래농업 환경 개선 및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 신기술 시범사업(1개소) 및 도시농업 육성 지원(2개사업 42개소)
- 도시농업전문가 현장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 운영
- 반려식물 병원 서비스 기반조성(1개소)

○ (교육농장)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농촌교육농장 품질 강화

- 농경문화 자원 활용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1개소)
-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사업(6개사업 13개소) 및 품질인증 농장 확대

□ 중소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역량강화 및 신제품 마케팅

○ (경영개선) 중소농업경영체 영농해로 해결, 경영개선 및 판로개척 지원

- 트렌트에 맞는 농가 경영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컨설팅 운영
- (역량강화교육) 생성형 AI활용, 온라인 마케팅 등 판로확대 교육
- (현장컨설팅) 분야별 전문가 활용 농업경영 애로해결 컨설팅 지원: 4명
- 온라인 마케팅 성과확대 및 우수사례 공유 경진대회 추진: 5개분야
- 중소농업경영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5개사업 28개소

○ (신제품) 신제품 및 농업인 가공제품 온라인 중심 판매 활성화 추진

- 신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온라인 판매기반 조성 및 판촉 지원
- 경기미 이해도 향상 및 소비촉진을 위한 경기미 소믈리에 교육 추진
- 소포장 쌀 선물 유통 및 로컬푸드 즉석도정 이용 활성화
- 농업인 가공 온라인 직접판매 고객확보 및 판매 활성화 지속 지원

4. 농촌지도사업의 비전과 목표

농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중점 추진 방향

- 지역농업 활성화 지원 및 전문 농업인 육성
- 지속 가능한 미래 대응 농업기술 보급 확산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치유농업 기술개발

주요 추진 과제

- ◇ 미래농업 변화 대응 농촌지도 기반 구축
- ◇ 청년농업인 4-H회원 육성 및 농업인학습단체 협업 강화
- ◇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경기농업 경쟁력 제고
- ◇ 기후변화·AI전환 대응 기술확산으로 식량작물 안정생산
- ◇ 최적 생산모델 적용을 통한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 ◇ 디지털 과학기술 기반 축산·곤충산업 경쟁력 제고
- ◇ 농작물 병해충·기상재해 신속대응 및 과학영농서비스 강화
- ◇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기술 및 농작업 안전기반 구축
- ◇ 치유농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 협력 농업 육성
- ◇ 중소농업경영체 경영개선 및 신품종 실용화 촉진

2026년도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변화의 중심
기획의 결기

2026년 중점추진 핵심사업

II

II 2026년 중점추진 핵심사업

1 미래농업 변화 대응 농촌지도 기반 구축

- ◇ 지역농업 여건에 맞는 지도기반 과학영농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 추진
- ◇ 농촌지도공무원 역량 강화로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

□ (농촌진흥기관) 기반조성 확대를 통해 과학영농 메카로 발돋움

- 농업체험 시스템 구축 등 농촌지도기반시설: 6개소 3,040백만원
 - ※ 지역농산물 소비 및 농업체험 시스템 구축(용인), 친환경미생물관 신축(평택), 농촌 지도활력화 종합기반 조성(양주), 스마트팜 종합영농시설 조성(안성)
- 현장지도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장비 지원: 3종 281대 833백만원
 - ※ 순회지도차량(16대), 교육홍보장비(235대), 실증시험포운영장비(30대)
- 현장 기술지원을 위한 스마트교육장 및 교육장비: 4개사업 186백만원
 - ※ 교육장 및 홍보 장비, 농업기계 교육장비(도원)

□ (평가역량개발) 농촌진흥사업평가 및 농촌지도공무원 역량향상 지원

- 농촌진흥사업평가 우수시군 지원: 10개시군 38백만원
-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역량강화 교육: 4회 400명 10백만원
- 시군농업기술센터 관리자 교육: 4회 400명 10백만원
-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전문지도연구회): 307명

□ (현장지원) 시군농업기술센터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 지원: 13개소 18.2백만원
- 농업인상담소 역할 강화 활동 지원: 12개시군 38개소 380백만원

2 청년농업인 육성(4-H) 및 농업인학습단체 협업 강화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및 학생4-H회원 농심함양 프로그램 운영
- ◇ 농업인학습단체와 협업 강화 및 사회공헌 활동 중점 추진

□ (4-H회) 차세대 농업인력 학생·청년농업인4-H회원 양성: 12개사업 126개소

- 학생4-H회원 농업가치 이해확산을 위한 생생농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지원, 경영·세무 교육 등 실무능력 역량강화
- 현역4-H회원 지도역량을 갖춘 육성(자원)지도자 육성 강화

□ (농촌지도사회) 탄소중립 실천운동 등 공익활동의 선도적 추진: 6개사업 91개소

- 새기술 현장접목 기술교육 등으로 지역농업 발전 주체로 육성
- 지역 농업인학습단체 탄소중립 실천운동 중추적 역할 수행

□ (생활개선회) 도농교류 및 농촌사회 활력화 주체로 육성: 6개사업 89개소

- 생활개선회원 재능활용, 봉사활동 등 5-S운동 중점 추진
- 농업·농촌의 성평등 교육 추진으로 농촌여성 권익향상

□ (농업전문경영인) 품목농업기술 및 경영노하우 확산: 4개사업 13개소

- 청년농업인, 귀농인 등에게 보유기술 및 경영사례 확산
-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선발: 10명 내외

□ (품목연구회) 품목별 자율적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 활동지원: 1개사업 28개소

- 도·시군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 및 활동사례 공유

3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경기농업 경쟁력 제고

- ◇ 창의·혁신 기술지원을 통한 전문 농업인 및 농촌진흥공무원 양성
- ◇ 새로운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신규농업인 양성

□ (농업인 교육)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농업기술 교육

- 경기농업대학: 농어촌체험지도사 배출 및 스마트농업 전문가 육성 2과정 50명
※ 체험전문가양성과(30명), 스마트농업과(20명)
- 경기농업학교: 최신 농업트렌드 확산을 위한 교육 4과정 150명
※ AI농업활용반(2기/40명), 스마트농업반(30명), 스마트농업 사후관리반(40명), 반려식물반(40명)
- 농업기계: 농작업기술 고도화에 따른 농업기계 교육 4과정 140명
※ 전문인력양성반(30명), 여성농업인 농업기계반(2기/20명), 정비기능반(14명), 운전기능반(2기/28명), 농작업활용반(3기/48명)
- 신규농업인: 귀농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영농기술 교육 3과정 100명
※ 귀농설계기초반(2기/40명), 귀농창업창업반(2기/40명), 기초영농기술반(1기/20명)

□ (공무원 교육) 농업기술 실무 및 직무 전문성 향상 교육 운영

- 전문역량 교육: 대상 및 분야별 공무원 능력배양 교육 4과정 300명
* 농업현장 문제해결 교육(2회/40명), 경력별(신규, 농업인상담소장) 역량강화 교육(4회/100명), 미래 대응 데이터 교육(3회/30명), 새해농업인실용교육(2회/130명)

□ (도·시군 협업)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 및 농업기계 장비 지원: 79개소

-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시군 농업인대학 지원: 17개소
- 품목별 농업전문교육 지원: 20개소
-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13개소 1,800명
-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 지원: 7개소 8대
- 농업기계 신기술 시범사업(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 5개소
- 귀농 실천 능력향상을 위한 신규농업인 교육 지원: 18개소 218명
※ 기초영농기술교육(10개소 204명), 현장실습교육(8개소 14명)

4 기후변화·AI전환 대응 기술확산으로 식량작물 안정생산

- ◇ 쌀산업 생태계 전환 및 정밀농업 도입으로 경기미 경쟁력 향상
- ◇ 노지 스마트기술 적용 및 밭작물 지역내 생산-소비모델 구축
- ◇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지역 전략작목 육성

□ (품종전환) 기후변화 대응 지역맞춤형 식량작물(벼·콩·옥수수 등) 품종전환 지원

- 재해 안전성이 약한 ‘추청’ 등 장기연용 벼 품종 전환: 용인 등 10시군 9,888ha
 - 지역 맞춤형 밭작물 생산-가공-소비모델 구축: 5개사업 168ha
 - 쌀산업 생태계 전환 경기미 프리미엄 단지 육성: 2개소 60ha
- ※ 주요품종: 벼(한가득, 수찬미, 해강 등), 밭작물[도담찰(찰옥수수), 호풍미(고구마), 선풍(콩), 아라리(팥), 하이찰(수수) 등]

□ (정밀농업) AI전환 대응 데이터 기반 농업기술 확산으로 안정생산 모델 구축

- 드론 영상활용 작황 예측 및 자율주행기술 적용 벼 정밀농업단지 조성: 5개소 130ha
- 지중점적 자동관배수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적용 밭작물 안정생산: 8개소 53ha
- 노동력 절감 기술을 통한 생산비 효율화로 안정생산 지원: 8개소 87ha

□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

- 논물관리, 마른논 썩레질 등 벼 온실가스 감축 기술보급: 4개소 55ha
-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경감기술 보급으로 토양환경 개선: 9개소 21ha

□ (기술확산)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지역전략작목 육성

- 지역전략작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모화현대화 기반조성: 3종 13시군 15작목
- 도·시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현장 컨설팅 및 기술자문: 84회

5 최적 생산모델 적용을 통한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 ◇ 이상기상 대응을 통한 원예작물 물가안정 기여
- ◇ 시설원예 및 노지과수 디지털 활용기술 현장 정착

□ (스마트팜) 경기도형 스마트팜 기술적립 및 플랫폼 서비스 제공

- 플랫폼 ‘아라운실’ 운영을 통한 지능형 앱 서비스 제공 등: 5개소 0.8ha
-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실현을 통한 최적 생육 환경조성: 11개소 5.6ha
- ※ 시설하우스 모니터링 및 자동제어 기술 확산: '25) 321호 → '26) 350호

□ (이상기상) 저온, 폭염피해 등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기술 확산

- 시설하우스 확산형 순환팬, 보광등, 기능성 피복재 활용 등: 9개소 4.3ha
- 과수 폭염대응 햇빛차단망, 방상팬, 미세살수, 비가림 시설 등: 13개소 13ha

□ (안정생산) 원예작물 물가안정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기술 보급

- 딸기 육묘, 공공급식용 과수생산, 수확 후 신선도 유지 등: 30개소 65ha
- 원예작물 국내육성 신품종 확대 재배: '25)430ha→'26)450(도내 재배면적의 11%)
- ※ 딸기(금실), 장미(핑크아미), 사과(감홍), 배(신화) 등 신품종 확대(11개소)

□ (연구회)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과수연구회 육성 및 사과·배 품평회

- 사과·배·포도·복숭아 연구연합회 육성(2,142명): 각 기술교육 2회 이상 운영
- ※ 우수 경기도과일 홍보 및 경쟁을 위한 품평회(11월): 80점(사과 40, 배 40)

6 디지털 과학기술 기반 축산·곤충산업 경쟁력 제고

- ◇ 축산분야 현안 해결 및 ICT 기술 활용 생산성 향상기반 구축
- ◇ 고품질 축산·곤충양봉·양잠 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향상 체계 구축

□ (축산기술) AI 활용 가축관리 기술보급 및 조사료 안정 생산

- 인공지능(AI) 기반 비육돈 출하 및 한우 수태율 향상기술 보급: 17종 21개소
- 국내육성 조사료 보급 및 논이용 연중 생산 체계 구축: 2개소 10ha
- 한우임신진단, 축사 유해가스 측정 등 친환경 축산물 관리실 운영: 15,000건

□ (유용미생물) 미생물 분야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

- 미생물 배양실 18개 시군 활용 고품질 유용 미생물 생산 공급: 12,500톤
- 미생물분야 과학영농시설 구축을 위한 장비 지원: 4종 5개소

□ (산업곤충) 곤충산업 저변 확대로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 육성

- 소비자 참여프로그램 『곤충도슨트 투어』 운영(4~6월, 10~11월): 4,000명
- 도내 우수 곤충생산물 판촉전 개최 및 곤충창업 현장기술교육 추진: 12회

□ (양봉·양잠) 스마트기술 보급과 전문교육을 통한 산업 활성화

- 스마트 농업기술 시범사업 추진으로 산업 활성화: 5종 8개소
-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반 확충을 위한 양봉농가 전문교육: 300명

7

농작물 병해충·기상재해 신속대응 및 과학영농서비스 강화

- ◇ 예찰-진단-방제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작물 병해충 신속대응
- ◇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과학영농서비스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병해충) 사전 예찰 강화를 통한 적기 방제로 병해충 확산 방지

- 도시군 예찰 방제단 운영을 통한 합동 사전 정밀 예찰: 32명 15회, 10,735ha
- 예찰포 및 관찰포 운영으로 병해충 조기 파악 및 적기 방제: 170개소, 방제비 31억원
-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운영으로 화상병 당일 진단 분석지원
- 규제병해충(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공적방제 및 손실보상: 31.3억원

□ (기상재해) 농업 기상환경 및 기상재해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17개시군 1,580ha
- 기상관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노후 농업기상관측기(aws) 최신화 추진: 9개소
- 영농피해 예방 사전대응 영농종합상황실 운영: 21개소(도1, 시군20)

□ (과학영농)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과학영농서비스 고도화 추진

- 과학영농 분석기반 확충에 따른 신속·정확한 분석체계 구축: 9개소
- 종합검정실 안전관리 컨설팅 및 담당자 전문 역량 강화교육: 6회

8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기술 및 농작업 안전기반 구축

◇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화 신기술 보급을 통한 농외소득 향상

◇ 농작업 안전의식 향상을 통한 안전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 (농산물가공) 농산물가공 신기술 보급을 통한 안전한 가공제품 개발

-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가공창업·보육 지원: 12시군
- 특허작목 및 R&D기술 연계 가공제품 개발상품화 시범: 2개소 1,200백만원
-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및 제품개발·상품화 시범: 8개소 350백만원
- 공동이용가공시설 시설개선 및 가공장비 구축: 4개소 280백만원
-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창업 활성화 및 시설개선: 15개소 570백만원

□ (식문화농촌노인) 농업농촌의 가치를 활용한 식문화 및 농촌노인 공동체 사업추진

- 우리 쌀·밀 소비 촉진 가공기술 교육: 18개소 890명 44백만원
- 한국형 식문화 계승 리더 전문역량 강화: 1개소 20백만원
- 농촌노인 공동체를 통한 소일거리 및 복지생활실천: 1개소 50백만원

□ (농작업) 농업인의 안전재해예방 역량강화 및 삶의 질 상향 지원

-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및 예방지원체계 구축: 24개소 816백만원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지원: 5개소 250백만원
- 농작업장 위험요소 개선 및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편의장비 보급: 10개소 500백만원
- 폭염대응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 24개소 554백만원
-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전문인력 양성 및 성과확산 지원: 80백만원
-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위원회 전문위원 업무협의회 추진

9 치유-도시농업 융합 생태계 조성 및 도·농 협력 모델 확산

- ◇ 치유농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체계 강화 및 치유농업 서비스 내실화
- ◇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농업 기반 구축, 교육농장 품질 강화 및 지역 활성화

□ (치유농업) 치유농업 서비스 확대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

-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 및 품질인증 지원 실시: 10개소 231백만원
 - ※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1개소),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지원사업(9개소)
- 치유농업시설 육성: 20개소 409백만원 ※ 농촌치유농장 육성사업(15개소)
-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65개소 450백만원
 - ※ 치유농업 복지화 사업지원: 18개소(요양원, 주간보호시설 등 찾아가는 교육)
 - ※ 학교 치유타발 조성: 11개소(교내 텃밭조성 및 농업활동 교육실시)
 - ※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 20개소(복지시설-농장연계)
 - ※ 경기도 꿈자람 치유타발 운영사업: 11개소(장애학생 대상 치유타발 프로그램)
 - ※ 녹색처방전 홍보 프로젝트 지원: 5개소(다양한 홍보매체 통한 치유농업 역할과 기능 홍보)
 - ※ 치유농업 전문인력 심화과정 교육: 2개과정(치유농업사,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기 교육생)
 -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운영관리: 2급 4개기관(한경대, 농협대, 성결대, 신한대) / 1급 1개기관 지정예정
- 경기도치유농업센터 전문프로그램(목적영역별) 운영: 24회 240명 6백만원

□ (도시농업) 미래농업 환경 개선 및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 미래세대 대상 식물 활용 기술 활용 공간 조성: 1개소
- 도시농업 육성 지원 시범사업(21개소) 및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21개소)
- 도시농업전문가 현장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 10회 250명
-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반려식물 병원 서비스 기반조성: 1개소

□ (교육농장)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농촌교육농장 품질 강화

- 농경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1개소
-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기반 조성사업: 2개사업 8개소
-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 활성화 및 확대 사업: 4개사업 5개소

10 중소농업경영체 경영개선 및 신제품 실용화 촉진

- ◇ 중소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상승 및 농가소득 증가 지원
- ◇ 최신 소비트렌드 및 농업인 생산자 역량 강화 마케팅 지원

□ (경영개선) 중소농업경영체 경영개선 및 판로개척 지원

- 트렌드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경영역량 강화 지원: 38백만원
 - ※ 중소농업경영체 대상 생성형 AI활용교육, 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 등
-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현장 중심 컨설팅 지원 활성화: 122백만원
 - ※ 분야별 전문가의 농업경영애로 해결을 위한 컨설팅제공(민간전문가 4명)
- 온라인 마케팅 성과 확산을 위한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10백만원
 - ※ 스마트경영, 스마트마케팅, AI활용 등 5개 분야
- 지속가능한 중소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 3개사업 19개소, 478백만원
 - ※ 농가 자체브랜드 제작, 농업경영개선 컨설팅, 시설개선 지원 등
- 농가 판로확대를 위한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2개사업 9개소, 294백만원
 - ※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컨설팅·교육 및 공유영상활용 공간설치

□ 신제품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인 가공제품 마케팅 지원

- (신제품) 유통 형태 다양화 및 소비촉진 지원: 90백만원
 - ※ 경기미 소믈리에 교육: 2회, 200명, 30백만원
 - ※ 신제품 쌀 등 온라인 판매촉진: 6개소, 30백만원
 - ※ 쌀 소포장 및 즉석도정 홍보: 2회, 30백만원
- (가공제품) 생산농가 직접판매 및 고객확보 지원: 10개소 190백만원
 - ※ 농업인 가공제품 마케팅 지원: 4개소, 100백만원

2026년도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변화의 중심
기획의 경기

2026년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지 도 정 책 분 야

지도정책분야 차례

1. 사업별 예산현황	67
2. 농촌지원 역량강화 및 기반조성	71
가. 농촌지도기반 조성	71
나. 농촌지도장비 지원(2-2단계 전환사업)	82
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88
라.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 지원	90
마.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	92
바. 농촌진흥사업 평가	94
3. 농업기술 홍보	96
가. 홍보 기반조성	96
나. 신문 및 홍보물 활용 정책 홍보	97
다. 방송 활용 농촌진흥사업 홍보	98
4. 농업전문인력 양성	99
가. 농촌지도자회 육성	101
1)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102
2)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 교육(기금사업)	104
3) 농촌지도자회원 활동지원사업(기금사업)	106
4) 농업인학습단체 경쟁력 제고사업(기금사업)	108
나. 농촌 여성지도자 육성	111
1)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기금사업)	112
2)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기금사업)	114
3)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돌봄 사업(기금사업)	116
4)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사업(기금사업)	118
5) 생활개선회 육성(비예산 사업)	120

다.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126
1) 농업전문경영인 선발	127
2) 농업전문경영인 활동보상금(기금사업)	131
3)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지원사업(기금사업)	132
4)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신기술보급사업(기금사업)	134
라. 4-H회 육성	137
1) 목적 및 추진방향	137
2) 지도 방향	138
3) 4-H회 가입 및 등록 절차	141
4) 4-H 및 청년농업인 주요 교육행사	141
5) 4-H육성 지원 사업	143
가) 농촌청소년 농촌민속문화계승 사업(도비)	143
나) 4-H회원 과제교육(도비)	145
다) 4-H회원 활동정보 지원(도비)	147
라)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국비)	149
마)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도비)	152
바) 청년농업인4-H회원 신규 영농정착 시범(도비)	155
사) 청년농업인4-H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시범(도비)	158
아)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162
5. 교육훈련 사업	169
가. 농업인대학 운영	169
나. 농업기술 전문교육	179
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194
라.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218
마. 농업 신기술 시범	222
바.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224
사. 신규농업인 영농기술향상	225

1. 사업별 예산현황

가. 지도기획 분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업비 (개소당)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대 상 시 군
합계	92	-	8,459	3,040	1,807.76	3,611.24	-	
농촌지도기반시설	6	500~ 3,000	6,080	3,040	540	2,500	-	용인,평택,양주,안성,도원2
농촌지도장비지원 (교육홍보장비, 순회지도차량, 실증시험포운정장비)	14	5.5~ 260	1,665	-	832.5	832.5	-	용인,화성,남양주,평택,파주,김포, 양주,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가평, 연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 지원	13	1.4	18.2	-	5.46	12.74	-	수원,용인,고양,화성,성남,남양주, 광주,양주,안성,양평,여주,가평,연천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 력화 사업	38	10	380	-	114	266	-	용인, 남양주3, 평택2, 파주6, 김포, 광주5, 이천2, 안성2, 포천2, 양평, 여주10, 가평3
농촌진흥사업 평가 우수시 군 지원	13	-	34	-	34	-	-	평가 실시 후 선정 - (농촌진흥사업평가 10개소, 농업인대학평가 3개소)
농촌지도공무원 교육	2	10	20	-	20	-	-	도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교육장 집기류) (홍보장비) (본관 홍보시스템 개선)	3	8.6 15.8 80	104.4	-	104.4	-	-	도원
농촌진흥사업 정보제공	2	5 128	133	-	133	-	-	도원
디지털 홍보 활성화	1	24.4	24.4	-	24.4	-	-	도원

나. 인력육성 분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개소)	사업비 (개소당)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대상시군
총 계		349	-	4,402.8	200	1,515.1	2,449.7	238	
공통	소 계	2	-	46	-	46	-	-	
	기금 운영비(기금)	1	-	10	-	10	-	-	도원
	농촌형 양성평등 교육	1	-	36	-	36	-	-	도원
농촌지도자회	소 계	91	-	1,087	-	347	740	-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기금)	1	-	20	-	20	-	-	도원
	농촌지도자 한마음 소통 기술연찬(기금)	1	-	10	-	10	-	-	도원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교육(기금)	29	2	58	-	17.4	40.6	-	28개 시군(수원, 부천, 의정부 제외 / 안성 2개소)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 사업(기금)	27	4~6	132	-	39.6	92.4	-	27개 시군(부천, 의정부, 광명, 과천 제외)
	농업인학습단체 경쟁력제고사업(기금)	4	50	200	-	60	140	-	평택, 김포, 양주, 여주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29	0.07	667	-	200	467	-	29개 시군(부천, 의정부 제외)
생활개선회	소 계	89	-	927	-	299.1	627.9	-	
	여성리더 양성지원(기금)	1	-	20	-	20	-	-	도원
	농촌여성 역량개발 연찬교육(기금)	1	-	10	-	10	-	-	도원
	생활개선회 학습활동지원(기금)	27	10	270	-	81	189	-	26개 시군(부천, 광명, 군포, 구리, 과천 제외 / 안성 2개소)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기금)	24	0.06	399	-	119.7	279.3	-	24개 시군(부천, 안양, 의정부, 광명, 군포, 구리, 과천 제외)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돌봄사업(기금)	10	10	100	-	30	70	-	수원, 용인, 파주, 김포, 양주,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사업 (기금)	26	4.5~6.5	128	-	38.4	89.6	-	26개 시군(부천, 광명, 군포, 구리, 과천 제외)
농업전문경영인	소 계	13	-	143.2	-	84.4	58.8	-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연찬교육(기금)	1	-	30	-	30	-	-	도원
	농업전문경영인 활동보상금(기금)	1	-	29.2	-	29.2	-	-	도원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지원사업(기금)	8	3	24	-	7.2	16.8	-	용인, 고양, 화성, 김포, 양주, 이천, 포천, 여주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신기술보급사업(기금)	3	20	60	-	18	42	-	화성, 이천, 여주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업비 (개소당)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대 상 시 군
4 - H 회	소 계	126	-	2,143.6	200	721.8	983.8	238	
	4-H회원 교육	1	-	15	-	15	-	-	도원
	4-H지도자 양성교육	1	-	20	-	20	-	-	도원
	4-H 경진대회	1	-	30	-	30	-	-	도원
	4-H리더 양성 지원	1	-	32	-	32	-	-	도원
	4-H회원 역량강화 지원	1	-	44	-	44	-	-	도원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2	200	400	200	100	100	-	이천, 여주
	농촌청소년 농촌민속문화 계승사업	6	5	30	-	9	21	-	화성, 성남, 남양주, 평택, 광주, 포천
	4-H회원 과제교육	63	5	315	-	94.5	220.5	-	수원3, 용인, 고양, 화성5, 성남3, 남양주4, 안산4, 평택3, 시흥2, 파주, 김포4, 의정부, 광주5, 양주4, 오산, 이천3, 안성5, 포천4, 양평, 여주4, 가평2, 연천2
	4-H회원 활동정보 지원	22	1.08~5.4	67.6	-	20.3	47.3	-	수원52, 용인100, 고양60, 화성130, 성남38, 남양주70, 안산45, 평택100, 시흥36, 파주60, 김포50, 광주90, 양주100, 오산38, 이천135, 안성120, 의왕27, 포천100, 양평130, 여주100, 가평60, 연천50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6	100	600	-	180	300	120	용인, 화성, 파주, 김포2, 양평
	청년농업인4-H회원 신규 영농정착 시범	15	30	450	-	135	225	90	용인,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김포, 광주, 양주,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청년농업인4-H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7	20	140	-	42	70	28	화성, 안산, 평택, 김포, 광주, 여주, 가평
비밀리에 관리되는 정보	소 계	28	-	56	-	16.8	39.2	-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지원(기금)	28	2	56	-	16.8	39.2	-	수원2,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남양주, 안산, 평택, 시흥, 파주, 김포3, 의정부, 광주, 양주, 오산, 안성5,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다. 농업교육 분야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개소)	사업비 (개소당)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대상시군
합 계			1,724.7	765	493.65	466.05	-	
경기농업대학 및 경기농업학교 운영	1	125	125	9.5	115.5	-	-	도원
농업인대학 운영	17	15~31	363	181.5	90.75	90.75	-	용인(24), 고양(20), 화성(24), 남양주(20), 안산(17), 평택(18), 파주(18), 김포(17), 광주(18), 양주(26), 이천(26), 안성(16), 포천(31), 양평(25), 여주(22), 가평(26), 연천(15)
농업기술 전문교육	20	3~34	286	143	71.5	71.5	-	수원(14), 용인(16), 고양(10), 화성(25), 성남(3), 남양주(13), 안산(9), 평택(13), 시흥(13), 파주(11), 김포(14), 광주(10), 양주(24), 이천(12), 안성(12), 포천(12), 양평(34), 여주(16), 가평(14), 연천(11)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1	24	24	12	12	-	-	도원(50)
농업기계 교육	1	-	44.7	-	44.7	-	-	도원(90)
농업기계 안전 및 현장실무교육	13	6	108	54	16.2	37.8	-	수원(100), 용인(100), 남양주(200), 파주(100), 김포(200), 광주(100), 이천(100), 안성(500), 포천(100), 여주(100), 양평(100), 가평(100), 연천(100)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7	20~60	270	135	40.5	94.5	-	용인(1), 김포(1), 이천(1), 포천(1), 여주(1), 가평(1), 연천(2)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 보급	5	50	250	125	-	125	-	화성(1), 평택(1), 시흥(1), 이천(1), 연천(1)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개발교육	1	30	30	-	30	-	-	도원
농촌지도공무원 직무향상 전문연수	1	14	14	-	14	-	-	도원(6개월~1명)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11	5~24	126	63	37.5	25.5	-	수원(16), 화성(30), 남양주(14), 평택(20), 파주(14), 양주(10), 안성(30), 포천(25), 여주(25), 연천(20), 도원(48)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8	6	84	42	21	21	-	화성(1), 평택(2), 김포(1), 양주(1), 이천(4), 포천(1), 여주(1), 연천(3)

2. 농촌지원 역량강화 및 기반조성

가. 농촌지도기반 조성

* 이 사업에 대한 해석기관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이광빈 · 지방농촌지도사 황범익 031-8008-9383)입니다.

□ 목 적

- 일선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기술개발 촉진과 신기술 보급을 위한 기반 시설 지원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역 농업기술 보급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
- 지역농업 여건에 적합한 교육 시설 지원으로 전문 농업기술 지도체제 확립과 신속한 기술 지원하여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 추진

□ 추진방향

-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기반 조성 시설 설치 지원
- 과학영농시설, 농업인 교육시설 지원으로 효율적인 지도사업 추진

□ 근거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농촌진흥법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및 제25조(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추진계획

- 예산내역

(단위 : 개,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지원금액(국비)
농촌지도기반 조성	계	6	3,040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역자율계정)	6	3,040

- 사업내용

- 지도기반시설: 과학영농종합시설, 교육시설, 종합검정실, 실증포장, 미생물배양시설, 실습체험시설 등

* 타 부처나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추진할 수 없음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사업수행 주체: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지방자치단체)
- 사업비 집행절차: 농촌진흥청 → 도 농업기술원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 * 보조비율에 의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지방비 추가 예산 확보 사업 추진
- 예산편성 과목: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시설부대비(401-03)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진시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실시설계, 사업발주 *3억이상 시설 전년도 설계 완료												
○ 지도기반시설 설치												

□ 기대효과

- 지역 농촌진흥기관의 과학영농종합시설, 시험 포장 등을 지역 농업인의 영농 현장 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업인 기술수준 향상 추진
- 농업인의 효율적인 상담과 신속한 기술지원으로 지도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 구축
- 지도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근무 환경 개선으로 현장 지도 활동 강화

□ 사업·예산집행 관리

- 사업 목적과 무관한 사업비는 집행 불가(부지매입, 사무용 집기, 비품, 실험용 재료, 인건비, 운영경비 등은 집행 불가)
-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등 중간진도 관리 실시(분기별 진도관리 계획 수립 추진)
-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한 집행 관리와 함께 상반기 미착공 시군(예산 5억원 이상)과 이월액 5억원 이상 시군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특별 관리
- 1/4분기에 발주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 자체 점검계획(분기별)을 수립 현장지도 점검 실시
-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은 세목조정,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집행잔액(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중앙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추진(제4호 서식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
 - * 절차: 시군센터(제5호 서식 작성, 공문 요청)→도원(검토 후 공문 요청) → 농촌진흥청(검토 후 도원 및 센터에 승인내역 통보)
 - * 감사 등에 지적되지 않도록 변경 승인 여부는 중앙 담당자와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추경 예산편성 감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승인 요청
 - * 승인 대상: 사업자체 변경, 시설 준공 후 또는 장비 집행 후 낙찰차액 사용
(단, 준공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당초 예산 범위내 사업비 증감은 승인 대상 아님, 일상감사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후 사업 실시)
- 취득한 재산(부동산 등)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재산등록) 입력 등 사후관리 실시
- 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기한 내에 보수완료하여 관리 추진

□ 예산 편성 착안사항

- 당 회계년도 집행 불가 시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편성 요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만 예산신청을 하고, 다년차 사업은 연차별·공정별 소요금액만 편성
 - * 다년차 시설사업의 경우 설계비(1년차) 반영 후 공사비(2~3년차) 편성
 - * 10억원이상 사업은 반드시 연부를 적용
 - 예) 1년차 20%(설계비, 기초공사), 2년차 60%(본공사), 3년차 20%(마무리)
- 지도기반 집행 우수기관 선정 예산배정 인센티브 부여
 - * 우수농촌진흥기관 평가 시 가점(7점) 부여, 국비 예산배정 인센티브(10~15%)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 받거나 집행부진으로 이월액이 발생 또는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집행율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예산 편성 시 패널티 부과('27년 예산편성부터 적용)
 - * 사업포기 및 당해연도 예산 집행률 0%: 해당 시군 지도기반 신규사업 제한(3년)
 - * 예산현액(이월포함) 집행률 10% 미만: 해당 시군 지도기반 신규사업 제한(2년)
 - * 연례적 집행부진(현액기준 40% 미만): 국비 예산배정 패널티(10% 감액), 우수농촌진흥기관 후보 배제
- 사전 행정절차(부지확보,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결정, 공유재산취득심의, 중기지방재정 및 투융자심사, 3억원 이상 국비 지원 사업은 설계 완료 또는 설계예산 반영)를 완료한 경우 예산 반영

□ 지원(배정) 기준

- 균형발전특별회계(시·도자율편성사업)로 시·도에서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지원 규모 결정

□ 시군별 지원내역

- 농촌지도기반시설: 5개소 6개사업 6,08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교육·홍보시설 환경개선(기술원-지도정책과) : 80백만원
 - 디지털농업 첨단온실 개선 공사(기술원-지도정책과) : 1,000백만원
 - 지역농산물 소비 및 농업체험 시스템 구축(용인) : 500백만원
 - 친환경미생물관 신축(평택) : 500백만원
 - 농촌지도활력화 종합기반 조성(양주) : 3,000백만원
 - 스마트팜 종합영농시설 조성사업(안성) : 1,000백만원

□ 행정사항: ASTIS 활용, e-나라도움 활용

- 행정절차이행 점검: '26. 2월부터 매월 5일(별도서식)
- 중기사업계획('28~'32) 제출: '26. 11. 20.(별도서식)
- 사업추진계획 보고: '26. 2. 20까지 (자체 계획, ASTIS에 첨부된 서식 활용)
- 사업비 집행현황 보고: '26. 2월부터 매월 5일, 전월말 기준(별도서식)
- 사업추진 결과 보고: '26. 12. 31.(제1호, 제2호, 제3호)

참고 1

지역별 지도기반시설 사업내용

○ 지역자율계정

(단위: 개소, 국비, 백만원)

시도	시군	사업량 사업비 (국비)	계	과업 종합 농업 시설	교 육 시 설	종 합 검정실	실 증 포 장	미생물 배양 시설	농산물 가공 시설	실 습 체 시	습 체 시	기 타
경기	소계	사업량	6	1	3			1		1		
		사업비	3,040	1,500	1,040			250		250		
	기술원	사업량	2		2							
		사업비	540		540							
	용인시	사업량	1							1		
		사업비	250							250		
	평택시	사업량	1					1				
		사업비	250					250				
	양주시	사업량	1	1								
		사업비	1,500	1,500								
	안성시	사업량	1		1							
		사업비	500		500							

참고 2

지역별 지도기반시설 세부사업 내용

○ 기반시설(지역자율계정)

(단위: 백만원, 국비기준)

시도	시군	사업명	위치	사업량	예산 (국비)	유형 (번호)
경기	소계	5개소 6개사업		6	3,040	
	기술원	교육·홍보시설 환경개선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1	40	2
		디지털농업 첨단온실 개선 공사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1	500	2
	용인시	지역농산물 소비 및 농업체험 시스템 구축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80-1	1	250	7
	평택시	친환경미생물관 신축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58	1	250	5
	양주시	농촌지도활력화 종합기반 조성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682 일원	1	1,500	1
	안성시	스마트팜 종합영농시설 조성사업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975-5 일원	1	500	2

※ 유형: 1 과학영농종합시설, 2 교육시설, 3 종합검정실, 4 실증포장, 5 미생물배양시설, 6 농산물가공시설, 7 실습체험시설, 8 기타(위 유형 미포함)

참고 3

시군농업기술센터 주요 과학영농시설 현황('25년 12월 현재)

(단위: m²)

구분 시군명	청사 건축 년도	친환경 농업 관리실	미생물 배양실	병해충 예찰실	농업 안전성 분석실	쌀품질 분석실	친환경 축산 관리실	조식 배양실	생활 과학 실습실	식품 가공 연구실	신기술 실증 시험포	농기계 공작실	전산 교육장	농업 전시관	식물 전시장 (체감장)
계	-	3,039.96	13,210.13	663.8	2,929.67	561.39	1,735.5	1,975	3,335.3	7,504.66	132,667.5	22,214.9	938	7,128.8	224,208.4
수원시 (5)	2004년	39.6	79.2	-	-	-	-	-	118.8	-	-	153.9	-	-	3,175.4
용인시 (13)	1999년	138	499	43	66	-	66	26	159	634	2,569	330	43	1,424	127,055
고양시 (13)	1999년	233	264	25 (쌀품질실험 합)	98	25	264 (미생물실험 합)	-	74	793	2,250	2,154	60	766	1,790
화성시 (13)	2020년	223	346	82	223	86.79	131	67	256	329	19,717	1,990	68	1,814	-
성남시 (2)	2024 (임시청사)	44	-	-	-	-	-	-	104.5	-	-	-	-	-	-
남양주시 (11)	1996년	80	260	11.5	188	-	-	-	82	101	525	1,636	69	1,814	28,089
안산시 (4)	2008년	97	520	50	-	-	-	-	136	-	-	-	-	-	-
평택시 (12)	1997년	99	120	27	137	58	164	-	-	876	3,933	3,119	100	660	880
시흥시 (6)	2011년	124	-	54 (친환경 관리실 통합)	-	-	-	-	148	138	41,197	-	-	-	59,823
파주시 (9)	2007년	193	928	-	135	66	-	-	230	474	2,786	2,750	-	430	-
김포시 (8)	2006	105	390	18	500	74	264 (미생물실험 통합)	150	-	-	4,018	-	-	-	-
광주시 (6)	1992년	132	483	56	156	-	-	-	-	-	-	230	-	-	714
양주시 (9)	1995	139	734	40	44	-	48	376	165	-	639	-	72	-	-
이천시 (12)	1990년	197	755	4.3	216	64	17	-	312	2,295	31,722	5,192	30	-	1,650
안성시 (10)	1992년	175	817.4	42	227	33	82	-	275	48.95	998	-	83	-	-
포천시 (9)	1996년	270	4274	72	-	10	16.5	-	-	-	2,637	660	115	144	-
양평군 (11)	2001년	335.36	984.53	-	331.67	42	72	96	356	721	4,619	1,269	-	76.8	-
여주시 (11)	1994년	203	692	90	190	68	330	1260	592	498.71	247.5	658	-	-	-
가평군 (12)	1997년	116	449	28	342	9	66	-	159	116	2,310	1,967	214	-	1,032
연천군 (11)	1992년	97	615 (축산관리실 통합)	21	76	25.6	215 (미생물실험 공동운영)	-	168	480	12,500	106	84	-	-

○ 근무인원(일반직-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직-무기직, 기간제, 기타-시간선택, 용역 등)

(단위: 명)

구분 시군명	계	친환경 농업 관리직	미생물 배양직	병해충 예찰직	농업 안전성 분석직	쌀품질 분석직	친환경 산림 관리직	조식 배양직	생물 활용 실습직	식물 가 연구직	신기술 실험직	농기계 공작직	전교 육장	농업 전시관	식물 전시장 (체험장)
계	421	66	63	6	43	9	9	11	10	47	44	77	5	5	27
수원시	무기계약 기간제1	무기계약1	무기계약2	-	-	-	-	-	-	-	-	-	-	-	기간제1
용인시	전문경력관 시간제5 무기계약20 기간제16	무기계약3 기간제1	무기계약3	-	시간제3 무기계약2	-	-	무기계약1	-	시간제2 무기계약2 기간제2	무기계약2	전문경력관1 무기계약1 기간제3	무기계약1	-	무기계약5 기간제10
고양시	전문경력관2 무기계약2 용역3 기간제2 임기제5 기타2	무기계약1 용역1	무기계약1 용역1	-	전문경력관1 임기제1 용역2	용역1	-	-	-	임기제1 용역1	용역2	전문경력관1 임기제2 용역1	기간제1	임기제1 기간제1 용역1 기타2	용역3
화성시	시간제10 무기계약3 임기제1 기간제13 단기2	시간제1 무기계약2 기간제2	무기계약2 기간제1	무기계약1	시간제1 무기계약1 임기제1 기간제2	시간제1	시간제1	시간제2	시간제1 무기계약1	시간제1 무기계약1	무기계약2 기간제8 단기2	시간제2 무기계약2	무기계약1	-	-
성남시	무기계약3	무기계약1	-	-	-	-	-	-	무기계약2	-	-	-	-	-	-
남양주시	임기제1 시간제5 무기계약11 기간제1	무기계약2	무기계약2 시간제1	-	임기제1 시간제1 무기계약1	-	-	-	-	-	기간제1	무기계약5 시간제3	-	-	무기계약1
안산시	무기계약3	무기계약1	무기계약1	-	-	-	-	-	무기계약1	-	-	-	-	-	-
평택시	무기계약8 기간제2 시간제7 무기계약5 용역2	무기계약3	무기계약3	-	전문경력관1	무기계약1	-	-	-	전문경력관1 시간제1 기간제1	무기계약1 기간제2 용역2	시간제4 기간제3	기간제1	-	-
시흥시	시간제3	시간제1	-	-	-	-	-	-	-	시간제1	-	-	-	-	시간제1
파주시	전문경력관1 임기제1 시간제9 무기계약6 기간제11	무기계약2 기간제3	무기계약2 시간제2	-	전문경력관1 임기제1	-	-	-	기간제1	시간제2 기간제1	시간제1 무기계약2	시간제4 기간제6	-	-	-
김포시	무기계약4 기간제1 시간제1	무기계약1 기간제1	무기계약1	-	시간제1	-	-	무기계약1	-	-	무기계약1	-	-	-	-
광주시	임기제1 시간제2 무기계약2 기간제3	무기계약1 기간제2	임기제1 무기계약2 기간제2	기간제1	시간제1 기간제1	-	-	-	-	-	-	시간제1	-	-	기간제2
양주시	임기제1 무기계약8 기간제2	무기계약2	무기계약3	무기계약1	임기제1 무기계약1	-	-	무기계약1 기간제1	-	-	기간제1	-	-	-	-
이천시	임기제1 무기계약8 기간제15 시간제4	임기제1 무기계약2 기간제2	무기계약4 기간제2	-	무기계약1 기간제3	무기계약1	-	-	기간제1	무기계약3 기간제5 시간제2	무기계약1 기간제2	무기계약4 시간제2	-	-	무기계약2
안성시	전문경력관1 임기제4 공무직5 기간제6	임기제2 공무직1 기간제2	임기제6	-	전문경력관1 임기제2 기간제1	임기제1 기간제2	공무직1 기간제1	-	공무직1	임기제3	공무직1	-	공무직1	-	-
포천시	무기계약2 기간제12 임기제4	무기계약1 기간제4	무기계약1 기간제2	기간제1	-	-	-	-	-	-	기간제5	임기제4	-	-	-
양평군	임기제5 시간제5 무기계약20 기간제8	무기계약7 기간제1	시간제1 무기계약1 기간제3	-	시간제1 무기계약2 기간제1	-	무기계약1	무기계약1	무기계약1	임기제2 무기계약2	임기제1 기간제1	임기제2 시간제3 무기계약5 기간제2	-	-	-
여주시	전문경력관1 임기제6 무기계약17 기간제15	임기제1 무기계약1 기간제3	임기제1 무기계약1 기간제2	-	무기계약1 기간제2	임기제1 기간제1	무기계약1 기간제2	무기계약2 기간제2	기간제1	임기제2 기간제1	-	전문경력관1 임기제1 무기계약1 기간제1	-	-	-
가평군	임기제3 시간제4 무기계약11 기간제6	시간제1 무기계약2	시간제1 무기계약4 기간제2	-	시간제1 무기계약1	-	무기계약1	-	-	시간제1 무기계약2 기간제2	임기제1	임기제2 기간제2	-	-	무기계약1
연천군	전문경력관1 임기제3 무기계약11 기간제13	무기계약1 기간제1	무기계약1 기간제2	기간제2	전문경력관1	-	기간제1	-	-	임기제2 무기계약1 기간제3	무기계약3	임기제1 무기계약3 기간제4	-	-	-

【제1호 서식】

〇〇년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추진결과

(단위: 천원, %)

시도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이월 및 불용사유 (구체적으로)
	예산액 (A)	교부액 (B)	지방비액 (C)	전년도 이월액 (D)		예산 현액 (E =B+D)	집행액 (F)	다음 연도 이월액 (G)	불용액 (H)	실집행율 (F/E)	
				00년	00년						
합계											
기술원											
00시											

※ 본 서식(총괄표)은 엑셀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시설·장비 구분없이 총괄로 작성)

□ 지도기반시설

- 총사업비: 천원(국비 , 지방비)
 - 집행액:
- 사업기간: '00. 0. 0 ~ '00. 0. 0
- 주요사업내용
 - 과학영농종합시설 0, 교육시설 0, 종합검정실, 실증포장 0, 미생물배양시설 0 등
- 집행내역

(단위: 천원)

시군	사업명	주요사업 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기술원		·위치: ·면적: ·주요내용 - -									
00시											

□ 사업추진상 문제점

< 00시 >

- 과학영농종합시설(리모델링 및 증축 → 신축) 및 설치 예정부지 군관리 계획 결정(변경) 용역 추진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

□ 애로 및 건의사항(개선사항)

< 00시 >

○

□ 주요성과(수치화 기재)

<00시>

○ 미생물 배양시설 건립으로 미생물 공급능력 확대로 수요 대처

- 미생물 생산 80 → 200톤, 공급농가 900 → 1,300 농가

□ 성과지표 [**성과지표는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는 지표 임(실적증빙자료 구비)]

1) 사업참여 방문자 증가율

구 분	실 적				측정산식	비고
	구분	사업추진년도 방문자 수	전년도 방문자 수	증가율 (%)	*기반조성 사업을 수행한 농촌지도 기관에 대한 농업인 방문자 증가율 *산출식 {(사업 추진 년도 방문자 수 - 전년도 방문자 수) /전년도 방문자수}×100	
방문자 ¹⁾ 증가율 (%)	기술원					
	00시					
	00시					
	00시					
	계					

□ 사업추진 전·후 사진 등

0000사업(00시)	0000사업(00군)

1) 지도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한 도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자 수

【제2호 서식】

(이월사업)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추진결과

【00시】

□ 지도기반시설

- 총사업비: 원(국비 , 지방비)
- 2024년 이월사업: 원(국비 , 지방비)
- 2023년 이월사업: 원(국비 , 지방비)
- 공사기간: ○○. ○. ○○ ~ ○○. ○. ○
- 사업규모: 00개소
- 과학영농종합시설 0, 교육시설 0, 종합검정실 0, 실증포장 0, 기타 0
- 집행내역

(단위: 천원)

연도	시군	사업명	주요사업 내용	이월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가솔원		·위치: ·사업비: ·면적: ·주요내용 · ·									
	00시											

※ 전년도 이월사업에 한하여 작성(당년도 이월사업 제외)

□ 주요성과(수치화 기재)

<00시>

- 미생물 배양시설 건립으로 미생물 공급능력 확대로 수요 대처
- 미생물 생산 80 → 200톤, 공급농가 900 → 1,300 농가

□ 사업추진 전·후 사진 등

0000사업(00시)	0000사업(00군)

【제3호 서식】

'00년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이월 사업조서

【00시】

□ 사업비 이월내역

(단위 : 국비기준, 원)

연도	시군명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이월액 D	불용액 E=C-D
		총계					

※ 본지의 기재는 '26.12.31일 현재 '27년도로 이월한 사업은 모두 작성(예산편성 연도와 관계없이)

※ 연도는 최초 예산 반영한 연도를 기재, 예산액은 당년도 예산액(전년도 이월사업은 이월한 금액이 예산액임)

※ 이월액은 '26.12.31현재 '27년도로 이월한 금액 기재

□ 이월사유(구체적 작성)

○

○

□ 그동안 추진사항(구체적 작성)

○

○

□ 향후 집행계획(일정 구체적 작성)

○

○

【제4호 서식】

0000 사업변경 계획

□ 사업개요

【당초사업】* 사업계획, 추진사항(사업명, 위치, 사업량, 금액 등)

-
-

【변경후 사업】* 사업내용 자세히 기재(사업명, 장비명, 사업량, 금액 등)

-
-

□ 사업변경 내역

구분	당 초(국비, 천원)		변 경(국비, 천원)			비고
	사업내용	예산액	사업내역	예산액	증감	
00도 (00시)	(지도기반조성) ○사업명 -	250,000	(지도기반조성) ○사업명 -	203,587	△46,413	○ 보조비율 -국비 50%, -지방비 50%
			(지도기반조성) ○사업명 -	46,413	46,413	

□ 변경사유(필요성)

-
-

□ 향후계획(구체적 일정 기재) *집행일정 등

- 발주예정: 00년 0월 0한
- 준 공 일: 00년 0월 0한

나. 농촌지도장비 지원(2-2단계 전환사업)

* 이 사업에 대한 해석기관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이광빈·지방농촌지도사 황범익 031-8008-9383)입니다.

□ 목 적

- 일선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기술개발 촉진과 신기술 보급을 위한 장비 지원으로 농업 기술센터를 지역 농업기술 보급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
- 지역농업 여건에 적합한 장비 지원으로 전문 농업기술 지도체제 확립과 신속한 기술 지원으로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지도 장비 현대화를 위한 노후 장비 교체 및 보완
- 기술정보 제공, 교육, 홍보 강화 및 실증시험포운영을 위한 최신 장비 지원

□ 근거법령

-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농촌진흥사업 지원)

□ 추진계획

- 예산내역

(단위 : 대,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지원금액(도비)
농촌지도장비 지원	계	281	832,515
	교육홍보장비	16	199,326
	순회지도차량	235	407,870
	실증시험포운영장비	30	225,319

- 사업내용

- 농촌지도장비: 교육용차량, 교육용장비, 실증시험포운영장비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사업수행 주체: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비 집행절차: 도 농업기술원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지원조건: 도비 50%, 시군비 50%
- 예산편성 과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상반기 내 장비를 구입하여 활용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진시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지도장비 구입·설치												

□ 기대효과

- 농업인의 효율적인 상담과 신속한 기술지원으로 지도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 구축
- 지도장비의 현대화로 신기술·정보의 신속 확산

□ 사업·예산집행 관리

- 사업 목적과 무관한 사업비는 집행 불가(실험용 재료, 인건비, 운영경비 등은 집행 불가)
- 1/4분기에 발주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지표 실적 도출
-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은 사업계획 변경된 경우(구입내역 변경), 집행잔액(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업추진(제2호 서식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
 - * 절차: 시군센터(제2호 서식 작성, 공문 요청)→도원(검토 후 승인내역 통보)
 - * 승인 대상: 장비 구입내역 변경 및 집행 후 낙찰차액 사용
- 취득한 장비 관리는 물품관리법과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관리

□ 시군별 지원내역

- 농촌지도장비: 14개소 3종 281대 1,665,030천원(도비 50%, 시군비 50%)
(단위 : 대,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대상시군
계	281	1,665,030	
○ 교육홍보장비	235	398,652	용인,남양주,평택,김포,파주,이천,여주,가평
○ 순회지도차량	16	815,740	용인,양주,포천,양평,여주,연천
○ 기타장비	30	450,638	화성,평택,파주,이천,안성,연천

□ 행정사항

- 사업추진 결과 보고: '26. 12. 16.까지(제2호 서식)

참고 1

지역별 지도기반장비 세부사업 내용

□ 합계 : 3종 281대 832,515천원(도비 50% 기준)

○ 교육홍보장비 : 235대, 199,326천원

시군	품 명	규격(용량)	수량	단가	합계 (도비 50% 기준)
			235		199,326
용인시	LED교육홍보 안내전광판	640*1920mm	4	4,400	11,000
남양주시	비디오프로젝터	7000ANSI	1	7,600	3,800
남양주시	비디오프로젝터	5200ANSI	1	4,000	2,000
남양주시	영사용스크린	3000*2250mm	1	1,400	700
남양주시	영사용스크린	4000*3000mm	1	3,200	1,600
남양주시	이동식 앰프	미프로 MA-100	3	1,200	1,800
남양주시	데스크톱 컴퓨터	i5 CPU, 16GB RAM, HDMI 2.0이상	2	1,000	1,000
남양주시	회의용탁자	1800*700*750mm	11	1,480	8,140
남양주시	작업용의자	630*610*1070mm	22	460	5,060
평택시	태블릿PC	208.6×326.4×5.4	2	1,200	1,200
김포시	노트북	15.6인치	2	2,766	2,766
파주시	비디오프로젝터	135*373*405(1920*1200)	1	5,000	2,500
파주시	영사용 스크린	4000*3000	1	2,100	1,050
파주시	교육용 책상	1800*500*720	20	340	3,400
파주시	교육용 의자	490*530*792	40	96	1,920
파주시	냉난방기	60평형	2	4,900	4,900
파주시	냉방기	30평형	1	2,400	1,200
파주시	강연대	650*450*1100	1	180	90
파주시	책상	1200*700*725	4	210	420
파주시	의자	540*570*1040	4	165	330
파주시	회의용 테이블	1800*900*720	1	179	90
파주시	회의용 의자	595*560*825	6	120	360
이천시	전자칠판	98인치	1	15,000	7,500
이천시	전자칠판	75인치	1	5,000	2,500
여주시	교육홍보장비	LED 스크린	2	101,500	101,500
가평균	데스크톱컴퓨터	Intel Core i5	50	1,000	25,000
가평균	액정모니터	68.6cm	50	300	7,500

○ 순회지도차량 : 16대, 407,870천원

시군	품 명	규격(용량)	수량	단가	합계 (도비 50% 기준)
			16		407,870
용인시	순회지도차량	캐스퍼(전기)	6	33,090	99,270
양주시	순회지도차량	포터2 일렉트릭	1	46,200	23,100
포천시	순회지도차량	중형 SUV(전기차)	2	50,000	50,000
양평군	농기계운반차량	2.5톤장비운송트럭	2	105,000	105,000
양평군	순회지도차량	중형SUV 하이브리드	1	50,000	25,000
여주시	순회지도차량	중형 SUV(전기차)	1	55,000	27,500
연천군	순회지도차량	중형 SUV(전기차)	1	58,000	29,000
연천군	순회지도차량	소형 SUV(전기차)	1	46,000	23,000
연천군	순회지도차량	소형 SUV(전기차)	1	52,000	26,000

○ 실증시험포운영장비 : 30대, 225,319천원

시군	품 명	규격(용량)	수량	단가	합계 (도비 50% 기준)
			30		225,319
화성시	다목적운반차	2인승	1	20,570	10,285
화성시	다목적운반차	5인승	1	20,268	10,134
화성시	트랙터 구굴기	QM312	1	12,500	6,250
화성시	자주식 구굴기	FM150	1	12,000	6,000
화성시	목재파쇄기	HTI-WC330	1	12,000	6,000
화성시	법씨파종기 set	1,700장/h	1	27,000	13,500
화성시	화분채취기	SWX-400	2	1,700	1,700
화성시	화분정선기	SWX-6	4	1,200	2,400
화성시	화분계약기	SW-6000	7	1,700	5,950
화성시	초저온냉동고	TDE600620	1	12,900	6,450
평택시	이앙기	6조	1	33,000	16,500
평택시	콤바인	4조	1	50,000	25,000
평택시	농업용트랙터	4륜 구동형, 54.4/2500kW/rpm	1	50,000	25,000
파주시	종자용 콩 탈곡기	680*1370*1140	1	7,700	3,850
이천시	승용운반차	적재량 600kg	1	19,000	9,500
이천시	스피드스프레이어	약탱크 용량 1000L	1	66,000	33,000
안성시	드론		1	30,000	15,000
연천군	스키드스티어로더	0.203m³(부속포함)	1	38,500	19,250
연천군	다목적운반차	1,000kg(승용운반차)	1	16,600	8,300
연천군	냉방기	6.6kw/55m²	1	2,500	1,250

【제1호 서식】

농촌지도장비 지원 추진결과

□ 지도장비

(단위: 천원)

시군	구입 장비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00시										
00군										

□ 사업추진상 문제점

○

□ 애로 및 건의사항(개선사항)

○

□ 주요성과(수치화 기재)

- 교육장비 구축으로 교육생 증가
- 교육생 증가(명) 000 → 000건

□ 성과지표

구 분	실 적				측정산식	비고
농촌지도 ¹⁾ 장비 연간활용 실적 (회)	장비명	사업추진년도 활용실적	전년도 활용실적	활용 증감률 (%)	*당해연도 지원 지도장비 연간 활용실적 - 대체취득한 장비는 반드시 전년도 활용실적 제출 - 사업추진년도와 전년도를 비교 할 수 있는 실적 제출 필수 *산출식 $\{(\text{사업추진년도 활용실적} - \text{전년도 활용실적}) / \text{전년도 활용실적} \times 100\}$	
	계					

□ 사업추진 전·후 사진 등

0000사업(00시)	0000사업(00군)

1) 지도기반조성사업 중 지도장비가 지원된 도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지원장비에 대한 활용실적

【제2호 서식】

농촌지도장비 지원 사업변경 계획

□ 사업개요

【당초 계획】* 사업계획, 추진사항(사업명, 위치, 사업량, 금액 등)

- 사업명: 농촌지도장비 지원(교육홍보장비)
- 사업위치: 000농업기술센터
- 사업비: 00,000천원
- 사업내용(구입내역):

【변경 계획】* 사업내용 자세히 기재(사업명, 장비명, 사업량, 금액 등)

- 사업명: 농촌지도장비 지원(교육홍보장비)
- 사업위치: 000농업기술센터
- 사업비: 00,000천원
- 사업내용(변경 구입내역):

□ 사업변경 내역

구분	당 초(도비(50%), 천원)		변 경(도비(50%), 천원)			비고
	사업내용	예산액	사업내역	예산액	증감	
00도 (00시)	(지도장비) ○교육홍보장비	250,000	(지도장비) ○교육홍보장비	203,587	△46,413	○ 보조비율 -도비 50%, -시군비 50%
	- -		(지도장비) ○교육홍보장비	46,413	46,413	

□ 변경사유(필요성)

- 집행잔액(낙찰차액) 교육홍보장비 등 내용연수 경과로 구입 필요
-

□ 향후계획(구체적 일정 기재) *집행일정 등

- 장비구입발주: 00년 0월 0일한
- 장비구입완료: 00년 0월 0일한

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 이 사업에 대한 해석기관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이광빈 · 지방농촌지도사 황범익 031-8008-9383)입니다.

□ 목 적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통한 지역 농업기술지도 활동 촉진

□ 추진방향

- 선도농, 농산업체, 대학, 농협 등으로 구성된 기술지원 협의체 운영
- 지역단위 산학협동 활동 강화로 지역에 적합한 농업기술 개발 보급과 지도사업 활성화

□ 근거법령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제30368호)
-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농촌진흥사업 지원)

□ 추진계획

사업량 (개소)	사업비(천원)			개소당 사업비 (천원)	대상시군
	계	도비(30%)	시군비(70%)		
13	18,200	5,460	12,740	1,400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남양주, 광주, 양주, 안성, 양평, 여주, 가평, 연천

- 시범요인: 농촌진흥사업의 산업계 · 학계 · 연구기관 등 협동체계 구현으로 농업과학 기술의 효율적 추진
- 지원내역: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및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등

□ 기대효과

- 지역단위 산학협동 활동 강화로 지역에 적합한 농업기술 개발 보급과 지도사업 활성화

【제1호 서식】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계획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시군	심의위원회명	구성인원(명)			위원회 분야별 구성(명)
		계	당연직	위촉직	
					예시) 1)농학계열 교수: 00명 2)농업계열 고등학교 교원: 00명 3)농업관련업무 과장: 00명 4)연구·지도 업무담당 공무원: 00명 5)농협: 00명 6)농업인단체 대표: 00명 7)기타: 00명

□ 운영 및 집행계획

시군	운영횟수	운영내용	집행계획
		예시) 국도비 보조사업 대상자 00명 선정 시군 자체사업 대상자 00명 선정 농업인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 00회	예시) 참석자 수당: 00천원 심의회 자료 제작: 00천원 등

【제2호 서식】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결과

□ 운영결과

시군	운영횟수	운영내용	집행내역

라.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 지원

* 이 사업에 대한 해석기관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이광빈·지방농촌지도사 김정원 031-8008-9385)입니다.

□ 목 적

-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농촌진흥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문제 해결, 중앙과 지방의 연계 강화를 위한 자율적 학습공동체 육성

* 전문지도연구회 과제교육 및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 사업·활동 등 지원

□ 추진방향

- 현장문제 해결역량을 강화하고 참석률 제고 등으로 과제교육 내실화
- 농촌진흥청 등 참여 확대로 지방과 중앙의 정보교류 및 소통 강화
- 급격한 농촌진흥공무원 세대교체에 대응한 구성원 간 지식공유 강화
- 현장중심, 성과중심의 평가로 농촌진흥사업 성과 향상 지원
- 생산된 지식의 공유·확산을 위한 우수기술 자료집 체계화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제29조(시상)
-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제5조(전문지도연구회 설치 등), 제6조(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의 설치 등), 제7조(연구회에 대한 지원) 등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1) 지원대상

- 전문지도연구회 임원 및 회원: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지방농촌지도사, 지방농업 연구사, 전임계약직, 전문경력관 나군 등의 농촌진흥공무원
-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 임원 * 임원의 범위는 협의회 회칙에 따름

(2) 지원내용

- 전문지도연구회나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 활동(과제교육, 워크숍, 임원회의, 총회 등) 참석 또는 (비대면)과제교육과 연계한 행사·교육
 - * 소속 연구회 활동과 관련 있는 농업관련 단체나 기관 개최 전시·교육·세미나 참여, 시·도 또는 시·군별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전문지도연구회원 역량강화 교육 등
 - * 전문지도연구회 임원과 회원의 과제 활동은 지자체 예산 활용

(3) 전문지도연구회 개설 및 폐지

- 신규 설립, 변경, 폐지 등은 매년 1월에 농촌진흥청(사무국)으로 신청
 - 설립: 농촌진흥공무원 10인 이상이 합의하여 신설을 제안하거나 농촌진흥청 관련 부서에서 신설을 제안하는 경우
 - 변경: 다른 연구회와 통폐합, 명칭 변경,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 폐지: 활동이 저조하거나 기타 사유로 폐지를 희망하는 경우
- 신청서 양식, 폐지 조건 등 세부사항은 전문지도연구회 운영계획에 따름

(4) 전문지도연구회 회원 관리

- 연구회 회원 가입, 변경 등은 매년 1~2월에 농촌진흥청(사무국)으로 신청
 - 가입: 가입을 희망하는 연구회 임원과 사전 협의 후 신청서 제출
 - 제명: 활동이 저조한 회원은 농촌진흥청 또는 연구회에서 일괄 제명
- 신청서 양식, 회원 자격상실 등 세부사항은 전문지도연구회 운영계획에 따름

(5) 전문지도연구회 과제활동

- 과제교육은 연간 2회 이상(1회당 1~2일 기준) 실시하되 12월 31일까지 완료하고 각 과제교육 후 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 평가대상(10월31일까지 추진된 과제교육)
- 과제발표, 분임토의, 특강, 실습, 현장견학, 농가컨설팅 등의 과제교육 내용은 각 전문지도연구회 활동목적에 맞는 내용으로 편성하되 생산기술 뿐만 아니라 분야별 가공, 마케팅 및 유통분야도 포함

(6)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

- 협의회 운영은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 회칙」에 따름

(7) 전문지도연구회 평가 * 평가대상(10월31일까지 추진된 과제교육)

- 전문지도연구회별 특성과 성과 완성을 고려한 종합평가 실시
- 생산된 지식과 경험을 전체 연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평가에 반영
- 평가결과는 우수 연구회 및 우수 회원 등에 대한 포상에 반영하며 세부 평가계획은 별도 통보

□ 기타사항

- 전문지도연구회는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자율적인 학습모임체이므로 한국 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 의결에 따라 연구회 개설 및 폐지, 회원가입, 과제활동 등에 대한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마.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

* 이 사업에 대한 해석기관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이광빈·지방농촌지도사 윤대훈 031-8008-9382)입니다.

□ 목 적

- 시·군 읍면동 최일선에서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농업인상담소 운영 활성화
- 지역특화품목 발굴 및 당면 영농문제 효율적 신속 해결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읍면동 단위 농촌지도사업 집중 지원을 통한 농업인상담소 역할 강화
-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품목 발굴과 소규모 농업인까지 신속한 현장기술지원
- 지역에 적합한 각종 신기술 보급을 위한 특화작목 육성 농촌지도사업 전개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제19조
-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4조, 제18조
-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6조

□ 사업개요

- 사업량: 12개시군 38개소(용인, 남양주3, 평택2, 파주5, 김포, 광주5, 이천2, 안성2, 포천2, 양평, 여주10, 가평3)
- 사업비: 380,000천원(개소당 10,000천원 / 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대상: 시·군 농업인(개인, 연구회, 영농법인, 농업인학습단체 등)
- 사업내용
 - 신기술·품목보급 교육, 현지연찬, 토론, 컨설팅 등 농업인 역량개발 지원
 -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현장 실증재배 추진
 - 농산물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
 -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구입비로만 예산편성 불가, 사업방향 및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 ※ 지역내 학습단체·품목별 농업인단체육성 연찬을 위한 수용비 편성 및 지출 금지
- 지원내역: 지역특성에 맞는 실증 추진 재료비 및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강사 수당·교재제작, 임차비, 재료비 등

□ 기대효과

- 지역 읍면동별 특화품목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기반 조성
- 농업인상담소 거점화 및 영농문제 현장 해결로 농촌진흥기관 위상 제고

□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보고: 2026. 3. 6.(금) (제1호 서식)
- 사업추진 결과보고: 2026. 11. 20.(금) (제2호 서식)

[제1호 서식]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성화 사업 지원 추진계획(3. 6.)

☐ 사업비 집행계획

항목 (사업명)	예산 (통계목)	세부내역 (산출기초)	참여 인원	사업비(단위: 천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계				0	0	0	
예) 00교육		- O×O회=00천원					
00토론회		-					

☐ 사업추진계획

세부 사업명	세부 추진내용	비고
예) 00교육		
00실증시험		

[제2호 서식]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성화 사업 지원 추진결과(11. 20.)

☐ 사업추진 결과

세부 사업명	참여인원	사업비 집행 내역(단위:천원)			사업내용 (세부 추진내용)
		계	도 비	시군비	
계					

☐ 사업추진 주요성과 및 우수사례

사업내용	사업추진 주요성과 및 우수사례
-	-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불만족 시 반드시 사유 기재)

교육		만족도 조사(사업추진 후)					
횟수	인원	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명(100%)	명(%)	명(%)	명(%)	명(%)	명(%)

※ 불만족 사유(만족도 조사결과 불만족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유 기재):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	-

☐ 관련사진(3장 이상)

(사진)	(사진)	(사진)
제 목	제 목	제 목

☐ 홍보실적

바. 농촌진흥사업 평가

* 이 사업에 대한 해석기관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이광빈·지방농촌지도사 윤대훈 031-8008-9382)입니다.

□ 목 적

-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객관적 평가로 농촌진흥사업 경쟁력 도모
- 우수기관 시상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 위상제고와 조직 활성화

□ 추진방향

- 농촌진흥사업의 분야별 추진 효율성 제고와 파급정도 평가
- 국정·도정과제 연계 목표 확산을 위한 평가지표 발굴 및 추진

□ 근거법령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①항, ⑤항)
-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제27조)

□ 추진계획

<평가대상 및 범위>

- 대상기관 : 20개 시군농업기술센터
- 평가범위: 2025년도에 추진한 농촌진흥사업 및 농업기술센터 운영
 - 지도기획, 인력육성, 농업교육, 식량기술, 원예기술, 축산곤충기술, 작물보호TF, 생활기술, 치유농업, 기술사업분야

<평가지기 및 방법>

- 평가지기: 2026년 1~3월
- 평가방법: 분야별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 평가일자

구분		일정	비고
자료제출(시군→道)		2026. 1. 12.(월)한	기관·우수사례 동일
우수기관 평가	1차 서류평가	2026. 1. 13.(화) ~ 1. 19.(월)	
	2차 발표평가	2026. 2. 10.(수) ~ 2. 12.(목)	
분야별 우수사례	1차 서류평가	2026. 1. 13.(화) ~ 1. 19.(월)	
	2차 서류평가	2026. 2. 2.(월) ~ 2. 6.(금)	
	3차 발표평가	2026. 2. 10.(수) ~ 2. 12.(목)	
최종발표		2026. 2. 27.(금)	
시 상		2026. 3. 26.(목)	1분기 시군소장협의회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는 농촌지도사업보고서에 수록하고,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및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 평가결과 우수기관 시상으로 사기진작
 - 시상시기: 2026. 1분기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협의회시
 - 시 상 금: 34백만원(도비 100% - 포상금)
 - 농촌진흥사업평가: 대상1(10백만원), 최우수1(7), 우수1(5), 시단위우수1(3), 분야별 우수사례시군9(최우수6(각2백만원), 우수3(각1백만원))
 - 농업인대학 운영 평가: 최우수1(2백만원), 우수2(각1백만원)
 - 시상점수: 도지사표창 20점(기관13, 유공공무원7)
 - 농촌진흥사업평가: 14점(기관10, 유공공무원4)
 - * (기관표창) 10점(대상1, 최우수1, 우수1, 시단위 우수1, 분야별 우수사례시군6)
 - * (유공공무원 표창) 4점(대상1, 최우수1, 우수1, 시단위 우수1)
 - 농업인대학 운영 평가: 6점(기관3, 유공공무원3)
 - * (기관표창) 3점(최우수1, 우수2)
 - * (유공공무원 표창) 3점(최우수1, 우수2)

<추진일정>

구분		일정	주요내용
평가 지표 검토	사업부서	2025.5.~6.	· 2025년도 분야별 평가지표 수정(안) 마련 · 중앙단위 평가지표 연계 등 현행화
	시군	2025.6.~7.	· 분야별 평가지표 검토·의견제출(시군→도) · 관련 사업부서 검토사항 반영여부 회신(도→시군)
평가지표 확정		2025.7.	· 시군농업기술센터 대상 평가지표 확정 공지 · 각 분야별 농촌진흥사업 전개
지표별 평가		2025.12. ~2026.1.	· 분야별 사업추진결과 제출(시군→도) · 평가 : 1차 서류→2차 발표→최종순위결정→시상
시상		2026.3.	· 1분기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회 시 시상(예정) · 시상금 지급조서 및 활용계획 제출(시군→도)

3. 농업기술 홍보

가. 홍보 기반조성

* 이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이광빈 · 지방농촌지도사 김정원 031-8008-9385)입니다.

□ 목 적

- 홍보담당자의 직무능력 제고 및 업무지원 등을 통한 홍보사업의 효율적 운영 실현
- 홍보 현안 파악 및 홍보계획 수립을 통해 홍보활동 효과 향상

□ 추진계획

-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홍보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농촌진흥사업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활동 증진
 - 중앙·지방간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으로 원활한 홍보체계 구축
 - 홍보 인식 강화를 위한 농촌진흥공무원 홍보 연찬회 및 세미나 개최: 연 2회
 - 도청 대변인실, 홍보미디어 및 홍보콘텐츠담당관 등 홍보 관련 부서와 협업 추진
- 농촌진흥사업 사진, 영상 등 공모전: 연 1회
- 최신 농업기술 정보 및 홍보자료 제공을 위한 디지털 종합현황판 활용
 - 주간농사정보 및 농업기술 사진, 영상 자료 제공
- 홍보 효과 향상을 위한 전략적 홍보 전개
 - 연간 홍보활동 및 실적 분석을 통한 차년도 전략적 홍보 방향 설정
 - 뉴스·비뉴스 프로, 기획특집, 기고 등 매체 특성에 맞는 소재 집중 발굴
 - 홍보전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홍보 방안 수립
 - 모바일(영상)의 이용 확대 추세에 따른 온라인 채널 활용 강화
- 현안 이슈 관련 사례기반 콘텐츠 제작으로 뉴스 가치 제고
 - 언론 관점에 적합한 대중적 관심 분야 아이템 집중 발굴 홍보

□ 기대효과

- 농촌진흥공무원의 홍보 의식 향상 및 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한 홍보 효과 증진
- 계획적 전략홍보로 소비자 대상 경기농업 기술정보 제공의 효율성 증진 및 농업·농촌의 가치에 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나. 신문 및 홍보물 활용 정책 홍보

* 이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이광빈 · 지방농촌지도사 김정원 031-8008-9385)입니다.

□ 목 적

- 언론 매체에 농촌진흥사업의 주요성과 홍보를 통해 확산효과 유도
- 매체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기획홍보로 농촌진흥사업의 중요성 제고
- 대중 공감형 홍보물 제작으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 추진계획

- 신문, 농업 전문매체 언론 보도
 - 목표 실적: 연 200건(주제별, 기획 및 일반기사)
 - 연구개발·기술보급 핵심 농촌진흥사업 우수성과 전략적 홍보
- SNS(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온라인 홍보 강화: 1,200건
 - 페이스북, X(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공식 채널 관리 및 구독자 확대
 - SNS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 및 우수 콘텐츠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공유
- 월간지 「경기농업+」 발간 제작: 48천부(4천부/월)
 - 농업인에게 유용한 농업신기술, 농정시책 및 우수사례 수록
 - 일반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치유농업, 도시농업, 농촌체험, 지역 농산물 등 소개
 - 농업인, 일반 소비자 및 유관 기관에 배부
 - 경기도농업기술원 누리집(<https://nongup.gg.go.kr/>)를 통한 「경기농업+」 웹진 운영
 - 온라인 구독자 확대를 위한 SNS 업로드 제공
- 농촌지도사업 기술교육 교재 제작: 1종
 - 농업 신기술 개발 및 기술보급 등 농업기술원 성과사례집 제작
- 디지털 농업진흥사업 홍보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요원 운영: 1명

□ 기대효과

- 농업기술원 개발 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소비자에게 실용적인 건강·생활정보, 체험농장, 고품질 농산물소개로 농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우리 농산물 소비 활성화

다. 방송 활용 농촌진흥사업 홍보

* 이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이광빈 · 지방농촌지도사 변지영 031-8008-9384)입니다.

□ 목 적

- 방송 매체를 통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주요성과를 알려 농촌진흥기관 위상 강화
- 매체 특성을 반영한 전략·기획 홍보로 대국민 이미지 제고
- 매체 환경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 추진

□ 추진계획

○ TV 방송

- 뉴스 프로그램 및 비뉴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홍보
- 거점 지역 방송사를 활용한 계절별 주제 기획 홍보
 - 신상품, 기후변화, 디지털농업, 친환경농업, 치유농업, 도시농업, 농촌체험 등
- 공중파 및 종합편성 케이블TV 메인 뉴스 노출 극대화
- 종편 등 매체별 프로그램 및 보도경향에 따른 사진, 영상 등 콘텐츠 제공
- 시사, 교양, 과학 및 농업·농촌 관련 프로그램 활용 확대

○ 라디오 방송

- 실시간 라디오 뉴스프로그램 활용 활성화
- 농업 관련 고정 방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홍보
- 사회적 이슈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보
 - 농축산물 안전성, 기능성 개발 제품 등 농업기술 우수성과 사례 등
- 라디오 방송 뉴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홍보
- 우수성과 및 이야기가 있는 농가와 직원 선정 기획 홍보
 - 연속성 있는 기획 방송으로 청취자 관심도 및 홍보효과 제고

□ 기대효과

- 언론사 특성을 파악한 맞춤형 기획 홍보로 홍보성과 제고
 - 경기도 개발 신상품 및 연구성과 보급 확대, 미래 트렌드에 부합한 농촌진흥사업 등
- 생활공감형 성과 홍보 확산으로 농촌진흥기관 위상 강화

4.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전문경영인, 4-H, 품목농업인연구회 등 농업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해 경기농업을 선도하는 조직체로 육성하고 농업인들의 전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터전 마련으로 전문농업인 양성

□ 추진방향

- 농촌지도자회: 후계농업인력 지원 및 전문농업인으로서 과학영농 선도실천
- 생활개선회: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주체로서의 농촌여성리더 육성
- 농업전문경영인: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최고농업경영인 육성
- 4 - H 회: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표준모델로 구축
- 품목농업인연구회: 지역특화작목육성으로 전문조직화 구축

□ 근거법령: 농촌진흥법 제2조 3항,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경기도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경기도조례 제6718(2020.08.07.) 및 7548(2023.01.02.)호,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훈령 제899호)등

□ 사업비 지원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4,402,450	200,000	1,515,075	2,449,375	238,000	-
농촌지도자회 육성	1,086,610	-	346,983	739,627	0	-
생활개선회 육성	927,000	-	299,100	627,900	0	-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143,200	-	84,400	58,800	0	-
4-H회 육성	2,143,640	200,000	721,792	983,848	238,000	-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56,000	-	16,800	39,200	0	-
공통(양성평등 교육 등)	46,000	-	46,000	0	0	-

□ 시범사업 표찰 제작

- 사업 관리책임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 제72조제4항 별표3에 근거하여 표찰(입간판)을 설치
- 표찰 제작(안)
 - 시설: 90cm × 70cm 소표찰(아크릴 또는 포맥스 부착형)
 - 포장: 120cm × 90cm 중표찰(철판으로 기둥 2개설치)
 - 표찰내용은 시범사업과 지역특성에 맞게 적의 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술지원 내용에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시군 공동사업 추진 표기
 - 로고 사용 시 주의사항
 - 국비사업: 농촌진흥청, 경기도 로고, 시군 로고 함께 표기
 - 도비사업: 경기도 로고, 시군 로고 함께 표기
- ※ 사업장 시설 입구 등 외부에서 방문 시 잘 보이는 곳에 설치

< 예 시 >

사 업 제 목 (명)					
○ 예)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신기술과 결합된 유형별(신기술, ICT, 벤처, 창업, 가공·관광, 기타) 사업을 지원하는 자율형 공모사업입니다.					
○ 규 모:		지원내역:			
○ 사업내용					
-					
-					
기술지원: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전화: 000-0000)					
사업장 위치	경기도 ○○시 ○○로	대표자	○○○	담당자	○○○

가. 농촌지도자회 육성

*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전제환 · 지방농촌지도사 이철민 031-8008-9393)입니다.

□ 목 적

-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
- 농업·농촌분야 탄소중립 실천운동 등 사회공헌 활동의 중추적 역할 수행

□ 추진방향

- 농업용드론 및 전기·용접기술 등 현장 실용기술 교육강화
- 탄소중립 실천운동 결의대회, 교육, 홍보 강화로 공익활동 추진
-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촌체험사업 중심 전환, 지역 농업의 선도자로 육성, 지방단위 농업인단체의 구심체 역할 수행
- ※ 품목별 생산자로 변화 추구, 개방적(젊은층 영입) 회원관리

□ 근거법령: 농촌진흥법 제2조 3항, 경기도 조례 제6718호

□ 사업비 지원계획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업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계	91	1,086,610	346,983	739,627
○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기금)	1	20,000	20,000	-
○ 농촌지도자 한마음 소통 기술연찬(기금)	1	10,000	10,000	-
○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29	666,610	199,983	466,627
○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교육(기금)	29	58,000	17,400	40,600
○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사업(기금)	27	132,000	39,600	92,400
○ 농업인학습단체 경쟁력 제고사업(기금)	4	200,000	60,000	140,000

1)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 목 적

-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정보습득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농촌지도자회원에게 신속한 농업정보를 제공해 농업·농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 농업정보 및 과학영농 신기술 정보 제공을 통해 농촌지도자회 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농업현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원에게 농업전문 정보지 구독 지원
- 새로운 기술과 농업사례, 타 지역의 정보 등을 신속 보급

□ 추진계획

- 사업량: 29개소 9,523부(의정부시, 부천시 제외한 29개 시군)
- 사업비: 666,610천원(부수당 70천원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농촌지도자회원
- 사업내용: 농촌지도자회원 기술 습득 및 신기술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지 제공
 - ※ 지원대상자는 농업기술원 소관 타 정보지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택 1)

□ 기대효과

- 새로운 농업·농촌 관련 정보의 신속 보급으로 농업발전에 따른 대처 능력 향상
- 첨단 영농기술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대로 경기농업의 경쟁력 제고

□ 행정사항

○ 추진계획 보고: 2026. 3. 13.(금)한

시군명	정보지 제공		소요예산(천원)		
	정보지명	부 수	계	도비	시군비
계					

○ 추진결과 보고: 2026. 11. 27.(금)한

1. 현 황

시군명	정보지 제공		소요예산(천원)		
	정보지명	부 수	계	도비	시군비
계					
			* 실제소요금액으로 기재		

2. 정보지제공 만족도조사

시군	제공인원	계(명)	평가결과(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명(100%)	명(%)	명(%)	명(%)	명(%)	명(%)

3. 미흡(불만족) 사유

항 목	내 용	기 타

※ 미흡 시 반드시 사유 기재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우수사례

2)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 교육(기금사업)

□ 목 적

-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공익사업 확대 및 과학영농 기술보급 선도자로서의 능력배양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 추진방향

- 지역단위 농촌지도자회의 조직활성화와 과학영농기술보급 플랫폼으로 운영
- 농촌지도자회원의 역량강화 및 농촌융복합화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 추진계획

- 사업량: 29개소(수원, 부천, 의정부 제외한 28개 시군 / *안성 2개소)
- 사업비: 58,000천원(개소당 2,000천원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농촌지도자회원
- 추진시기: 3~11월 중 시군별 여건에 맞게 추진
- 사업내용
 - 공익활동 강화를 위한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천운동 결의대회, 교육 추진
 -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시군농업의 핵심단체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소양 및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 추진
 - 농업현장 및 선진농장 방문 등 현지 연찬을 통한 품목별 신기술교육 습득으로 지역농업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찬교육 지원

□ 기대효과

- 농촌지도자회원의 능력배양 및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 확산을 통해 지역농업 발전 원동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기여

□ 행정사항

○ 추진계획 보고: 2026. 3. 13.(금)한

시군명	교 육 명	추진계획			
		일 시	장소	인원	내 용
계					
예시)	임원 역량강화교육	3.13.(금)	센터 대강당	85명	

○ 추진결과 보고: 2026. 11. 27.(금)한

- 현 황

시군명	교 육 명	추진결과				소요예산(천원)		
		일 시	장소	인원	내 용	계	도비	시군비
계								
						* 실제소요금액으로 기재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시군	만족도 조사(사업추진 후)				
	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명(100%)	명(%)	명(%)	명(%)	명(%)

- 미흡(불만족) 사유

항 목	내 용	기 타

※ 미흡 시 반드시 사유 기재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 우수사례

-

※ 사업추진 장면 사진 2매 이상 첨부

3) 농촌지도자회원 활동지원사업(기금사업)

□ 목 적

- 농업·농촌을 선도할 농촌지도자회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회원 화합의 장 마련

□ 추진방향

- 농촌지도자회 활동 및 회원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경기도 우수 농·특산물 전시, 신농업기술 교육 및 체험·홍보

□ 추진계획

- 사업량: 27개소(부천, 의정부 광명, 과천 제외한 27개 시군)
- 사업비: 132,000천원(개소당 4,000~6,000천원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농촌지도자회원
- 추진시기: 3~11월 중 시군별 여건에 맞게 추진
- 사업내용
 - 제79주년 한국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석, 지역 우수 농·특산물 전시, 전통 농경문화 체험·견학 등

□ 기대효과

- 경기농업을 이끌 농촌지도자회 지원으로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보급 및 지역의 리더로 활동하면서 농촌 활력화 도모

□ 행정사항

○ 추진계획 보고: 2026. 3. 13.(금)한

시군명	행 사 명	추진계획			
		일 시	장소	인원	내 용
계					
예/시)	제79주년 전국대회	10.6.(화)	충남 천안	85명	

○ 추진결과 보고: 2026. 11. 27.(금)한

- 현 황

시군명	행 사 명	추진결과				소요예산(천원)		
		일 시	장소	인원	내 용	계	도비	시군비
계								
						* 실제소요금액으로 기재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시군	만족도 조사(사업추진 후)				
	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명(100%)	명(%)	명(%)	명(%)	명(%)

- 미흡(불만족) 사유

항 목	내 용	기 타

※ 미흡 시 반드시 사유 기재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 우수사례

-

※ 사업추진 장면 사진 2매 이상 첨부

4) 농업인학습단체 경쟁력 제고사업(기금사업)

□ 목 적

-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영농 및 경영 기술 도입으로 농업인학습단체 역량 강화
- 전문 농업기술을 갖춘 선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 지역농업발전 유도

□ 추진방향

- 새로 개발된 품종 또는 영농기술 등 학습단체 경쟁력 향상 기술 우선 지원
- 학습단체 및 인근농가에 시범효과가 전파될 수 있는 사업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량: 4개소(평택시, 김포시, 양주시, 여주시)
- 사업비: 200,000천원(개소당 50,000천원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2025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단체
- 사업내용: 새로운 농업기술 등 단체의 농업경쟁력과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지원
- 추진방법
 - 대상자 추천,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임하에 추진
 - 사업비는 시범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설비 지원
 - 비료, 농약, 사료구입 등 운영비나 경상경비 등은 지원 불가
 - 사업추진 및 관리는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추진

□ 기대효과

- 품목별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학습단체 육성
- 새로운 농업기술을 신속 보급해 나감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경기농업 육성

□ 행정사항

○ 사업계획 제출: 2026. 3. 13.(금)한 (※ 기금사업 신청 시 제출한 계획과 동일하게 제출)

시군명	사업대상자		사업추진내용	사업비(천원)		
	주 소	성 명		계	도비	시군비
예시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외 5개소	농촌지도자 00면회 (홍길동 외 10명)	○ 노동력절감을 위한 농기계 장비 구입 활용 - 트랙터(40마력): 1대 - 무인항공방제기(드론/10kg): 1 대(농약 살포기 포함)			

○ 사업결과 제출: 2026. 11. 27.(금)한

※ 23~25년 농업인학습단체 경쟁력 제고사업 대상 시군 추진결과 포함 제출(2번 항목 제외)

- 2023년: 2개소(포천, 여주)
- 2024년: 3개소(용인, 평택, 여주)
- 2025년: 4개소(평택, 이천, 포천, 여주)

1. 현 황

사업명	* 사업명이 아닌 시범사업명으로 작성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2. 사업비 집행내역

항 목	규모	사업비 집행내역(천원)		
		계	도비	시군비
계				
		* 세부항목별 기재		

3. 사업운영결과

품목/생산량	조수입	경영비	소 득(천원)		
			시범사업	인근사업	대 비
					%

4. 성 과

사 업 명	성 과

5. 문제점 및 대책

항 목	문 제 점	대 책

【농촌지도자 육성 지원내역】

(단위: 천원)

시군별	계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교육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사업	농업인학습단체 경쟁력 제고사업
계	316,983	199,983(9,523)	17,400(29)	39,600(27)	60,000(4)
수원시	4,770	3,570(170)	0	1,200(1)	-
용인시	15,030	13,230(630)	600(1)	1,200(1)	-
고양시	10,080	7,980(380)	600(1)	1,500(1)	-
화성시	14,790	12,390(590)	600(1)	1,800(1)	-
성남시	5,475	3,675(175)	600(1)	1,200(1)	-
부천시	-	-	-	-	-
남양주시	8,610	6,510(310)	600(1)	1,500(1)	-
안산시	8,100	6,300(300)	600(1)	1,200(1)	-
평택시	31,710	14,910(710)	600(1)	1,200(1)	15,000(1)
안양시	2,850	1,050(50)	600(1)	1,200(1)	-
시흥시	9,009	6,909(329)	600(1)	1,500(1)	-
파주시	11,550	9,450(450)	600(1)	1,500(1)	-
김포시	24,750	7,350(350)	600(1)	1,800(1)	15,000(1)
의정부시	-	-	-	-	-
광주시	10,500	8,400(400)	600(1)	1,500(1)	-
하남시	4,200	2,100(100)	600(1)	1,500(1)	-
광명시	2,868	2,268(108)	600(1)	-	-
군포시	4,500	2,100(100)	600(1)	1,800(1)	-
양주시	23,700	6,300(300)	600(1)	1,800(1)	15,000(1)
오산시	5,970	3,570(170)	600(1)	1,800(1)	-
이천시	16,290	14,490(690)	600(1)	1,200(1)	-
안성시	16,260	13,860(660)	1,200(2)	1,200(1)	-
구리시	3,900	2,100(100)	600(1)	1,200(1)	-
의왕시	4,200	2,100(100)	600(1)	1,500(1)	-
포천시	12,348	10,248(488)	600(1)	1,500(1)	-
양평군	13,530	11,130(530)	600(1)	1,800(1)	-
여주시	30,000	12,600(600)	600(1)	1,800(1)	15,000(1)
동두천시	4,788	2,688(128)	600(1)	1,500(1)	-
과천시	3,540	2,940(140)	600(1)	-	-
가평군	7,365	5,565(265)	600(1)	1,200(1)	-
연천군	6,300	4,200(200)	600(1)	1,500(1)	-

* () 사업량 / 도비만 기재

나. 농촌 여성지도자 육성

*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전제환 · 지방농촌지도사 이철민 031-8008-9393)입니다.

□ 목 적

- 농식품의 생산·소비·유통 주체로서의 여성 농업경영 인력육성
- 영농여성회원, 후계 여성농업인 활동 지원을 위한 농촌 여성지도자로 육성

□ 추진방향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여성농업인 품목전문조직 육성으로 품목별 지식 정보화, 농업 경영능력 선도, 후계세대 육성 및 소득증대 유도
- 생활개선회의 내실화와 후계여성농업인 발굴로 지방단위 농업인단체의 구심체 역할 수행
-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한 소비자와 함께하는 도·농 교류 사업 수행

□ 근거법령: 농촌진흥법 제 2조 3항, 경기도 조례 제6718호

□ 사업비 지원계획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업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계	89	927,000	299,100	627,900
○ 여성리더 양성지원(기금)	1	20,000	20,000	-
○ 농촌여성 역량개발연찬교육(기금)	1	10,000	10,000	-
○ 생활개선회 학습활동지원(기금)	27	270,000	81,000	189,000
○ 생활개선회 정보지 제공(기금)	24	399,000	119,700	279,300
○ 재능활용 지역돌봄사업(기금)	10	100,000	30,000	70,000
○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사업(기금)	26	128,000	38,400	89,600

1)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기금사업)

□ 목 적

-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증대에 따른 새로운 농업정보 및 생활·영농활동에 필요한 지식습득
- 기술농업에 대한 욕구 충족 및 품목별 과제활동 강화로 농촌생활을 개선하는 여성 인력 육성

□ 추진방향

- 시군 단위 품목별 과제분과 조직 편성 및 학습 활동 지원
- 최신 농업 및 생활기술, 영농정보제공 등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품목별 과제를 중심으로 육성하여 농업 지식기반 확충

□ 추진계획

- 사업량: 27개소(부천, 광명, 군포, 구리, 과천 제외한 26개 시군 / *안성 2개소)
- 사업비: 270,000천원(개소당 10,000천원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생활개선회원
- 사업내용
 - 농촌사회개발과 지원을 위한 여성 지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형별, 단계별 교육 실시
 - 지역 노인보살핌, 문화해설 교육 등 재능 활용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활동 지원

□ 기대효과

- 여성 지도자의 전문기술 향상으로 농촌지역 활력화 주체로서 역할 담당
- 지식,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능력 있는 여성지도자 육성

□ 행정사항

○ 사업계획 제출: 2026. 3. 13.(금)한

시군명	교 육 명	추진계획			
		일 시	장소	인원	내 용
계					

○ 사업결과 제출: 2026. 11. 27.(금)한

- 현 황

시군명	교 육 명	추진결과				소요예산(천원)		
		일 시	장소	인원	내 용	계	도비	시군비
계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시군	만족도 조사(사업추진 후)				
	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명(100%)	명(%)	명(%)	명(%)	명(%)

- 미흡(불만족) 사유

항 목	내 용	기 타

※ 미흡 시 반드시 사유 기재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 우수사례

-

※ 사업추진 장면 사진 2매 이상 첨부

2)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기금사업)

□ 목 적

- 농촌지역과 여성 역량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생활개선회원에 농촌생활 정보지 등을 제공하여 다양한 정보와 지식습득으로 회원 역량강화

□ 추진방향

- 여성의 권익증진과 농업·농촌문화 활동 촉진 및 지역사회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정보제공
- 농촌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지로 자율 선택하여 구독

□ 추진계획

- 사업량: 24개 시군 6,650부(부천, 안양, 의정부, 광명, 군포, 구리, 과천 제외한 시군)
- 사업비: 399,000천원(부수당 60천원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생활개선회원
- 사업내용
 - 농촌생활에 도움을 주는 영농기술, 농촌생활이 담긴 신문, 잡지 등 정보지를 자율 선택하여 농촌여성들에게 정보지 제공

※ 지원대상자는 농업기술원 소관 타 정보지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택 1)

□ 기대효과

- 지식,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능력 있는 생활개선회원 및 여성 지도자 육성
- 여성농업인의 정보 공유 및 농업 전문기술 향상

□ 행정사항

○ 추진계획 보고: 2026. 3. 13.(금)한

시군명	정보지 제공		소요예산(천원)		
	정보지명	부 수	계	도비	시군비
계					

○ 추진결과 보고: 2026. 11. 27.(금)한

- 농업·농촌 생활정보 제공 실적

시군명	정보지 제공		소요예산(천원)		
	정보지명	부 수	계	도비	시군비
계					

- 정보지 제공 만족도 조사

시군	제공인원	계(명)	평가결과(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미흡(불만족) 사유

항 목	내 용	기 타

※ 미흡 시 반드시 사유 기재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우수사례

3)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돌봄 사업(기금사업)

□ 목 적

- 생활개선회원이 함양하고 있는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부함으로써 농촌지역사회 활력화 주체로서의 생활개선회 역량 강화
- 농촌과 지역 사회개발의 선구적 역할 수행을 위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지원

□ 추진방향

- 지역 내 학교, 노인정 등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복지 사각 계층에게 천연 염색, 향토음식, 생활문화활동 등 생활개선회원의 재능기부
- 지역사회 개발과 활력화를 위한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 강화
- 사업대상 시군은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하여 본 기금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추진계획

- 사 업 량: 10개소(수원, 용인, 파주, 김포, 양주,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 사 업 비: 100,000천원(개소당 10,000천원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생활개선회원
- 사업내용
 - 생활개선회원의 재능개발을 활용한 활동
 - 일반 봉사단체와 차별화된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을 통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생활개선회의 정체성 정립 및 홍보 강화

□ 기대효과

- 재능기부를 통한 농촌 지역사회의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농촌지역 리더로서의 여성의 역할 확대 및 사회 공헌

□ 행정사항

○ 추진계획 보고: 2026. 3. 13.(금)한

시군명	활 동 명	추진계획			
		일 시	장소	인원	내 용
계					

○ 추진결과 보고: 2026. 11. 27.(금)한

- 현 황

시군명	활 동 명	추진결과				소요예산(천원)		
		일 시	장소	인원	내 용	계	도비	시군비
계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시군	만족도 조사(사업추진 후)				
	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명(100%)	명(%)	명(%)	명(%)	명(%)

- 미흡(불만족) 사유

항 목	내 용	기 타

※ 미흡 시 반드시 사유 기재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 우수사례

-

※ 사업추진 장면 사진 2매 이상 첨부

4)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사업(기금사업)

□ 목 적

- 농업·농촌을 선도할 농촌여성 지도자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회원 화합의 장 마련

□ 추진방향

- 생활개선회의 조직 활성화와 타 시도 농업정보 교류의 장 조성
- 소규모 창업농생산물·가공품 전시, 신농업기술교육 및 체험·홍보

□ 추진계획

- 사업량: 26개소(부천, 광명, 군포, 구리, 과천 제외한 26개 시군)
- 사업비: 128,000천원(개소당 4,500~6,500천원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생활개선회원
- 추진시기: 3~11월 중 시군별 여건에 맞게 추진
- 사업내용
 - 제68주년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 대회 참석, 생활개선회원 소규모 창업농
생산물·가공품 전시, 회원 재능발표 지원 등

□ 기대효과

- 생활개선회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조직 활성화 및 여성농업인 양성평등실현

□ 행정사항

○ 추진계획 보고: 2026. 3. 13.(금)한

시군명	행 사 명	추진계획			
		일 시	장소	인원	내 용
계					
예/시)	제68주년 전국대회	9.9.(수)	경북 포항	85명	

○ 추진결과 보고: 2026. 11. 27.(금)한

- 현 황

시군명	행 사 명	추진결과				소요예산(천원)		
		일 시	장소	인원	내 용	계	도비	시군비
계								
						* 실제소요금액으로 기재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시군	만족도 조사(사업추진 후)				
	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명(100%)	명(%)	명(%)	명(%)	명(%)

- 미흡(불만족) 사유

항 목	내 용	기 타

※ 미흡 시 반드시 사유 기재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 우수사례

-

※ 사업추진 장면 사진 2매 이상 첨부

5) 생활개선회 육성(비예산 사업)

□ 목 적

- 농업·환경·문화를 지키고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여성의 잠재 인적 역량개발
- 농업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여성농업인 조직육성

□ 추진방향

- 농식품 생산·소비·유통 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 전문역량 강화
- 농촌여성의 경영·마케팅 능력함양 및 도농교류 사업 활성화
- 1회원 1과제 연구회 가입·활동으로 전문능력 함양
- 지역농산물·전통기술 전승 보전을 위한 향토 지킴이 육성
- 농업을 이어갈 귀농·귀촌인, 다문화 여성 등 후계인력 양성
- 지역 실정에 맞도록 생활개선회원 중점 지도과제 선정 및 실천
 - 과제선택 → 계획수립 → 과제실천 → 평가 및 발표 → 피드백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4항,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제1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 운영요령

-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여성지도자의 의식·능력 함양
 - 도시지역 도농교류사업, 농촌체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이해 등을 주요활동을 추진하고 도농복합도시의 농업인 회원의 확보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 함양
- 조직적·체계적인 활동을 통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 주체로 육성
 - 조직기구 기능에 맞추어 회원 역할 정립 및 활동 강화
 - 1회원 1기술 습득을 위한 과제분과 연구모임 활성화
 - 영농신기술, 여성농업인 리더십 및 비즈니스 교육 강화
- 강소농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선도그룹으로 활용, 모델 발굴·확산
 - 후계 여성인력 발굴로 지방단위 농업인단체의 구심체 역할 수행

- 각종 여성농업인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 여성농업 전문인으로서의 영농기술 체험교육 추진
 -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농업기술 정보자료 제공 및 기술지도
 - 품목별 첨단 영농기술 및 능률적인 작업관리 방법 및 기술
 - 이메일, 문자,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활용한 농산물 및 가공품 홍보, 농산물 전자상거래 방법 등 제품 판매 활성화
 - 시대 변화에 맞게 교육과정 다양화 추진: 마케팅, 관광 서비스 등
- 농가경영개선 및 가족 경영 마인드 함양
 - 농업경영 실태의 기록을 통해 농가경영상태 분석, 개선 실천
 - 합의, 회의, 협의를 통한 영농 의사결정, 수익의 배분 등 가족경영의 합리화
 -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농작업 및 휴일의 실천, 계획적인 영농
- 한국생활개선경기도연합회 임원 및 회원 교육 강화
 - 미래 농촌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함양
 -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 주체로서의 임원 소양 및 리더십 교육
 - 자율성과 창의성으로 조직 발전 및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
- 소비자와 농업인들 간의 신뢰 형성을 위한 우리농산물 직거래 활동
 - 우리농산물에 대한 생산자·소비자간의 지속적 관심과 이해증진 유도
 - 생활개선회원 생산 농산물 및 고품질 우수농산물 연계 활동
- 농촌지역 결혼이민 여성의 정착과 생활 적응 지원
 - 결혼 이민 여성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소득 창출 지원
 - ※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연계한 공예·음식솜씨 발굴 상품화 지도
 - 생활적응을 위한 학습단체회원과 결혼이민 여성 간의 멘토링 체계 운영
- 우수 농촌여성 국외 농업기술 협력 활동 확대
 - 개발도상국에 생활개선, 농촌자원 활용 기술전파로 국제경쟁력 제고
 - 농촌지역 발전을 선도할 국제적인 마인드 형성과 전문능력 함양
 - 해외 여성농업인 단체와의 교류 및 국제화 모색
- 도시·농촌여성 연대 교류 및 어린이 농촌현장 체험사업 추진
 - 도시소비자에게 농업·농촌을 알리고, 농산물 생산과정을 이해시켜 식량의 안정적 확보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 인식, 우리 농산물 우수성 홍보

- 농촌여성과 도시여성의 상호교류를 통한 화합과 협동심 함양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유지 발전에 선도적 역할 수행
-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생산자의 지속적인 교류 및 도시소비자 단체와 자매결연 사업추진

○ 생활개선회 활동의 지속적인 보존관리 및 홍보로 성과 확산

○ 5-S 운동 중점 추진

- Sweet home (화목한 가정 만들기): 합의, 회의,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 등 소통의 주체로서의 여성역량 개발
- Special ability (1인1특기 갖기): 1회원 1기술 습득을 통한 자격증 취득 및 전문능력 함양
- Service (자원봉사하기):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주체로서의 봉사활동
- Suicide prevention (노인자살예방): 여성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재능활용으로 농업농촌 자립으로 육성
- Save the earth (환경보전): 업사이클링 활동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여성농업인조직 육성

□ 행정사항

○ 생활개선회 활동실적 제출: 2026. 11. 27.(금)까지(제1호 서식)

(제1호 서식)

생활개선회 활동실적

□ 조직 및 회원 현황

총회원수		시·군단위 (임원)		구,읍,면 단위	
조직수	인원	조직수	인원	조직수	인원
예/시) 16	902	1	5	15	897

※ 중복인원 없이 기재(총 회원수는 전체 인원을 작성)

□ 분과별 생활개선회 조직현황

분 과 명	조직수	인 원	활동내용

※ 품목농업인연구회가 아닌 생활개선회 분과만 작성

□ 생활개선회 활동실적

[illegible]

분과활동				봉사활동		도농교류			기타	
생활자원관련과제		영농관련과제								
조직수	인원	조직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자매결연수	회수	인원

다문화회원		생활개선회의 다문화가정 지원					
조직	인원	회원-다문화가정여성 멘토링			다문화 여성 교육		
		자매결연(쌍)	행사(회)	주요내용	회수	인원	주요내용

☐ 5-S운동 추진실적

구 분	추진실적		
	주요내용	회수	인원
계			
화목한 가정만들기			
1인1특기 갖기			
자원봉사하기			
노인자살예방활동			
환경보전			

☐ 1인 1특기 갖기 추진 후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증명	취득인원	취득 후 우수사례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우수사례

☐ 관련사진

【농촌여성지도자 육성 지원내역】

(단위: 천원)

시군별	계	생활개선회 학습활동지원	생활개선회 정보지 제공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돌봄사업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사업
계	264,750	81,000(27)	119,700(6,650)	30,000(10)	38,400(4)
수원시	10,950	3,000(1)	3,600(200)	3,000(1)	1,350(1)
용인시	13,770	3,000(1)	6,120(340)	3,000(1)	1,650(1)
고양시	8,610	3,000(1)	3,960(220)	-	1,650(1)
화성시	9,750	3,000(1)	5,400(300)	-	1,350(1)
성남시	6,510	3,000(1)	2,160(120)	-	1,350(1)
부천시	-	-	-	-	-
남양주시	21,450	3,000(1)	17,100(950)	-	1,350(1)
안산시	6,990	3,000(1)	2,340(130)	-	1,650(1)
평택시	13,350	3,000(1)	9,000(500)	-	1,350(1)
안양시	4,650	3,000(1)	-	-	1,650(1)
시흥시	5,250	3,000(1)	900(50)	-	1,350(1)
파주시	13,410	3,000(1)	5,760(320)	3,000(1)	1,650(1)
김포시	11,556	3,000(1)	3,906(217)	3,000(1)	1,650(1)
의정부시	-	3,000(1)	-	-	1,350(1)
광주시	8,310	3,000(1)	3,960(220)	-	1,350(1)
하남시	6,204	3,000(1)	1,854(103)	-	1,350(1)
광명시	-	-	-	-	-
군포시	-	-	-	-	-
양주시	11,940	3,000(1)	4,590(255)	3,000(1)	1,350(1)
오산시	7,950	3,000(1)	3,600(200)	-	1,350(1)
이천시	16,350	3,000(1)	9,000(500)	3,000(1)	1,350(1)
안성시	16,680	6,000(2)	6,030(335)	3,000(1)	1,650(1)
구리시	-	-	-	-	-
의왕시	6,810	3,000(1)	2,160(120)	-	1,650(1)
포천시	13,350	3,000(1)	5,400(300)	3,000(1)	1,950(1)
양평군	12,750	3,000(1)	5,400(300)	3,000(1)	1,350(1)
여주시	14,850	3,000(1)	7,200(400)	3,000(1)	1,650(1)
동두천시	4,980	3,000(1)	630(35)	-	1,350(1)
과천시	-	-	-	-	-
가평군	9,480	3,000(1)	5,130(285)	-	1,350(1)
연천군	8,850	3,000(1)	4,500(250)	-	1,350(1)

* () 사업량 / 도비만 기재

다.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전제환·지방농촌지도사 이철민 031-8008-9393)입니다.

□ 목 적

- 글로벌 지식·기술·정보화시대에 한국농업을 선도할 CEO 양성
- 현장애로기술 개발·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경기농업 육성

□ 육성방침

- 「세계 속의 경기농업」을 선도할 각 품목별 최고의 농업인 선발 강화
- 새로운 육성 프로그램 도입으로 운영의 활성화

□ 근거법령: 농촌진흥법 제2조 3항,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조례 제6718호)

□ 선발현황

(단위: 명, 시행년도 1992년~현재)

구분	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계	271	5	8	10	7	10	10	7	10	9	8	9	9	10	9	9	7	8	7	10	8	8	10	7	9	10	8	10	8	7	4	3	6	8	3
경종	21	-	-	-	-	-	1	-	-	-	2	1	-	2	2	2	2	-	-	-	-	1	-	2	-	-	-	-	-	-	1	-	3	2	
가공	13	-	-	-	-	-	-	-	-	-	-	-	1	-	-	-	-	1	-	1	2	-	-	-	1	1	-	2	-	2	-	1	-	1	-
관광 농업	9	-	-	-	-	-	-	-	-	-	-	-	-	-	-	-	-	1	-	-	-	1	4	1	1	1	-	-	-	-	-	-	-	-	-
원예	70	-	1	3	3	-	-	2	-	-	2	2	4	2	3	2	3	1	4	3	3	3	4	4	1	4	1	2	3	2	2	-	3	2	1
특작	29	-	-	-	-	1	-	-	2	2	2	2	2	-	2	1	1	1	2	1	1	1	-	-	2	1	-	1	1	-	-	-	1	2	-
과수	35	-	1	1	1	1	3	1	1	2	-	1	1	3	-	2	-	2	1	3	-	-	1	-	-	1	2	2	2	1	1	1	-	-	-
축산	50	1	2	3	1	2	2	2	-	1	-	1	-	3	1	2	1	2	-	1	2	3	-	2	2	2	5	3	2	1	1	-	2	-	-
곤충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제적	43	4	4	3	2	6	4	2	7	4	2	2	1	-	1	-	-	-	-	1	-	-	-	-	-	-	-	-	-	-	-	-	-	-	-

□ 사업비 지원계획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업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계	13	143,200	84,400	58,800
○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연찬교육(기금)	1	30,000	30,000	-
○ 농업전문경영인 활동보상금(기금)	1(21명)	29,200	29,200	-
○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지원사업(기금)	8	24,000	7,200	16,800
○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신기술보급사업(기금)	3	60,000	18,000	42,000

1) 농업전문경영인 선발

□ 목 적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718호 / 2020. 8. 7.)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농업인을 농업전문경영인으로 선발 육성하여, 글로벌 지식·경제시대에 경기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함

□ 선발인원: 10명 이내

□ 선발시기: 2026년 1월 ~ 6월(연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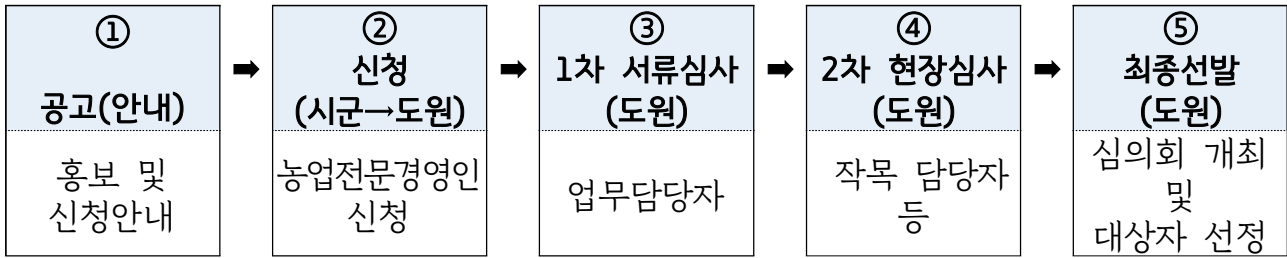
□ 선발자격

- 경기도 내 거주하고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진 자
- 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생산기술 개발보급, 가공, 유통, 상품화 등 해당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장인정신이 투철한 농업인
- 보유기술을 타 농업인에게 보급·확산하여 농업발전에 기여가 크고 지역사회의 신망이 두터우며, 심사과정에서 입증이 가능한 자
- 농업기술 등 차별화 되는 경쟁력이 있으며 타 농가에 선진 기술지도 및 본인 경영농장을 현장 기술교육장으로 개방·운영이 가능한 농업인
- 최근 3년간 평균 농업소득 1억원 이상으로, 향후 5년 이상 영농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한지(공증된 임대차 계약서 등)에 대한 사실이 확인된 자

□ 선발제한

- 도 단위 이상 기관에서 농업관련 인증을 받은 자 : 신지식인, 명인 등
※ 새로운 인재 확대 발굴과 향후 중앙단위 핵심인재로 육성하고자 함
-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아 지역 농업지도자로서 활동하는데 제약조건이 있는 자
- 시군에서는 자체심사를 거쳐 2명 이내에서 추천
- 기 선발되어 활동하다 제명된 농업전문경영인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농업전문경영인을 신청하였다가 선발되지 못한 자
(최종 신청년도 2년 후 신청가능)

□ 선발절차



○ 추천권자: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시장군수

○ 신청서류

-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추천서 1부
- 현지조사 확인서 1부
-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선발 심사표(시·군 분야별 전문지도사 작성) 1부
- 주요업적 내용 1부
- 경영내용 1부
- 소득분석결과(농축산물 표준소득분석표참조) 1부
 - 최근 3년간 소득분석표를 별지로 작성
- 영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농지원부, 영농승계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범죄사실확인서 1부
- 전문경영인으로서의 활동계획서 1부
- 관련사진 4매 이상(농장전경, 작업장면, 주요기술 실천 장면 등)
- 기타 증빙자료 첨부(학력, 교육 및 홍보실적, 포상 등)

□ 선발 시 혜택

- 도지사 인증패 및 인증현판 수여
- 활동보상금 4,800천원 지원(200천원/월, 2년간)
-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신기술보급사업 자격부여(20,000천원)
- 경기도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과정 등 현장교수 위촉(강의능력 있는자 중 선발)
- 당해연도 선발된 농업전문경영인 연수 지원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1차심사 심사기준

평가 항목		배점(점)	평가 기준				평가근거 및 내용		
			기 준			점수			
합 계						100점			
역 량 및 전문성 (50)	교육이수 실적 (10)	10	100시간이상			10	●최근 5년간 자기발전 및 전문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이수 시간		
			50시간이상 100시간 미만			7			
			50시간미만			4			
			0회			0			
	기술자격증취득 (5)	5	개수		등급		●농업관련 국가인정 기술자 격증 취득 건수(운전면허 등, 면허증 제외) *개수와 등급 중 높은 점수 적용		
			3건이상	5	기술사 가능장	5			
			2건	4	기사	4			
			1건	2	산업기사	3			
		0건	0	기능사		2			
				횟수		표창 훈격 및 상장 등급		●정부(중앙,지방) 수여하는 표창 또는 경진대회 등에 참가하여 수 상한 경력(감사장 제외) *횟수나 훈격 중 높은 점수 적용	
				10회이상	10	훈 · 포장	10		
				6~9회	7	대통령	8		
	관련분야 수상경력 (10)	10	1~5회		4	국무총리	6		
			0회		0	중앙 및 지자체장	5		
			품종 및 기술개발 (특허, 실용신안) (5)	5	3건 이상			5	●농업전문경영인 후보자가 농업과 관련하여 개발한 품종, 기술, 특허취득, 실용신안 등록 건수 (출원 포함/상표등록 불인정)
					2건			4	
	1건				2				
	0건				0				
	새로운 기술보급 활동 (10)	10	상			10	●농업전문경영인 후보자 및 농촌 진흥기관 개발기술이 타 농업인 에게 확산된 수준 평가		
			중			7			
			하			4			
	농업전문경영인 역량 (10)	10	상			10	●농업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역 량에 대해 신청자가 서술한 내 용을 바탕으로 상, 중, 하로 평 가(차별성,가치관,후진양성,기술 개발,단체활동,봉사활동 등)		
			중			7			
			하			4			
성과 확산 (50)	출강실적 (10)	10	10회 이상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관련 공공기관에 출강(강의, 세미나, 심포지엄 등)한 실적		
			6~9회			7			
			5회 이하			4			
	품목조직 및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10)	10	10년 이상			10	●시 · 군 단위 이상의 농산물 품목조직 및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실적		
			6~9년			7			
			5년 이하			4			
	성공요인의 타당성 (10)	15	상			15	●농업전문경영인 후보자로서 제시한 성공요인을 일반적 으로 보았을때 보편타당하 다고 판단되는지 여부에 대 하여 상, 중, 하 평가		
			중			11			
			하			7			
	향후발전계획의 실현가능성 (10)	15	상			15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실 현가능한지를 상, 중, 하로 판단		
			중			11			
			하			7			
발굴대상확대(가점 5)		5	최대 5점			5	●신소득작목 발굴 및 규모화, 외연확장 기여 등		

※ 평가 기준 해당점수에 “○” 표시

※ 평가 기준 : 교육이수 실적은 최근 5년이며 기타는 기한 없음

2차 심사(현장) 심사기준

○ 분 야 :

○ 후보자(성명) :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 수	비고
합 계				
기술수준 (50)	전문지식(25)	상(21~25)		재배품목에 대한 습득지식의 정도
		중(16~20)		
		하(11~15)		
	품질수준(25)	상(21~25)		인근농가대비 평균단가 - 상(150%이상) - 중(120~149%) - 하(100~119%)
		중(16~20)		
		하(11~15)		
리더 역량 (20)	기술전파의지(5)	상(5)		본인의 보유기술을 타 농업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도
		중(3)		
		하(2)		
	리더십(5)	상(5)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자질과 품성 등 판단
		중(3)		
		하(2)		
	소통능력(10)	상(10)		향후 강사로서 의사전달능력(논리력, 설득력 등, 발표력)이 충분한지 평가
		중(7)		
		하(4)		
주변신망도 (10)	품성, 이웃과의 화합 등(10)	상(10)		인근 농가 등의 여론과 평판을 청취·수렴하여 판단
		중(7)		
		하(4)		
지역사회 기여도 (20)	기술파급(20)	상(20)		본인의 보유기술이 타 농업인에게 전달, 확산된 정도
		중(15)		
		하(10)		

※ 심사위원은 평가기준을 참고로 해당 배점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점 평정 가능

2) 농업전문경영인 활동보상금(기금사업)

□ 목 적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718호)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농업인을 농업전문경영인으로 선발 육성하여, 글로벌 지식·경제시대에 경기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함

□ 추진계획

- 사업량: 21명(24년 8명, 25년 3명, 26년 10명)
- 사업비: 29,200천원(도비 100%)
- 지원대상: 2024년 ~ 2026년 선발된 농업전문경영인
- 사업내용: 농업전문경영인 선발 후 활동수당 4,800천원 지급

□ 기대효과

- 품목별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 행정사항: 분기별 활동실적 보고

- 활동실적 제출: 1분기(4.1.한) / 2분기(7.1.한) / 3분기(10.1.한) / 4분기(12.11.한)
- 활동실적(금회)

시군	성명	계		사례발표		연찬 및 평가회		순회지도		기타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 활동실적(누계)

시군	성명	계		사례발표		연찬 및 평가회		순회지도		기타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 우수지도사례(대상자 전원 분기별 1건 이상 제출)

주소	성명	사 례 내 용	비 고
		행사명: 과수 재배기술 강의 지원 - 일 시: 2026. 3. 25. - 장 소: ○○시농업기술센터 회의실 - 인 원: 20명 - 내 용: 기후변화대응 열대과수적응 재배 및 체험농장 운영 등 우수사례 발표	

3)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지원사업(기금사업)

□ 목 적

- 시군별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활동을 활성화하고 품목별 경쟁력 향상을 통한 경기농업 미래 선도
- 지역 농업현안 및 애로기술해결을 위한 전문가로서 활동 강화

□ 추진방향

- 농업관련 강의능력 및 재능개발, 신농업기술 정보 습득을 통해 청년농업인, 귀농인 등 초보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을 전수하여 지역농업발전유도
- 최신 농업기술, 영농정보 제공 등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품목별 전문화된 과제중심으로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육성

□ 추진계획

- 사 업 량: 8개소(용인, 고양, 화성, 김포, 양주, 이천, 포천, 여주)
- 사 업 비: 24,000천원(개소당 3,000천원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경기도농업CEO연합회 소속 시군농업전문경영인회(5인 이상)
- 사업내용
 -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활성화 및 역량강화 교육, 현장 연찬교육, 벤치마킹 등
 - 영농현장 애로기술해결 등 현안문제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술교육 등

□ 기대효과

- 농업전문경영인의 능력배양 및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 확산을 통해 지역농업 발전 원동력으로서의 역할 수행 기여

□ 행정사항

○ 사업계획 제출: 2026. 3. 13.(금)한

시군명	교 육 명	추진계획			
		일 시	장소	인원	내 용
계					

○ 사업결과 제출: 2026. 11. 27.(금)한

- 현 황

시군명	교 육 명	추진결과				소요예산(천원)		
		일 시	장소	인원	내 용	계	도비	시군
계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시군	만족도 조사(사업추진 후)				
	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명(100%)	명(%)	명(%)	명(%)	명(%)

- 미흡(불만족) 사유

항 목	내 용	기 타

※ 미흡 시 반드시 사유 기재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 우수사례

-

※ 사업추진 장면 사진 2매 이상 첨부

4)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신기술보급사업(기금사업)

□ 목 적

- 농업인 품목별 생산 조직체 및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
- 특화작목 및 수출작목의 과학영농 기술개발 보급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새로 개발된 자원절감 실증사업 및 벤처영농기술 우선 지원
- 인근농가에 시범효과가 전파 될 수 있는 사업 지원
- 사업대상은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하여 본 기금심의 위원회에서 최종선정
- 사업비는 시범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설비 지원
 - 비료, 농약, 사료구입 등 운영비나 경상경비 등은 사용하지 못함

□ 추진계획

- 사 업 량: 3개소(화성, 이천, 여주)
- 사 업 비: 60,000천원(개소당 20,000천원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2025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농업전문경영인
- 사업내용
 - 새로 개발된 자원절감 실증사업, 수출농업, 현장애로기술사업, 유통·가공분야 등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 기대효과

- 품목별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 새로운 농업기술을 신속 보급해 나감으로써 경쟁력 있는 경기농업 육성

□ 행정사항

- 사업계획 제출: 2026. 3. 13.(금)한 (※ 기금사업 신청 시 제출한 계획과 동일하게 제출)

시군명	사업대상자		사업추진내용	사업비(천원)		
	주 소	성 명		계	도비	시군비
예시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외 5개소	농촌지도자 00면회 (홍길동 외 10명)	○ 노동력절감을 위한 농기계 장비 구입 활용 - 트랙터(40마력): 1대 - 무인항공방제기(드론/10kg): 1 대(농약 살포기 포함)			

○ 사업결과 제출: 2026. 11. 27.(금)한

※ 2023~2025년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신기술보급사업 대상 시군 추진결과 제출

(2023년: 용인, 화성2, 김포, 이천, 포천, 양평, 여주)

(2024년: 용인2, 고양, 양주, 이천, 안성2, 포천2, 여주, 연천)

(2025년: 용인, 고양, 화성, 평택, 김포2, 양주, 이천, 포천2, 양평, 여주)

- 현 황

사업명	* 사업이름이 아닌 시범사업명으로 기재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 사업비 집행내역

세부추진내용	규모	사업비 집행내역(천원)		
		계	도	시군
계				
	* 세부항목별 기재	* 실제 집행한 금액		

- 사업운영결과

품목/생산량	조수입	경영비	소 득(천원)		
			시범사업	인근사업	대 비
					%

- 성 과

사 업 명	성 과

- 문제점 및 대책

항 목	문 제 점	대 책

※ 사업단계별 주요장면 사진 첨부(6매 이상)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육성 지원내역】

(단위:천원)

시군별	계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 지원사업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신기술보급사업
계	25,200	7,200(8)	18,000(3)
용인시	900	900(1)	-
고양시	900	900(1)	-
화성시	6,900	900(1)	6,000(1)
김포시	900	900(1)	-
양주시	900	900(1)	-
이천시	6,900	900(1)	6,000(1)
포천시	900	900(1)	-
여주시	6,900	900(1)	6,000(1)

* () 사업량 / 도비만 기재

라. 4-H회 육성

*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전제환 · 지방농촌지도사 임나레 031-8008-9394)입니다.

1) 목적 및 추진방향

□ 목 적

- 4-H이념을 실천하는 창의·융합적 미래인재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

□ 추진방향

- 4-H이념의 실천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 실현
-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융합적 미래인재 육성
- 식량위기, 도·농 격차 해소 등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활동 지향

□ 근거법령

- 법률: 농촌진흥법 제2조 3항,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 조례: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사업비 지원 계획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126	2,143,640		721,792	983,848	238,000
○ 4-H회원 교육	1	15,000	-	15,000	-	-
○ 4-H지도자 양성교육	1	20,000	-	20,000	-	-
○ 4-H경진대회	1	30,000	-	30,000	-	-
○ 4-H리더 양성 지원	1	32,000	-	32,000	-	-
○ 4-H회원 역량강화 지원	1	44,000	-	44,000	-	-
○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2	400,000	200,000	100,000	100,000	-
○ 농촌청소년 농촌민속문화계승사업	6	30,000	-	9,000	21,000	-
○ 4-H 과제교육	63	315,000	-	94,500	220,500	-
○ 4-H회원 활동정보 지원	22	67,640	-	20,292	47,348	-
○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6	600,000	-	180,000	300,000	120,000
○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 영농장착 시범	15	450,000	-	135,000	225,000	90,000
○ 청년농업인 4-H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7	140,000	-	42,000	70,000	28,000

2) 지도 방향

□ 조직 유형

- 회원단체(만7세 ~ 만39세)
 - 경기도4-H연합회(학생4-H회, 청년4-H회, 일반4-H회)
- 주관단체
 - 한국4-H경기도본부(후원회원, 4-H육성지도자)

□ 주체별 주요역할

- 농촌지도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4-H운동의 방향 및 발전방안 수립
 - 4-H활동 주체(연합회, 지도교사, 본부 등) 협력 및 조정 역할
 - 4-H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
- 한국4-H경기도본부
 - 4-H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추진
 - 4-H후원 활동 강화를 위한 4-H기금 확대 조성
 - 4-H회 활동지원(4-H장학금, 교육행사, 해외연수, 4-H대상 수상 등)
- 경기도4-H연합회
 - 4-H활동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서의 참여의식 확보
 - 미래농업의 주역으로서 품목별 전문기술, 경영 등 전문성 확보
 - 학생·대학4-H회원에게 대한 농업·농촌체험학습 등의 지도자 역할

□ 중점 육성 방향

- 과제이수 및 회의생활을 통한 자기개발과 회의생활
 - 과제이수(프로젝트 활동)를 통하여 개인의 핵심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회의를 생활화 함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 도모

○ 자연, 인간, 농업·농촌에 대한 사랑의 실천

-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시킴으로써 현대사회가 당면한 환경, 식량, 생명가치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개인의 성장 그리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 지역사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는 등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

□ 대상별 육성목표 및 지도내용

(1) 학생4-H회

○ 육성목표

- 4-H활동을 통해 배우고 실천하는 건강한 청소년

○ 지도내용

- 4-H활동 프로그램 인증 및 인센티브 강화
- 연령별,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지도교사의 4-H회원 지도역량 강화
- 4-H 청소년 농업인재 개발
- 인성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확대
- 도농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2) 대학4-H회

○ 육성목표

-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고 갈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청년리더

○ 지도내용

- 대학4-H조직 확대 및 활성화
- 농산업 직업역량 함양과 예비농업인력 역량 제고
- 대학4-H 진로교육 지원 확대
- 4차산업혁명시대의 청년4-H 글로벌 인재육성

(3) 청년농업인4-H회

○ 육성목표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 지도내용

- 역량모델링을 기반한 맞춤형 학습시스템 구축
- 청년농업인4-H회원 이력관리 체계 구축
- 청년농업인 지원체계 구축
- 자율적·주체적 참여 확대 및 자체 역량 강화
- 품목별 조직화 및 네트워크 강화

(4) 4-H육성지도자

○ 육성목표

- 청소년과 청년육성에 전문성을 갖추고 4-H육성에 헌신하는 지도자

○ 지도내용

- 4-H지도자 개념 확립
- 4-H지도자 양성체계 구축
- 4-H지도자 등록 및 자격관리

육성대상	육성목표
학생	4-H활동을 통해 배우고 실천하는 건강한 청소년
▼	
대학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 농업과 국가를 이끌고 갈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청년리더
▼	
청년농업인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	
육성지도자	청소년과 청년 육성에 전문성을 갖추고 4-H육성에 헌신하는 지도자

3) 4-H회 가입 및 등록 절차

○ 회원 등록: 한국4-H본부의 ‘클로버넷’(프로그램)에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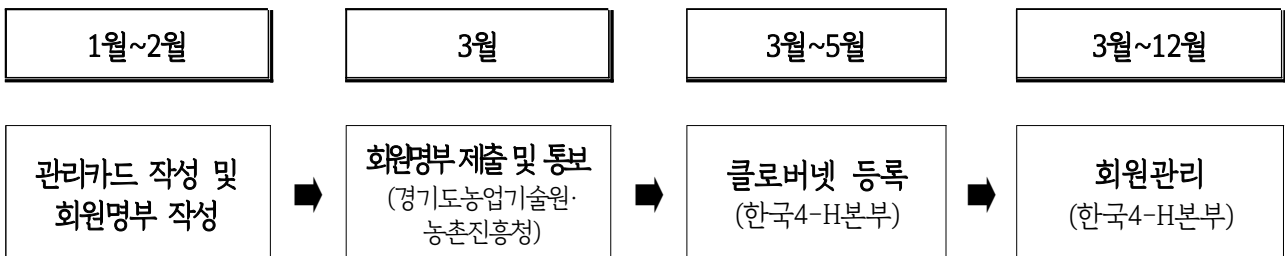
※ 학생4-H는 담당 지도교사, 4-H청년 및 본부 지도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회원등록

○ 4-H지도교사, 지역4-H본부(또는 시군4-H지도자 단체)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 회원명부 제출

○ 지방농촌진흥기관(시군농업기술센터→도농업기술원)은 4-H조직 현황 및 회원명부를 농촌진흥청으로 보고하고, 농촌진흥청은 한국4-H본부에 회원명부를 통보하여 프로그램에 등록

※ 회원등록 현황은 향후 보조사업 및 지원규모 등의 산출근거로 활용

○ 회원 등록 및 절차 추진체계



4) 4-H 및 청년농업인 주요 교육행사

□ 경기도 학생4-H대표단 겨울캠프

- 기 간: 2월
- 장 소: 농업기술원
- 대상 및 인원: 40명(학생4-H대표단, 4-H지도교사)
- 세부운영 내용: 4-H회 역사, 이념 및 리더십 교육 등

□ 경기도 4-H지도교사 역량강화 교육

- 기 간: 7월
- 장 소: 농업기술원
- 대상 및 인원: 30명(4-H지도교사)
- 세부운영 내용: 학생4-H회원 지도요령 교육, 4-H프로그램 개발 등

□ 경기도4-H연합회 신입회원 입문교육

- 기 간: 3월(예정)
- 장 소: 농업기술원 및 영농현장
- 대상 및 인원: 90명(청년4-H회원)
- 세부운영 내용: 추후 별도시행

□ 경기도 4-H 경진대회 및 도지사기 농촌민속문화경연대회

- 기 간: 10월(예정)
- 장 소: 농업기술원
- 대상 및 인원: 500명(4-H회원 등)
- 세부운영 내용: 추후 별도시행

□ 청년농업인 푸른장터

- 기 간: 10월 중(2일)
- 장 소: 추후선정
- 대상 및 인원: 200명(4-H회원 등)
- 세부운영 내용: 전시회 참여 및 장터 운영 등

□ 4-H지도자 양성교육

- 기 간: 11월
- 장 소: 농업기술원 또는 현장
- 대상 및 인원: 70명
- 세부운영 내용: 4-H지도자 리더십 및 소양교육,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등

5) 4-H육성 지원 사업

가) 농촌청소년 농촌민속문화계승 사업(도비)

*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전제환 · 지방농촌지도사 임나레 031-8008-9394)입니다.

□ 목 적

-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족 고유의 농촌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우리도의 자기모습 만들기」 운동 추진

□ 추진방향

- 시군 4-H연합회 또는 특수 4-H회로 육성
- 지역 농촌민속문화계승 활동에 역점을 두고 지역 내 우리문화 저변 확대
- 4-H경진대회 및 야외교육 등을 통한 계승활동 전개

□ 추진계획

- 사업량: 6개소
- 사업비: 30,000천원(개소당 5,000천원 / 도비 30, 시군비 70%)
- 대상시군: 화성, 성남, 남양주, 평택, 광주, 포천
- 지원대상: 해당시군의 4-H연합회 또는 단위4-H회 지원
- 사업내용
 - 농촌청소년 전통문화계승 활동지원: 해당시군에서 선정 및 발굴 육성
 - 기타 지역실정에 맞는 농촌민속문화활동 계승사업 전개
 - 사업비 지원 범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악기 및 도구지원과 전수에 필요한 강사 등의 지원 (장비구입, 강사초빙료, 교육훈련비 등)
- ※ 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시군: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행사실비지원금), 민간경상사업보조
- 대상자 선정
 - 신청: 희망하는 4-H회에서 사업계획수립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청
 - 선정: 신청된 사업계획에 의거 평가 후 적격한 4-H회 선정 (센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군청은 담당과장)

□ 기대효과

- 농촌민속문화 홍보 및 지역사회 보급
- 향토 전래민속문화 발굴 및 계승발전을 통한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

□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보고: 2026. 3. 13.(금) (제1호 서식)
- 사업추진 결과보고: 2026. 11. 27.(금) (제2호 서식)

[제1호 서식]

농촌청소년 농촌민속문화계승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3. 13.)☐ 사업대상자 선정현황

시군명	4-H회명	민속놀이명	참여인원(단위:명)			대 표 회원명
			계	남성	여성	

☐ 사업비 집행계획(사업계획은 최대한 세부적으로 작성)

사업계획 (세부 지원내용)	수량 (규모)	사업비(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세부항목별 기재					

[제2호 서식]

농촌청소년 농촌민속문화계승 사업 추진결과(11. 27.)☐ 사업추진 결과

시군명	4-H 회명	민속놀이명	참여인원(단위:명)			대 표 회원명
			계	남성	여성	

사업내용 (세부 추진내용)	사업비(단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세부항목별 기재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미흡 시 반드시 사유 기재)

시군명	만족도 조사(사업추진 후)				
	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명(100%)	명(%)	명(%)	명(%)	명(%)

미흡(불만족) 사유	내용

☐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	-

☐ 우수사례

제 목	우 수 내 용
-	-

☐ 관련사진(3매 이상)

(사진)	(사진)	(사진)
제 목	제 목	제 목

나) 4-H회원 과제교육(도비)

*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전제환 · 지방농촌지도사 임나래 031-8008-9394)입니다.

□ 목 적

- 선진농장 견학 등으로 글로벌 시대의 선도농가로 육성
- 4-H이념 실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심을 배양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전국의 품목별 선진농장 견학 등으로 신농업기술의 전수
- 4-H회원의 리더십 향상 및 농심함양을 위한 과제활동 지원

□ 추진계획

- 사업량: 63개소(20개 시군센터, 의정부, 오산)
- 사업비: 315,000천원(개소당 5,000천원 / 도비 30, 시군비 70%)
 - ※ 청년4-H회가 있는 시군 청년4-H회 일부 사업지원 필수, 학교4-H회 사업비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사업비 내에서 사업추진 대상학교 개소 수를 여러 개로 조정하여 추진 가능
- 지원대상: 시군 청년4-H회, 학교4-H회
- 추진시기: 1~11월중 지역 여건에 맞게 계획 수립 추진
- 사업내용
 - 품목별 선진농장 등 현지견학 및 4-H회원 농심함양, 취미과제활동 등에 필요한 강사료, 재료비, 참가자 급식비 등 지원
 - ※ 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시군: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행사실비지원금), 민간경상사업보조
- 대상자 선정
 - 신청: 희망하는 4-H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후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청
 - 선정: 신청된 사업계획에 의거 평가 후 적격한 4-H회 선정
(센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군청은 담당과장)

□ 기대효과

- 4-H회원에게 우수농장 견학 및 농심함양 과제교육으로 후계인력 육성
- 4-H회원의 취미과제활동 지원을 통한 자기계발 및 사회성 향상에 기여

□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보고: 2026. 3. 13.(금) (제1호 서식)
- 사업추진 결과보고: 2026. 11. 27.(금) (제2호 서식)

[제1호 서식]

4-H회원 과제교육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3. 13.)☐ 사업대상자 선정현황

시군명	4-H회원명 (학교명, 청년연합회명)	참여인원(단위:명)			대표 회원명
		계	남성	여성	

☐ 사업비 집행계획(사업계획은 최대한 세부적으로 작성)

4-H회원명	사업계획 (세부 지원내용)	규모 (수량)	사업비(단위:천원)		
			계	도비	시군비
계					
	- 세부항목별 기재				

[제2호 서식]

4-H회원 과제교육 추진결과(11. 27.)☐ 사업추진 결과

(단위:개소, 천원)

분야별	계	농심함양	문화생활	진로발달	건강과 안전	인간관계	전문기술	기 (타)
개소수								
지원액								

4-H회원명	대표 회원명	참여인원			사업비 집행 내역			
		계	남성	여성	사업내용 (세부 추진내용)	사업비(단위:천원)		
계						계	도비	시군비
					- 세부항목별 기재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미흡 시 반드시 사유 기재)

시군명	만족도 조사(사업추진 후)				
	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명(100%)	명(%)	명(%)	명(%)	명(%)

미흡(불만족) 사유	내용

☐ 사업추진 효과 및 우수사례

사업내용	사업추진 효과 및 우수내용
-	-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	-

☐ 관련사진(3매 이상)

(사진) 제 목	(사진) 제 목	(사진) 제 목

다) 4-H회원 활동정보 지원(도비)

*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전제환 · 지방농촌지도사 임나래 031-8008-9394)입니다.

□ 목 적

- 4-H우수활동 정보제공을 통한 4-H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새로운 과제(프로젝트) 습득

□ 추진방향

- 4-H회원, 4-H지도자 등에게 4-H우수활동 정보 제공 지원
- 4-H활동 정보제공을 통한 우수사례 및 새로운 과제(프로젝트) 습득 및 적용

□ 추진계획

- 사 업 량: 1,691부(20개 시군센터, 오산, 의왕)
- 사 업 비: 67,640천원(부수당 40천원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4-H회원 및 4-H지도자가 조직되어 있는 시군의 대표 회원 등
- 사업내용: 우수4-H활동 정보교류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활동정보지(한국4-H신문 등) 제공 등

※ 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시군: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 기대효과

- 우수 4-H활동정보 습득을 통한 4-H우수모델화 선점 및 농업시장 · 소비 성향 변화 등 농업분야의 트렌드 정보 제공

□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보고: 2026. 3. 13.(금) (제1호 서식)
- 사업추진 결과보고: 2026. 11. 27.(금) (제2호 서식)

[제1호 서식]

4-H회원 활동정보 지원 사업계획(3. 13.)

□ 사업추진 계획

시군명	정보지 제공			사업비(단위:천원)		
	정보지명	제공대상	인원수	계	도 비	시군비
계						
		학생				
		청년농업인				
		후원회원 등				

[제2호 서식]

4-H회원 활동정보 지원 사업결과(11. 27.)

□ 사업결과

시군명	정보지 제공			소요예산 (단위:천원)		
	정보지명	제공대상 (학생,청년 등 구분)	인원수	계	도 비	시군비
계			명			
			명			
			명			

□ 정보지제공 만족도 조사(미흡 시 반드시 사유 기재)

시군명	제공인원	만족도 조사(사업추진 후)				
		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명	명(100%)	명(%)	명(%)	명(%)	명(%)

미흡(불만족) 사유	내용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	-
-	-

□ 우수사례

제 목	우 수 내 용
-	-
-	-

라)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국비)

*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전제환 · 지방농촌지도사 임나레 031-8008-9394)입니다.

□ 목 적

- 공공기연구기관의 농업R&D 기술성과를 청년농업인의 창업 지원으로 활용하여 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 모델을 육성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으로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농촌지역 청년 유입 지원

□ 추진방향

- 공공연구기관의 농업 R&D 기술성과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하여, 기술이전·공동활용을 전제로 한 청년농업인 기술창업 지원
- 안정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농업 경영진단·분석 등 종합컨설팅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사업계획 공고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서류심사 및 전문가 면접(또는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 * 기술·경영·창업 분야 전문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실시

□ 추진계획

- 사 업 량: 2개소
- 사 업 비: 400,000천원(개소당 200,000천원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대상시군: 이천, 여주
- 사업대상
 - 농산업 기술 분야로 청년농업인(만18~39세)이 대표를 맡는 5인 이상의 창업(예정) 법인,
 - 청년농업인 품목모임체 등으로 공공기관(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등) 개발 농업 R&D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추진하는 단체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인력, 시설, 영농 실적 보유 또는 확보 계획이 가능하고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지자체 보조금 중복 수령을 하지 않은 법인
 - ※ 휴·폐업 중인 법인, 세금 체납 및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지원내용
 -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농업 R&D 기술성과*를 기술이전·공동활용을 통해 사업화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단체에 전문컨설팅과 창업 기반 조성을 종합적으로 지원

* 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공공기관 등에서 개발한 농업 기술 전체

- ◆ 특허기술: 농림축산식품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www.nati.or.kr) → 특허정보검색
- ◆ 영농활용기술: 농사로(www.nongsaro.go.kr)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최신영농활용기술

○ 지원범위

본 사업의 지원범위는 공공연구기관 농업 R&D 기술성과를 창업 단계에서 실제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기술 중심 컨설팅 + 사업화 기반 구축’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구분	세부지원내용	비고
전문컨설팅	○ 시장·수요 분석을 통한 기술 차별성 검증 ○ 재무·회계·원가 구조 분석 등 창업 경영 컨설팅 ○ 연구자·창업자 협업 모델 구축 및 운영 자문 ○ R&D 기술의 사업화 적합성 분석 및 기술 적용 컨설팅 ○ 연구성과 기반 제품·서비스 모델(BM) 고도화 ○ 기술이전·공동활용·실증 연계 컨설팅	• 사업비 10% 이내 • 컨설팅 필수
	○ 최소기능제품(MVP) 또는 시제품 제작, 품질 개선 ○ 브랜드·상품 로고, 기술 스토리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	
창업기반조성	○ 기술창업 수행을 위한 전용 또는 공동 활용 창업 공간 조성 ○ 안전관리, 위생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 시설	• 사업비 90%
	○ 기술 구현 및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주요 장비·기계 도입 ○ 사업과 연계된 농업 생산 기계로서 사업 수행에 직접 활용되는 기계	
	○ 생산·공정·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 시스템 ○ 재고·물류·유통 관리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관리 시스템	

※ 본 사업은 공공연구기관 R&D 기술성과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단순 영농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장비는 지원하지 않음

○ 추진 방법

- (사업유형) 신기술, 가공·상품화, 융복합, 체험·치유·관광 등
 - 신기술: 농업 신기술, 신품종, 신공정, 스마트·디지털 기술 등
 - 가공·상품화: 농산물 및 농업자원을 활용한 가공·제조 기반의 제품 개발 등
 - 융복합: 농업과 타 산업(식품·바이오·ICT·환경·문화 등)을 결합한 융복합 창업
 - 체험·치유·관광: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치유, 관광 등 서비스 기반
- (대상자 선정)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사업계획 공고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서류심사 및 전문가 면접(또는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 * 기술·경영·창업 분야 전문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실시
- (전문컨설팅^{필수}) 사업대상 단체 선정 후 창업에 필요한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고객관리 등

사업대상 법인의 경영능력 및 역량강화 컨설팅 추진

-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민간 등의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
- (사업계획 고도화) 교육·컨설팅을 통해 나타난 초기 사업계획의 문제점 보완 후 사업계획을 구체화·실용화
-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외부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계획 보완
- (사업추진) 보완된 사업계획에 따라 R&D 기술의 현장 적용 사업화 추진
- *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사업추진 상황 점검·지도, 사업 성과관리 수행
- (평가 및 성과확산) 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공공연구기관 R&D 기술 기반 창업 성공사례를 발굴·확산
- * 우수 사례는 향후 기술창업 모델로 활용, 관련 정보제공 등을 통해 성과 확산

□ 기대효과

- 공공연구기관의 농업 R&D 성과가 창업과 연계되는 성공사례 창출을 통해 연구성과의 현장 확산 및 기술사업화 선순환 구조 구축
- 청년농업인 소득화 성공사례 창출을 통해 소득향상 기여 및 청년농업인 창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고용 창출
- * 청년 창업 농업인 1개소당 평균 3~5명의 고용 창출 효과(농어촌공사, '23.)

□ 행정사항 : ATIS 활용

-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사업 계획 보고 : 2026. 2. 27.(금)
-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사업 결과 보고 : 2026. 11. 30.(월)

마)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도비)

*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전제환 · 지방농촌지도사 임나래 031-8008-9394)입니다.

□ 목 적

- 영농에 정착한 청년농업인들의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신기술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립기반을 갖춘 정예의 청년농업인 리더 양성

□ 추진방향

- 정예의 청년농업인을 양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 지원체계 구축
-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신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성공모델 마련으로 일자리 창출 및 농업·농촌발전 비전 제시

□ 추진계획

- 사업량: 6개소
- 사업비: 600,000천원(개소당 100,000천원 /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 지원시군: 용인, 화성, 파주, 김포2, 양평
- 지원대상: 2026년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자
 - ※ 관련공문: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13363(2025.12.31.)호
- 세부추진요령
 - 생산·가공: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가공 시설 및 기반조성
 - 유통·브랜드: 시제품·CI제작, 포장재 등 유통개선지원 및 브랜드 개발
 - 체험·교육: 체험장, 실습장 등 체험교육 시설·장비 설치 등
 - ICT활용: 노후화된 농장을 ICT 등 첨단 시설 개선
 -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신기술시범사업 및 영농활용 기술 적용
 - ※ 도: 자치단체자본보조 → 시군: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

□ 기대효과

-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정예의 청년농업인들을 집중 육성하여 자립기반을 갖춘 청년농업인 성공모델로 집중 육성

□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보고: 2026. 3. 13.(금) (제1호 서식)
- 사업추진 결과보고: 2026. 11. 27.(금) (제2호 서식)

[제1호 서식]

2026년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사업계획(3. 13.)

□ 사업대상자 현황

시군명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사업내용

□ 사업비 집행계획

시군명	사업계획 (세부 지원내용)	사업규모 (ha, 사육두수 등)	사업비(단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세부항목별 기재					
	-					

[제2호 서식]

① 2026년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사업결과(11. 27.)

□ 사업결과

시군명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사업내용

사업결과 (세부 지원내용)	사업비(단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세부항목별 기재				
-				

사업 분야	작목 (분야)	생산량 (단위:kg,두,명 등)	소득분석(단위:천원)					
			2025년			2026년(사업 후 현재)		
			조수입	경영비	소득	조수입	경영비	소득

□ 만족도 조사(미흡 시 반드시 사유 기재)

시군명	만족도 조사(사업추진 후)				
	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명(100%)	명(%)	명(%)	명(%)	명(%)

미흡(불만족) 사유	내용

☐ 사업추진 효과 및 우수사례

사업내용	사업추진 효과 및 우수사례
-	-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	-

☐ 관련사진(3매 이상)

(사진)	(사진)	(사진)
제 목	제 목	제 목

② 2024년 및 2025년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추진 결과 제출(11. 27.)

☐ 2024년(5개소): 고양, 김포, 이천2, 여주

☐ 2025년(6개소): 용인, 고양2, 화성, 평택2

☐ 추진결과(양식)

사업연도	시군명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사업내용

사업연도	사업분야	작목 (분야)	생산량 (단위:kg,두,명 등)	소득분석(단위:천원)					
				사업전			2026년(사업 후 현재)		
				조수입	경영비	소득	조수입	경영비	소득

☐ 사업추진 효과

사업내용	효과
-	-

☐ 문제점 및 대책

문 제 점	대 책
-	-

바) 청년농업인4-H회원 신규 영농정착 시범(도비)

*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전제환 · 지방농촌지도사 임나레 031-8008-9394)입니다.

□ 목 적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청년농업인4-H회원들의 초기 영농정착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조기정착에 기여

□ 추진방향

- 영농승계 및 신규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신규 아이디어를 결합한 초기 자립 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지도
- 우수한 청년농업인4-H회원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영농후계인력의 조기확보

□ 추진계획

- 사업량: 15개소
- 사업비: 450,000천원(개소당 30,000천원 /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 지원시군: 용인,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김포, 광주, 양주,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 지원대상: 만18~39세 청년4-H회원(회원 활동 경력 1년 이상)으로 최근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기능) 또는 면제자
 - ※ 우수회원 우선추천(시군4-H회 임원, 도4-H연합회 임원, 시군4-H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
- 세부추진요령
 - 청년농업인들의 초기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규모화, 현대화 사업
 - 지역실정에 맞는 신기술 및 아이디어 투입으로 작목별 영농 기반 조성
 -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신기술시범사업 및 영농활용 기술 적용
 - ※ 도: 자치단체자본보조 → 시군: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

□ 기대효과

-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농업인들을 영농현장에 새롭게 유입시키고 조기에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 구축

□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보고: 2026. 3. 13.(금) (제1호 서식)
- 사업추진 결과보고: 2026. 11. 27.(금) (제2호 서식)

[제1호 서식]

2026년 청년농업인4-H회원 신규 영농정착 시범 사업계획(3. 13.)

□ 사업대상자 선정현황

시군명	성명	성별	연령	주작목 (규모)	주소	사업내용

□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계획 (세부 지원내용)	규모 (㎡ 개 등)	사업비(단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세부항목별 기재					
-					

[제2호 서식]

① 2026년 청년농업인4-H회원 신규 영농정착 시범 사업결과(11. 27.)

□ 사업결과

시군명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사업내용

사업결과 (세부 지원내용)	사업비(단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세부항목별 기재				
-				

사업 분야	작목 (분야)	생산량 (단위:kg,두,명 등)	소득분석(단위:천원)					
			2025년			2026년(사업 후 현재)		
			조수입	경영비	소득	조수입	경영비	소득

□ 만족도 조사(미흡 시 반드시 사유 기재)

시군명	만족도 조사(사업추진 후)				
	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명(100%)	명(%)	명(%)	명(%)	명(%)

미흡(불만족) 사유	내용

☐ 사업추진 효과 및 우수사례

사업내용	사업추진 효과 및 우수사례
-	-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	-

☐ 관련사진(3매 이상)

(사진) 제 목	(사진) 제 목	(사진) 제 목

② 2024년, 2025년 청년농업인4-H회원 신규 영농장착 시범 추진 결과 제출(11. 27.)

☐ 2024년(15개소): 용인,고양,화성,남양주,평택,김포,광주,양주,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기평,연천

☐ 2025년(15개소): 용인,고양,화성,남양주,평택,김포,광주,양주,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기평,연천

☐ 추진결과(양식)

사업 연도	시군명	성 명	성별	연령	주 소	사업내용

사업 연도	사업 분야	작 목 (분야)	생산량 (단위:kg,두,명 등)	소 득 분 석(단위:천원)					
				사업 전			2026년(사업 후 현재)		
				조수입	경영비	소 득	조수입	경영비	소 득

☐ 사업추진 효과

사업내용	효 과
-	-

☐ 문제점 및 대책

문 제 점	대 책
-	-

사) 청년농업인4-H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시범(도비)

*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전제환·지방농촌지도사 임나례 031-8008-9394)입니다.

□ 목 적

- 기후변화 대응 시설하우스 환경관리, 환기 등 자동화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강화와 농촌노동력 부족 및 악성 노동조건 해결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

□ 추진방향

- 지역여건과 농가 특성에 맞는 스마트농업 기술 투입을 통한 자동화
- 단동·연동형 시설하우스의 천장 또는 측창자동개폐가 가능한 스마트팜 모델 적용

□ 추진계획

- 사업량: 7개소
- 사업비: 140,000천원(개소당 20,000천원 /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 지원시군: 화성, 안산, 평택, 김포, 광주, 여주, 가평
- 지원대상: 만18~39세 청년4-H회원(회원 활동 경력 1년 이상)으로 최근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가능) 또는 면제자
 ※ 우수회원 우선추천(시군4-H회 임원, 도4-H연합회 임원, 시군4-H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
- 사업규모: 시범요인을 사업목적에 맞게 충족할 수 있는 영농규모
- 시범요인: 단동형·연동형 하우스 맞춤형 스마트팜 기술 보급
- 사업내용: 원격제어(환기+보온), 모니터링(센서+CCTV) 등
 ※ 도: 자치단체자본보조 → 시군: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

□ 기대효과

- 환경모니터링 자동화 시설 원격제어 스마트팜 기술보급으로 악성 노동력 해소 및 노동력 절감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기여

□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보고: 2026. 3. 13.(금) (제1호 서식)
- 사업추진 결과보고: 2026. 11. 27.(금) (제2호 서식)

[제1호 서식]

2026년 청년농업인4-H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시범(3. 13.)

☐ 사업추진 계획

시군명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사업내용

☐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계획 (세부 지원내용)	사업비(단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세부항목별 기재				
-				

[제2호 서식]

2026년 청년농업인4-H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시범(11. 27.)

☐ 사업결과

시군명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사업내용

사업결과 (세부 지원내용)	사업비(단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세부항목별 기재				
-				

사업 분야	작목 (분야)	생산량 (단위:kg,두,명 등)	소득분석(단위:천원)					
			2025년			2026년(사업 후 현재)		
			조수입	경영비	소득	조수입	경영비	소득

☐ 만족도 조사(미흡 시 반드시 사유 기재)

시군명	만족도 조사(사업추진 후)				
	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명(100%)	명(%)	명(%)	명(%)	명(%)

미흡(불만족) 사유	내용

☐ 사업추진 효과 및 우수사례

사업내용	사업추진 효과 및 우수사례
-	-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	-

☐ 관련사진(3매 이상)

(사진) 제 목	(사진) 제 목	(사진) 제 목

② 2024년,2025년 청년농업인4-H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시범 결과 제출(11. 27.)

☐ 2024년(4개소): 안산, 광주, 양주, 연천

☐ 2025년(7개소): 안산, 광주, 양주, 이천, 양평, 여주, 연천

☐ 추진결과(양식)

사업연도	시군명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사업내용

사업연도	사업분야	작목 (분야)	생산량 (단위:kg,두,명 등)	소득분석(단위:천원)					
				사업 전			2026년(사업 후 현재)		
				조수입	경영비	소득	조수입	경영비	소득

☐ 사업추진 효과

사업내용	효과
-	-

☐ 문제점 및 대책

문 제 점	대 책
-	-

【4-H육성 시군별 국·도비 지원내역】

(단위:천원)

시군별	도비(30%)					
	농촌청소년 농촌민속문화 계승사업	4-H회원 과제교육	4-H회원 활동정보 지원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영농정착 시범	청년농업인 4-H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시범
계	9,000(6)	94,500(63)	20,292(1,691)	180,000(6)	135,000(15)	42,000(7)
수원시		4,500(3)	624(52)			
용인시		1,500(1)	1,200(100)	30,000(1)	9,000(1)	
고양시		1,500(1)	720(60)			
화성시	1,500(1)	7,500(5)	1,560(130)	30,000(1)	9,000(1)	6,000(1)
성남시	1,500(1)	4,500(3)	456(38)			
남양주시	1,500(1)	6,000(4)	840(70)		9,000(1)	
안산시		6,000(4)	540(45)		9,000(1)	6,000(1)
평택시	1,500(1)	4,500(3)	1,200(100)		9,000(1)	6,000(1)
시흥시		3,000(2)	432(36)			
파주시		1,500(1)	720(60)	30,000(1)		
김포시		6,000(4)	600(50)	60,000(2)	9,000(1)	6,000(1)
의정부시		1,500(1)				
광주시	1,500(1)	7,500(5)	1,080(90)		9,000(1)	6,000(1)
양주시		6,000(4)	1,200(150)		9,000(1)	
오산시		1,500(1)	456(100)			
이천시		4,500(3)	1,620(135)		9,000(1)	
안성시		7,500(5)	1,440(120)		9,000(1)	
의왕시			324(27)			
포천시	1,500(1)	6,000(4)	1,200(1100)		9,000(1)	
양평군		1,500(1)	1,560(130)	30,000(1)	9,000(1)	
여주시		6,000(4)	1,200(100)		9,000(1)	6,000(1)
가평군		3,000(2)	720(60)		9,000(1)	
연천군		3,000(2)	600(50)		9,000(1)	6,000(1)

(): 사업량

아)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전제환·지방농촌지도사 임나레 031-8008-9394)입니다.

□ 목 적

- 품목농업인연구회 협업경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집단지도를 통한 지도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 추진방향

- 역동적인 연구회 중심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전체 연구회의 활성화 도모
 - 연구회 수준별 육성 목표 및 지원내용 다각화: 학습지원 ↔ 사업화유통조직화 지원
- 읍면동 단위 품목연구회를 시군단위 이상의 품목농업인연구회로 연차적으로 통합 조정
 - ※ 가능한 예산지원은 시군단위 연구회를 우선하여 지원함
- 기술 중심에서 경영·마케팅 및 조직화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연구회 참여비율 확대

□ 근거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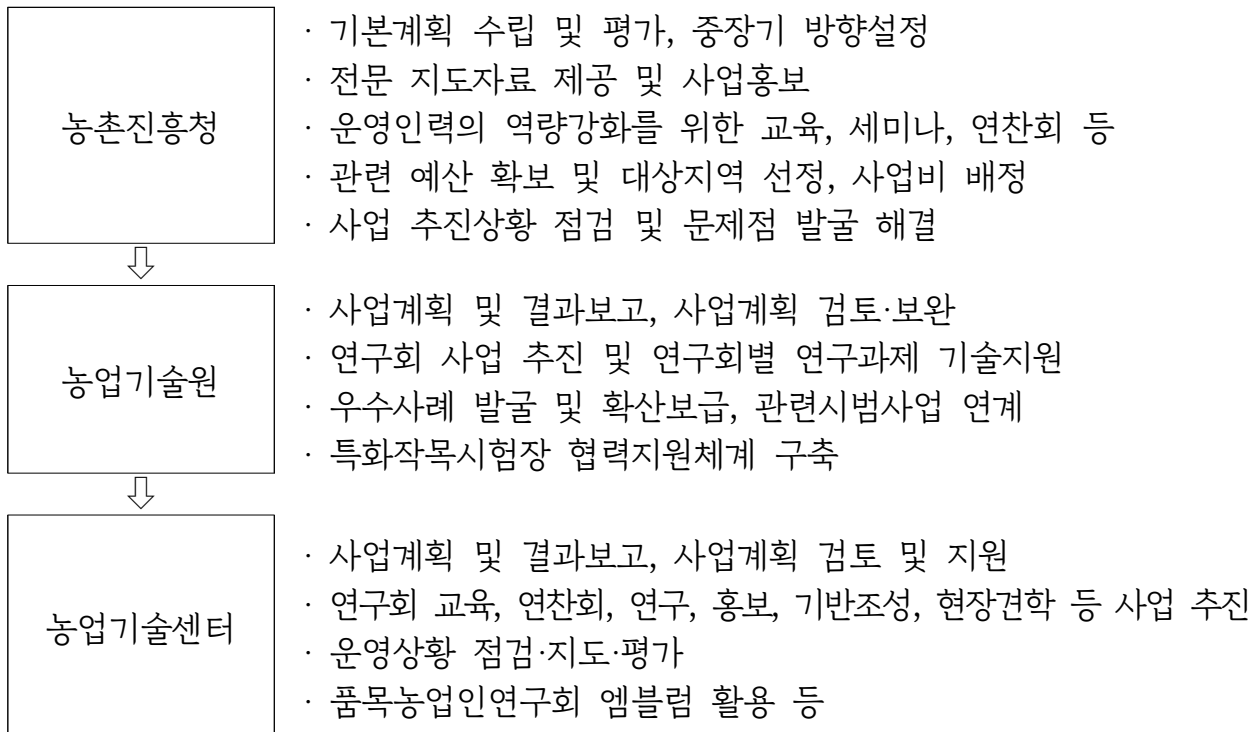
-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 농촌진흥법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훈령 제1172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4.1.1. 법률 제112161호), 동법 시행령(2014.7.17. 대통령령 제25478호)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경기도조례제6718호) 제2조(정의), 제23조(지원 대상사업)

□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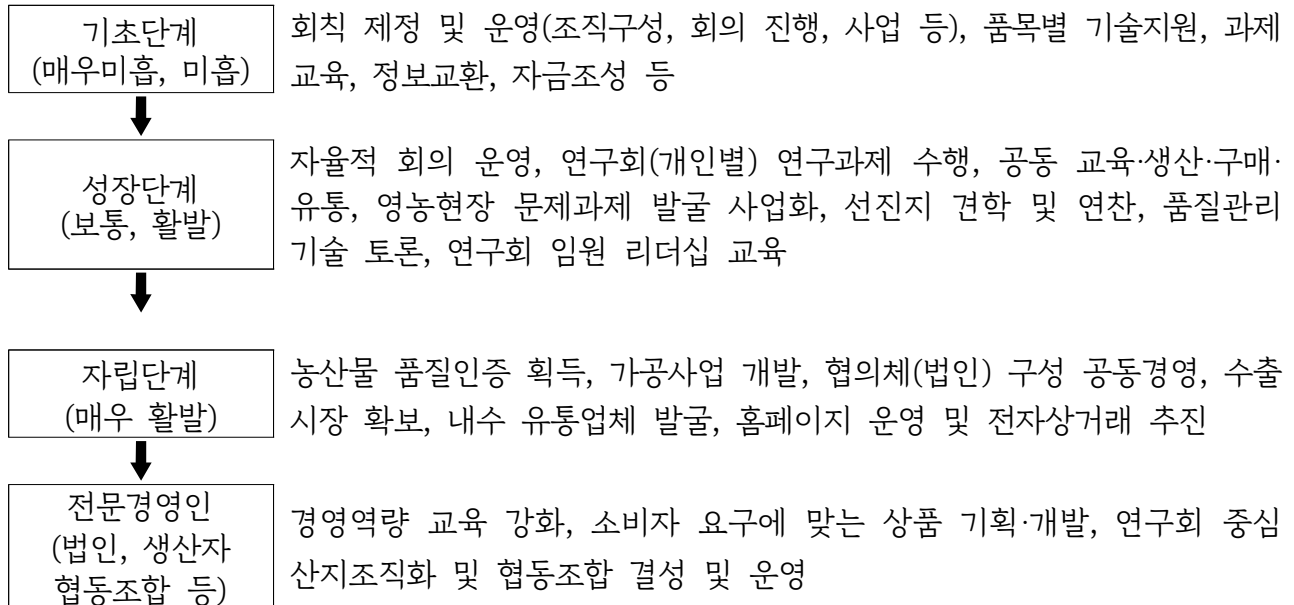
- 사 업 량: 28개소(수원2,용인,고양,화성,성남,남양주,안산,평택,시흥,파주,김포3,의정부,광주,양주,오산,안성5,포천,여주,동두천,가평,연천)
- 사 업 비: 56,000천원(개소당 2,000천원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품목농업인연구회
- 추진시기: 1~11월 중 시군별 여건에 맞게 추진
- 사업내용
 - 기술 향상과 협동경영에 관심이 많으며 연구회 활동이 활발하고 교육, 현장학습, 영농문제해결 의욕이 강한 품목농업인연구회를 중심으로 운영 지원
 - 사업화 및 유통활성화 지원을 위해 품목연구회 조직의 재정비
 - 교육훈련, 연찬회, 연구, 토론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하되, 기술 중심에서 유통 조직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 콘텐츠 지원 강화

- 시군단위 이상의 품목농업인연구회에 대해서는 유통조직화 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품목농업인연구회원의 성장을 위한 활동 지원
 - 분기별 1회 이상 연구회별 연구과제 발표 등 기술정보 교환
 - 연구회 활동 및 상품 판매에 필요한 홍보, 우수사례집 제작 등
 - 타 지역 동일 품목농업인연구회와의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품목경쟁력 향상 기반조성, 현장견학 등 연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

□ 추진체계



<품목농업인연구회 성장단계별 주요 지도체계>



□ 추진순기표

세 부 추 진 내 용	추진시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회 육성계획 수립												
○ 교육 및 연찬 등 추진												
○ 평가 및 결과보고												

□ 기대효과

- 품목별 전문경영능력 향상 및 품목별 농업인 조직의 활성화
- 새로운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 확산 및 기술농업의 조기 정착

□ 행정사항

- 품목농업인연구회 추진계획 보고: 2026. 3. 13.(금) (제1호 서식)
- 품목농업인연구회 추진결과 보고: 2026. 11. 27.(금) (제2호 서식)

[제1호 서식]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사업 계획(3. 13.)

□ 사업계획

시군	연구회명	사업내용	예산액(천원)	비고
		- 경영마케팅 교육		

[제2호 서식]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사업 추진결과(11. 27.)

□ 사업추진 결과

시군	연구회명	사업내용	집행액(천원)	비고
		- 교육명:경영마케팅 교육 - 장소: - 인원: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미흡 시 반드시 사유 기재)

시군명	만족도 조사(사업추진 후)				
	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명(100%)	명(%)	명(%)	명(%)	명(%)

미흡(불만족) 사유	내용

□ 관련사진(3매 이상)

(사진)	(사진)	(사진)
제 목	제 목	제 목

<참고>

<품목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 평가표>

1. 연구회명:

2. 평가표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기준 및 배점	현황	평가지표	점수	비고
활동기반(20)	회원 구성		60세미만 50%미만	(5)	
			60세이상 50%이상	3	
	연구회 사업계획 수립 유무		있음	(4)	
			없음	-	
	회원규모 및 활동연한		5년이상, 40명이상	(3)	
			3~5년미만, 40명이상	2	
			3년이하, 기타	1	
	지방비 지원		5백만원 이상	(4)	
			3~5백만원 미만	3	
			3백만원 이하	1	
회원활동 (30점)	교육 및 연찬 실적		1백만원 이상	(4)	
			1백만원 미만	2	
			없음	-	
	과제 발표 수		4회 이상	(10)	
			3회	7	
			1~2회	5	
			없음	-	
	농산물 소비촉진 판촉·홍보활동		4회 이상	(10)	
			3회	7	
			1~2회	5	
			없음	-	
시장 교섭력 (50점)	브랜드 활용 (지자체 공동브랜드 포함)		활용	(10)	
			미 활용	5	
			없음	-	
	농산물 품질 인증 여부 (연구회 대상, 소속회원은 5인이상)		인증획득	(10)	
			진행중	5	
			없음	-	
	공동구매 · 판매활동 참여		80% 이상	(30)	
			60~79%	24	
			40~59%	18	
			20~39%	12	
			20% 미만	6	
합계				100	

※ 활동수준: 60점 이하(기초단계), 60~75점 미만(발전단계), 75점 이상(자립단계)

※ 위 평가표는 품목농업인연구회 활동결과 보고 시 근거자료로 활용함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시행 2022.9.13.]

[농촌진흥청훈령 제1344호, 2022.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된 품목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품목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인 이익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농촌진흥기관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② “농촌진흥기관”이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제3조(명칭) 연구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특별시·광역시 포함)단위 연구회는 “○○시(군)○○연구회”라 한다.
2. 시군단위 연계조직이 없는 도 단위 연구회는 “○○도○○연구회”라 한다.
3. 시군단위 연계조직이 있는 도 단위 연구회는 “○○도○○연구연합회”라 한다.
4. 중앙단위 연구회는 “전국○○연구연합회”라 한다.

제4조(연구회의 조직) ① 시군단위, 광역단위, 연계조직이 없는 도 단위는 연구회로 조직하고, 연계조직이 있는 도·중앙단위는 연합회로 조직한다.

1. 시군단위는 지역특화작목, 수출작목 등 해당자치단체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
2. 특별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1개 시군에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이 적을 경우 인근 시군을 합하여 광역단위 연구회를 조직할 수 있다.
3. 도 단위는 품목별 시군단위 조직의 임원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시군 연계 조직 없이 희망 농업인이 모여서 조직할 수도 있다.
4. 중앙단위는 품목별 도 단위 조직의 임원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

② 단위 연구회는 지역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회원수는 10명이상** 이어야 한다.

③ 연구회는 자체규약(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연구회의 명칭, 목적, 사업, 회원, 임원, 회의, 재정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5조(활동) ① 연구회는 연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간 분기별 1회 이상 정례모임을 개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문제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품목별 경영(생산,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실천하고 다양한 기술정보 교류

2. 개별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여 공동사업은 물론 수출까지 확대하여 농가소득향상에 주력

3.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통혁신을 도모

② 연구회는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③ 연구회는 전 회원이 경영기록의 생활화 등 농업경영 개선을 도모한다.

④ 농촌진흥기관은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원, 지도자 및 지도(연구)공무원 등에게 교육, 연찬회,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육성위원회) 농촌진흥기관은 연구회 육성을 위하여 연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군,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고, 도·중앙의 경우 담당 부서장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 지도(연구)공무원 5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촌진흥기관에서 연구회 육성을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회의 등록, 사업선정, 활동방향 심의 등 연구회 제반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연구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한다.

제7조(운영지원) ① 농촌진흥기관은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한다.

② 농촌진흥기관은 연구회별 전담 지도사(연구사)를 1인 이상 지정한다.

③ 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기관의 시범 및 주요사업을 연구회(연구회원 포함)를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지원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기관은 연구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기술사회 등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농촌진흥기관은 매년 연구회(연합회 포함)를 평가하여 우수 연구회를 시상할 수 있고, 우수 연구회에게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교육훈련 사업

가. 농업인대학 운영

*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서승준·지방농촌지도사 이은형 031-8008-9397, 9399)입니다.

□ 목 적

-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농장경영 및 과학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 전문농업 분야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로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농업인력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

□ 근거 법령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실시),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중점방향

-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등 지역농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별 전문경영인으로서의 기업가적 마인드 형성을 위한 교육
-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농장관리와 관련된 각종 정보수집 및 분석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 * (예 : 스마트·데이터 농업 및 고령층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등)
- 5개월 이상~1년 이내의 중장기, 중급 수준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설계·운영
 - 교육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통합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대상자 수준을 고려한 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생 선발(예, 기초 ~ 심화 등)
 - * (추진절차 예시)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설계(예, ○○과정(실무), ○○○과정(심화) 등) → 교육생 모집 → 교육생 수준 진단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 * 자체 선발기준 마련,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수료자 심화 교육으로 연계 권장
 - 지역 내 농업인 대상 교육수요 조사 결과, 전년도 교육 결과 등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품질향상 도모

-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실습을 확대하고, 적합한 교육인원 편성
- 집합교육, 실기 실습, 현장 견학, 혼합교육(집합+이러닝) 등 과정 특성에 따른 적절한 학습 방법·도구를 활용해 학습효과를 높이고, 중간 탈락자 방지를 통한 수료율 향상
- 과정 운영상 필요한 자치활동,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에 자율적 참가비 부담 등으로 학습 참여 및 효과를 높이고, 교육생 출결 관리 강화
(총 교육시간의 75% 이상 참여 시 수료)
- 홍보 강화, 교육방식 변경 등으로 새로운 교육 수요자를 발굴하여 지역 농업인의 신규 참여 확대
- 졸업생 역량 강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고, 시범사업 지원, 연구 사업 공동 수행 등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그룹으로 육성
-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한 도단위 사전협의회를 실시하여 기관별 추진계획 수립 및 과정 운영의 내실화 유도(1회 이상 실시)
 - 도농업기술원,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시군 담당자 협의
- 청년농업인학과·스마트농업학과 운영, 여성농업인 참여율 높은 시군에는 강사와 교육프로그램 지원, 우수기관 평가 시 가점 적용 및 예산지원 확대

□ 추진개요

- 교육기간: 1 ~ 12월(과정별 총 15회 이상, 60~150시간 편성)
 - 과정별 최소 기준: 월 2회 이상(회당 4시간 기준)으로 편성
- * 1과정을 1년 단위, 상·하반기로 탄력적 운영 가능
- * 100시간 편성을 권장하되, 교육과정 및 내용 특성에 따라 60~150시간 이내 가감 가능
- * 일정 협조: 10월 말 학습종료 → 11월 학습평가 → 12월 대외홍보, 새해 계획
- 교육인원: 과정당 15~40명 수준(교육 품질 및 환경 최적화 유도)
- 교육장소: 시군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 영농 현장, 온라인 학습장 등
-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수준과 사전 요구 분석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설계·운영 (지역 특화 품목 등)
- 교육방법: 집합교육, 실기 실습 교육, 현장 견학, 혼합교육(집합+이러닝) 등 적합한 방법 활용

<권장사항> ※ 권장사항의 일부 내용은 농업인대학 운영 평가 시 반영

- 과정 내용에 온오프라인 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농업기계·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디지털 활용능력(리터러시) 교과목을 전체 과정의 10% 내외 편성
 - * 예) 100시간 과정 중 10시간(10%)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관련 교과목 편성
 - *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이러닝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습관리시스템 통해 제공
- 청년농업인학과·스마트농업학과 운영, 여성농업인 참여율 향상 방안 강구
 - * 스마트농업 교육 시 센터 내 테스트베드 교육장 연계 권장
- 스마트농업 활용매뉴얼 및 기술 역량 체계 등을 참조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설계, 「기술수준 진단도구」 활용 교육생 수준 진단 및 프로그램 반영 등
 - * 개발발과정('25 기준): 원예공통, 딸기, 토마토, 한우, 고추, 감귤, 오이, 상추, 양돈, 파프리카, 축산공통, 수박, 장미, 포도, 젓소, 블루베리, 참외, 사과, 참다래(키위), 멜론, 복숭아, 망고
 - * 관련 자료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
- 양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성평등 의식 또는 인권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며, 여성 농업인 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군 여건을 고려하여 '돌봄여건 지원'

○ 사업규모: 17개소 363백만원(국비 181.5, 도비 90.75, 시군비 90.75)

(단위: 천원)

구분	합계	국특(50%)	도비(25%)	시군비(25%)
계	363,000	181,500	90,750	90,750
용인시	24,000	12,000	6,000	6,000
고양시	20,000	10,000	5,000	5,000
화성시	24,000	12,000	6,000	6,000
남양주시	20,000	10,000	5,000	5,000
안산시	17,000	8,500	4,250	4,250
평택시	18,000	9,000	4,500	4,500
파주시	18,000	9,000	4,500	4,500
김포시	17,000	8,500	4,250	4,250
광주시	18,000	9,000	4,500	4,500
양주시	26,000	13,000	6,500	6,500
이천시	26,000	13,000	6,500	6,500
안성시	16,000	8,000	4,000	4,000
포천시	31,000	15,500	7,750	7,750
양평군	25,000	12,500	6,250	6,250
여주시	22,000	11,000	5,500	5,500
가평군	26,000	13,000	6,500	6,500
연천군	15,000	7,500	3,750	3,750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 편성과목: 강사수당, 일반수용비, 수당, 보상금, 임차료, 원고료, 재료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총사업비의 10% 이내), 기타 목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 편성 * 국외업무여비 편성 불가

□ 운영요령

- 중앙에서 제공하는 학습관리시스템 및 지원 도구 적극 활용(e-HRD 시스템)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습관리시스템」 연계 교육 운영·관리 효율화
 - * 지역 특화 과정 개설·관리, 자료공유(농업인대학 운영 매뉴얼, 스마트농업 활용 매뉴얼 등), 강사풀, 과정지원(설문 등), 수요조사, 통계관리, 하이브리드러닝, 마이크로러닝, 사이버 과정 등
 - 「농업인대학 운영 표준매뉴얼(개편)」 활용 체계화된 교육 추진
 -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습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http://hrd.rda.go.kr> '열린마당' 자료실>일반자료'), 농업과학도서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농업인교육 강사 POOL」 활용(농촌진흥기관 농업기술전문가, 외부 전문가 등)
 - * 농업인대학 교육프로그램 책자,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등 참고
-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
 - 농업기술센터 교육에 출강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실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강사수당 등의 자체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보조강사, 일반강사, 특별강사의 일반 지급 기준 외에도 지역 실정에 맞게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
 - 특별강의, 보조강사 범위, 동일 강사 중복출강 등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강사수당 지급 특례 기준을 세워 추진

□ 운영·관리 방향

【현장 위주, 실습 위주의 농업인대학 운영】

- 농가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체험·실습 위주의 교육
 - * 농업기술 연계 강화: 농업인대학 ↔ 연구지도 ↔ 전문지도 연구회원 연계

【농업인대학의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 지원】

-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간 교육과정 개설 사전협의회(1회 이상)
 - 기관별 추진계획 수립논의, 운영 과정 차별화, 발전 방안 등 논의
 - * 도, 특광역시 주관으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 시군 담당자 협의
- 농업인대학 교육담당자 역할 정립 및 역량 강화 교육(연초)
 - 농업인대학 교육과정 설계 등 표준매뉴얼, 평가 방법, 사례공유 등
 - * 농업인대학운영 표준매뉴얼 활용하여 시군별 교육과정 설계, 교육과정 운영 등
- 시군별 교육프로그램 및 일정 관리, 강사풀 및 교육자료 등 지원
 - * 시군 담당자가 e-HRD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시군별 농업인대학 교육과정 및 운영프로그램 제작·배부 등
- 농업인대학 우수수료자는 농업인교육의 협력 대상자(강사, 멘토)로 육성

【중양-지방 간 업무 협력 강화 및 교육 운영 성과제고】

- 중양-지방간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소통 활성화
 - * 농업인교육(농업인대학) 운영담당자 워크숍, 농업인교육 현장 모니터링(7월) 등: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지원, 강사지원체계 구축, 현장의견 청취 등
- 농업인대학 운영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절차
 - : 농업인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26년 3월 중 별도 공문 시행

【성과중심 농업인교육 분야별 교육평가 및 성과 확산】

- (중양) 성공사례 확산 성과보고회 개최(12월, 종합평가회 연계 등) 및 우수사례 홍보
- (중양) 농업인교육사업 운영 우수기관 및 우수수료자(성적우수상 등) 시상
- (도 평가) 농업인대학 운영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절차(안)

평가주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평가구분	자체평가(1차)		역량평가(2차)		발표경진(3차) *3개 우수시군 발표
평가대상	17개 시군	⇒	17개 시군 中 *3개 우수시군 선발	⇒	3개 시군
평가지기	'26. 12. 14. ~ 12. 24.		'26. 12. 28. ~ '27. 1. 22.		'27. 2월(예정)
평가지표 (배점)	11개(80점)		2개(20점)		발표경진 100%로 평가

※ 평가절차, 평가지기, 평가기준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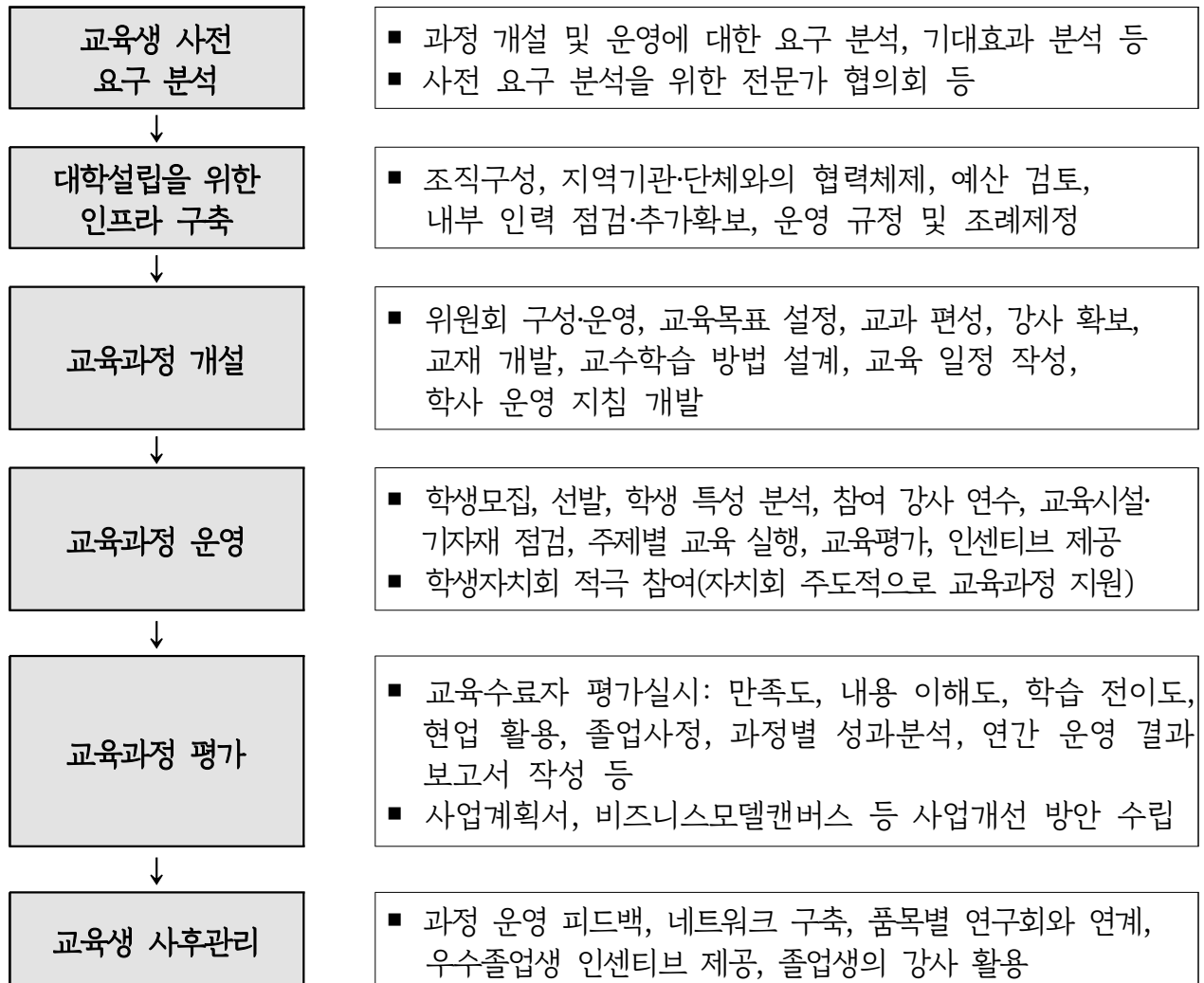
☞ 평가결과, 차년도 예산 확보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 차등 지원, 농업인대학 우수기관 및 우수수료자 시상,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

* (자체 평가기준 예시) 학습자 요구분석반영, 전년도 운영결과 환류, 과정개설(청년농업인, 스마트 농업 등 정책연계 학과 추가점수), 농업기계 및 안전교육 교과목 편성률, 자체강사 활용 및 양성노력, 여성·청년농업인 참여율, 교육생 선발기준 마련, 교육생 수료율, 만족도 및 영농능력 향상도, 졸업생 역량강화 지원, 농업기계 관련 교과목 편성률, 도단위 사전협의회 참석 등

* (역량 평가기준 예시) 운영성과, 업무 협조성, 지역 특화작목 과정개설, 자료의 충실도 등

* (발표경진 기준 예시) 교육내용, 교육성과, 운영의 독창성, 전달력 등

□ 추진체계



□ 행정사항

○ e-HRD 시스템 입력

- 교육과정(교육 전), 수료생 등록(교육 후 2주 이내), 교육실적(교육 후 2주 이내)

○ 농촌지도사업 종합관리시스템(ASTIS) 등록&공문 제출 ***ASTIS 첨부 양식 활용**

- 2026년도 사업추진계획 보고: 2026. 2. 26.한
- 2026년도 농업인대학 영농능력향상도 조사결과 및 사업추진결과 보고: 2026. 11. 26.한
 - 조사대상: 농업인대학 수료생
 - 조사방법: 조사표에 의한 사전, 사후 조사(개강일 및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 측정산식: (교육 후 점수 - 교육전 점수)/교육전 점수×100**
- 조사내용: 교육생 의식, 영농활동 및 경영 의지, 자금 및 판매관리 등

<참고 1>

농업인대학 영농능력향상도 조사표

1. (사전 검사 문항) 아래 문항은 농업인대학 시작 시점에서 아래 공통문항(6문항)과 선택문항(4문항)을 조사해 주십시오. 선택문항은 4개 영역이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영역을 선택하거나 타영역의 문항을 조합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농업인대학 영농능력향상도 조사표(교육 전)							
_____시·도 _____시군 성명 _____ /총점 100점 (점)							
나는 이번 농업인대학 과정을 참여하기 이전까지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4점)	보통 (6점)	그렇다 (8점)	매우 그렇다 (10점)	
공통문항		1.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2. 영농 의지가 높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범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농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양한 농업인 교육과정을 찾아보고 참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6. 영농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선택 문항	경영· 마케팅	7.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다양한 판매처를 통해 다른 농가보다 높은 소득을 얻었다.	①	②	③	④	⑤
		9. 적합한 마케팅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확보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0. 영농일지 등을 통해 경영기록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영농 기술	7.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생산과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을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9. 생산과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최신 영농 기술을 알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가공	7. 가공 과정에서 문제점을 스스로 찾을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8. 가공 과정에서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9. 가공과 관련한 이론적 내용을 알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최신 가공 기술을 알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기타	7. 안정적으로 영농에 안착하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친환경, 디지털 등 영농의 변화를 알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9. 영농과 관련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강소농으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사후 검사 문항) 아래 문항은 농업인대학 종료 시점에서 아래 공통문항(6문항)과 선택문항(4문항)을 조사해 주십시오. 선택문항은 4개 영역이며, 사전 검사에 활용했던 문항과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주십시오.

농업인대학 영농능력향상도 조사표(교육 후)							
_____시·도 _____시군 성명 _____ /총점 100점 (점)							
나는 이번 농업인대학 과정 이수를 통해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4점)	보통 (6점)	그렇다 (8점)	매우 그렇다 (10점)	
공통문항		1.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영농 의지가 높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범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농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양한 농업인 교육과정을 찾아보고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영농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선택 문항	경영· 마케팅	7.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다양한 판매처를 통해 다른 농가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적합한 마케팅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영농일지 등을 통해 경영기록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영농 기술	7.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생산과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생산과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최신 영농 기술을 알리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가공	7. 가공 과정에서 문제점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가공 과정에서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가공과 관련한 이론적 내용을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최신 가공 기술을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기타	7.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친환경, 디지털 등 영농의 변화를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 영농과 관련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출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강소농으로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참고 2>

농업인대학 수료 설문서(서식)

□ 과정명 :

□ 일 자:

년 월 일

00시·군 농업인대학의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귀하께서 이번에 이수하신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보다 나은 교육과정으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해당번호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 | 매우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1. 본 교육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⑤ ④ ③ ② ① | |
| 2. 본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은 과정의 목적에 부합하게 구성되었다. | ⑤ ④ ③ ② ① | |
| 3. 본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은 영농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 ⑤ ④ ③ ② ① | |
| 4. 본 교육과정에서 활용한 교육 방법은 교육 내용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⑤ ④ ③ ② ① | |
| 5. 본 교육과정에서의 교육은 내가 직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가치롭고 의미가 있었다. | ⑤ ④ ③ ② ① | |
| 6. 본 교육과정에서의 교육은 나의 개인적 성장 측면에서 가치롭고 의미가 있었다. | ⑤ ④ ③ ② ① | |
| 7. 본 교육과정의 운영 및 행정 전반에 대하여 만족한다. | ⑤ ④ ③ ② ① | |
| 8. 본 교육과정의 교육진행요원들은 문의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였다. | ⑤ ④ ③ ② ① | |
| 9. 본 교육과정을 위한 강의장, 기자재, 실습용 장비 및 시설에 만족한다. | ⑤ ④ ③ ② ① | |
| 10. 본 교육과정을 위한 식당, 숙소, 휴게시설 등에 만족한다. | ⑤ ④ ③ ② ① | |
| 11. 본 교육과정을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 ⑤ ④ ③ ② ① | |

매우 높음

전혀 없음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12. 본 교육과정의 좋았던 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13. 본 교육과정의 개선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① 40세 미만 ② 40~49세 ③ 50~59세 ④ 60~69세 ⑤ 70세이상

영농경력 ① 5년이하 ② 6~9년 ③ 10~19년 ④ 20~29년 ⑤ 30년이상

* 양식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8번 계산) 순추천지수(NPS) = 추천교육생(%) - 비추천교육생(%)

(추천교육생: 9점~10점, 중립교육생: 7점~8점, 비추천교육생: 0점~6점)

<참고 3>

농업인대학 교육과정 강사평가(서식)

□ 과정명 :

□ 일 자:

년 월 일

과정을 진행한 강사에 대한 평가로 향후 과정 개설 시 보다 나은 교육과정으로 개선, 발전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해당번호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I. 교육과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강사는 해당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하였다.(강의 전문성)	⑤ ④ ③ ② ①	
2. 강사는 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였다.(강의 기술)	⑤ ④ ③ ② ①	
3. 강사는 상황에 맞는 교수방법(질문, 예시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다.(강의 방법)	⑤ ④ ③ ② ①	
4. 강사는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충실하게 강의하였다.(강의 태도)	⑤ ④ ③ ② ①	
5. 교재내용은 학습목표와 일치하고 체계적으로 조직되었다.(강의 내용)	⑤ ④ ③ ② ①	

□ 교과목 및 강사에 대한 의견이나 추천하고 싶은 강사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 양식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나. 농업기술 전문교육

*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서승준·지방농촌지도사 이은형 031-8008-9397, 9399)입니다.

□ 목 적

- 교육의 대상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농업인 기술수준 향상 및 미래 농업 대응 농업 전문인력 양성

□ 근거 법령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실시),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기본방향

- 농업인 기술수준별 교육체계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정은 초급·중급 수준으로 설계하고 교육생 선발
 - 스마트농업 활용매뉴얼 및 기술역량 체계 등을 참조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설계, 「기술수준 진단도구」 활용 교육생 수준 진단 및 프로그램 반영 등
- * '25 기준 개발과정: 원예공통, 딸기, 토마토, 한우, 고추, 감귤, 오이, 상추, 양돈, 파프리카, 축산공통, 수박, 장미, 포도, 젖소, 블루베리, 참외, 사과, 참다래(키위), 멜론, 복숭아, 망고
- * 관련 자료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
- 교육대상자별 스마트농업·품목기술교육, 디지털 활용능력(리터러시)교육 등 수준별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 신수요자 농업·농촌교육은 지방 자체 계획으로 추진
- 양성 평등적 교육 운영으로 성별 불균형적인 요인 최소화
 - 남녀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설계, 교육여건 조성 등

<참고>

<농업인교육훈련사업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안내센터('21.11.24)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는 행사로서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교육추진에 필요한 교육참가자의 차량지원, 급식비 및 기타 필요경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사용 지침을 포함하여 시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인 농업기술센터가 그 지침 범위안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행정사항

○ e-HRD 시스템 입력

- 교육과정(교육 전), 수료생등록(교육 후 2주 이내), 교육실적(교육 후 2주 이내)

○ ASTIS 등록

- 사업계획: '26. 2. 25.까지, <공통 양식> 참조
- 결과보고: 상반기 '26. 6. 26.까지, 하반기 '25. 11. 18.까지, <공통 양식> 참조

<농업기술 전문교육>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농업기술전문 교육		
		균특(50%)	도비(25%)	시군비(25%)
계	286,000	143,000	71,500	71,500
수 원 시	14,000	7,000	3,500	3,500
용 인 시	16,000	8,000	4,000	4,000
고 양 시	10,000	5,000	2,500	2,500
화 성 시	25,000	12,500	6,250	6,250
성 남 시	3,000	1,500	750	750
남양주시	13,000	6,500	3,250	3,250
안 산 시	9,000	4,500	2,250	2,250
평 택 시	13,000	6,500	3,250	3,250
시 흥 시	13,000	6,500	3,250	3,250
파 주 시	11,000	5,500	2,750	2,750
김 포 시	14,000	7,000	3,500	3,500
광 주 시	10,000	5,000	2,500	2,500
양 주 시	24,000	12,000	6,000	6,000
이 천 시	12,000	6,000	3,000	3,000
안 성 시	12,000	6,000	3,000	3,000
포 천 시	12,000	6,000	3,000	3,000
양 평 군	34,000	17,000	8,500	8,500
여 주 시	16,000	8,000	4,000	4,000
가 평 군	14,000	7,000	3,500	3,500
연 천 군	11,000	5,500	2,750	2,750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 편성과목: 강사수당, 일반수용비, 수당, 보상금, 임차료, 원고료, 재료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총사업비의 10% 이내), 기타 목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 편성 * 국외업무여비 편성 불가

1) 새해농업인실용교육

*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서승준·지방농촌지도사 한지영 031-8008-9397, 9401)입니다.

□ 목 적

- 새해영농계획 수립, 농업정책, 연구 개발된 신기술 등의 교육으로 농정에 대한 일체감 조성 및 농업인 역량 향상

□ 기본방침

- 교육기간: 2025년 12월 ~ 2026년 2월
- 교육대상: 품목별 새기술 수용 의지가 높은 농업인 등
- 교육시간: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1일 2~5시간 자율 편성

□ 추진방향

- 국정과제 및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과 연계한 교육 추진
- 지역별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차별화된 작목 기술 교육과정 운영

□ 주요내용

- 각 지역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전문교육과정 개설·운영('25.12.~'26.2)
 - 교육분야: 영농기술, 농촌자원, 농업경영 등 3개 분야
 - 교육방법: 집합교육 중심 + 온라인교육 병행
- '26년 주요 농업정책 및 최근 이슈가 되는 사항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
 - * 교육 시작 전 홍보 동영상 상영, 리플릿 배부·설명 등 활용 가능

□ 추진방법

- 1일 교육 시간을 고려하여 품목별 핵심과제를 집중 교육
 - 연중 주요 영농시기별 실천과제 교육 및 현장 지도와 차별화
- 시군특성 및 현장경험을 살린 교수 방법을 통하여 학습효과 극대화
 - 사례분석, 질의응답 및 토의, 실물 비교, 연시, 실습 등
-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성과 확산
- 교육기간 중 다루지 못한 기술은 「품목별 교육」으로 연중 실시
- 사업비 지원액: 농업인 교육사업비(농업기술전문교육)로 활용
 - * 편성과목: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 여비(국내여비-총사업비의 10%내외), 재료비, 일반보전금(급식비, 강사수당 등) 등

<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따른 교육 추진요령 >

★ 특별방역대책기간: '25. 10. 1. ~ '26. 2. 28.

- 중앙, 도 단위 현장 강사교육('25. 11.): 정상 추진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구제역 · AI · 렘피스킨 등 미발생 시: 축산교육 정상 추진
 - ☞ 교육장 입구에 발판 소독조 등 선제적 예방조치 후 교육실시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구제역 · AI · 렘피스킨 등 발생 시: 축산교육 중단
 - ☞ 정상 교육 추진 불가 시 동영상, 책자, SNS 및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 ☞ 발생지역과 인접한 지역(타 시군 등)은 발생지역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교육 추진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

□ 기관별 역할 분담

기 관 별	주 요 역 할
농촌진흥청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기본계획 수립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중앙단위 현장강사교육 추진 ■ 분야별 농업 현장 강사·교재·현장 모니터링 지원 ■ 교육 사전홍보, 우수사례 발굴, 종합평가(유공자 포상)
도농업기술원	■ 도 단위 교육계획 수립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도 단위 현장 강사교육 추진 ■ 교육 홍보 및 강의 지원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 지역 특화작목과 교육수요에 맞는 시군 교육계획 수립 ■ 내부 강사 강의 시연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추진 및 자체 홍보, 결과 자체평가 및 분석

□ 교육평가

- 시군별 교육과정 모니터링, 종합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수립
- 시군별 모범적인 교육 운영사례 발굴 및 확산
- 교육 추진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

□ 행정사항

- e-HRD 시스템 입력
 - 교육과정(교육 전), 수료생등록(교육 후 2주 이내), 교육실적(교육 후 2주 이내)
- ASTIS등록
 - 2026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결과보고(3회): '25년 12월 말 / '26년 1월 말 / '26년 2월 말
 - 2027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사업계획 보고: '26. 11. 13.까지

<참고>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수료 설문서(서식)

□ 과정명 :

□ 일 자 : 년 월 일

본 설문은 귀하께서 이번에 이수하신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보다 나은 교육과정으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해당번호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 | 매우
그렇다 |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 1. 본 교육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2. 교육 내용은 교육 목적에 맞게 구성되었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3. 교육 내용이 현재 영농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4. 강사의 강의 및 교수방법이 적절하였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5. 내가 직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6. 교육운영 전반에 대하여 만족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7. 강의장, 기자재, 실습용 장비 및 시설에 만족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8. 본 교육을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매우 높음

전혀 없음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⑩
---	---	---	---	---	---	---	---	---	---	---

9. 본 교육과정의 좋았던 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10. 본 교육과정의 개선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① 40세 미만 ② 40~49세 ③ 50~59세 ④ 60~69세 ⑤ 70세이상
영농경력	① 5년이하 ② 6~9년 ③ 10~19년 ④ 20~29년 ⑤ 30년이상

* 양식은 기관별 교육내용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 (8번 계산) 순추천지수(NPS) = 추천교육생(%) - 비추천교육생(%)

(추천교육생: 9점~10점, 중립교육생: 7점~8점, 비추천교육생: 0점~6점)

2) 품목별 농업인 기술교육

*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서승준·지방농촌지도사 이은형 031-8008-9397, 9399)입니다.

□ 목 적

- 스마트농업 등 영농현장의 당면과제 및 애로기술을 해결하여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의 영농능력 배양 및 농가소득 증대
- 지역특화 소득품목 육성을 위하여 생산과 유통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미래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농업인 디지털정보 이용능력 배양
-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농업정보화 활용증대 및 과학 영농 실천

□ 중점방향

- 지방화에 부응하여 각 도·시군별로 자체 교육계획 수립추진
- 영농현장에서 농업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한 교육계획 수립추진
- 시군별 주력 품목에 대하여 주요 영농시기별로 실천과제교육을 연중 실시
-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품목 수준별(초급, 중급) 설계하고, 교육생 선발
 - 스마트농업 활용매뉴얼 및 기술역량 체계 등을 참조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설계, 「기술수준 진단도구」 활용 교육생 수준 진단 및 프로그램 반영 등
- * '25 기준 개발과정: 원예공통, 딸기, 토마토, 한우, 고추, 감귤, 오이, 상추, 양돈, 파프리카, 축산공통, 수박, 장미, 포도, 젓소, 블루베리, 참외, 사과, 참다래(키위), 멜론, 복숭아, 망고
- * 관련 자료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
- 품목별 스마트농업 교육과정 확산 및 운영
- 지역농업인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시기 및 방법 모색
- 핵심기술 중심의 구체화된 교육으로 현장애로기술 해결
- 교육관련 품목조직의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교육방식 운영 및 자립운영이 가능한 조직은 자율운영체제로 전환
- 여성농업인에 대한 품목별 전문교육 및 영농기술분야 교육에 참여 증진을 위한 방안 수립 시행
- 농업인 품목조직 운영과 자율적 학습활동 비교견학(벤치마킹) 확대
- 도·시군 자체시설 및 주산단지 현장을 활용한 실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생동감 있는 체험학습 제공

- 도 단위 농업인교육의 특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품목에 대한 교육과정 설정 및 지역민이 원하는 내용 중심의 교과 편성
- 디지털 기술의 농업적 활용 마인드를 함양하고 단위지역 핵심 농업인의 디지털역량 제고
- 농업용 소프트웨어 활용 확대로 경영개선 기반 구축 및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과 연계하여 교육효과 제고
- 농업인(고령층 및 중장년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수준별 디지털 역량 향상 지원 및 온라인 콘텐츠 발굴·보급
-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강사 초빙으로 내실 있는 디지털 활용능력(리터러시) 교육 실시

□ 추진계획

- 교육시기: 연중
- 교육장소: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선도농업인 영농현장, 주산단지 등
- 대상 및 인원: 도 및 시군 자체 계획 수립
 - 농업인 현황조사 및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회원 등 요구조사 후 추진
- 교육내용
 - 스마트농업 품목별·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핵심전문기술 및 정보, 친환경농업기술
 - 농업인 의식전환을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 실시
 - 국가 및 지방농정, 농업인 수요기술 등
 - 현안과제 해결 토의, 실기실습, 컴퓨터이용 교육, 사전 조사표에 의한 선진농장 비교견학(벤치마킹) 등 참여식 교육 확충
 - 지역농업 여건과 교육목표, 농업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연중 학습하는 분위기 조성
 - 도단위 품목별 새기술 경영정보, 스마트농업, 친환경농업기술, 지역별 수요기술, 국가 및 지방농정시책, 농산물 유통, 우수사례 등
 - 농업 활동과 연계한 스마트농업 및 생성형 AI 소개 등
 - 인터넷생성형 AI 활용법 및 SNS를 이용한 농산물 유통방법 교육
 - 농업e지, 농업경영컨설팅자원시스템 활용, 홈페이지 제작·관리,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사례 공유
 - 지역 상황을 고려한 수준별 디지털 역량(초급) 및 활용(중급) 교육 운영 등
 - * 디지털 역량: 스마트폰 기초, 유튜브기초, 유용한 앱 활용, 인터넷검색, 키오스크 활용 등
 - * 디지털 활용: 미디어콘텐츠 이용, 유튜브 영상 제작, 생성형 AI 활용, 모바일 활용 스마트팜 관리 등

○ 추진방법

- 중앙: 교육 기본방향 제시
- 시도: 도단위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교재제작, 예산확보 및 집행 강사·교육자료 등 시군교육 지원
- 시군: 교육 실행계획수립 및 추진, 교육평가, 교육홍보, 교육생 선발·협조 등

□ 행정사항

○ e-HRD 시스템 입력

- 교육과정(교육 전), 수료생등록(교육 후 2주 이내), 교육실적(교육 후 2주 이내)

○ ASTIS 등록

- 사업계획: '26. 2. 25.까지, <공통 양식> 참조
- 결과보고: 상반기 '26. 6. 26.까지, 하반기 '25. 11. 18.까지, <공통 양식> 참조

3)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업인 기본 교육

□ 목 적

-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인증 갱신 포함)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관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 실시

□ 추진방향

- GAP 농업인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하거나,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등과 연계하여 실시
 - 타 교육과정과 연계 시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농약 안전사용 등에 관한 교과목을 반드시 편성 운영
 - * 기본교육 미 이수로 인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인증 갱신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조의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홍보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제2021-12호) 별표 1의 11. 교육
 - *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는 아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 공동작업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조치

과 정 명	•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
교육주기	• 2년에 1회
교육시간	• 2시간
교육기관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내용	• 농산물우수관리 기준 및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 농산물우수관리 실천 요령 등

□ 교육기관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 세부 추진요령

- 교육주관: 시군 농업기술센터(도농업기술원)
 - 교육실행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교육수요 사전조사

- 해당 시군 내의 GAP 교육 이수 희망 농업인에 대하여 교육과정 개설 이전에 마을대표, 생산자단체, 농협, 인삼공사, 산림조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

*** 교육수요 사전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육 희망자 중점 관리**

○ 교육시기

- GAP 기본교육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교육주관 기관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운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기타 인증기관의 요청 시 상호 협의 추진
- GAP 교육이 종료된 이후 추가 교육 신청자가 발생하여 다시 교육개설이 어려울 경우,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 인근 농업기술센터로 안내하고, 인근 농업기술 센터에서는 교육이 끝난 후 교육 이수 확인서를 발급

*** GAP교육 미이수로 인해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

○ 교육장소: 해당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교육여건이 좋은 공공시설 등

○ 교육시간: 지역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운영하되 2시간 이상 실시

*** 가급적 필수 교육내용이 포함된 2시간 이상 GAP 기본교육 별도과정 편성**

○ 교육대상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 중 갱신이 필요한 자(인증기관에서 통보한 농업인)
-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관리하고자 하는 자
- GAP 인증에 관심이 있는 일반 농업인 등

○ 교육내용

- 농산물우수관리 기준 및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 실천 요령(필수)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규정
- 강화되는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및 농약 안전사용기술 등(필수)

*** 교과 과목당 시간 배정은 시군의 실정에 따라 자율 편성**

□ 교육 이수 확인서 발급 및 명단 통보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도농업기술원장)은 GAP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확인서(참고 1)를 발급한 후 이수확인서 발급자 명단(참고 2)을 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통보

○ 이수확인서 발급자 명단 통보처

- 도농업기술원: 해당 지역 농관원 지원
- 시·군농업기술센터: 해당 지역 농관원 관할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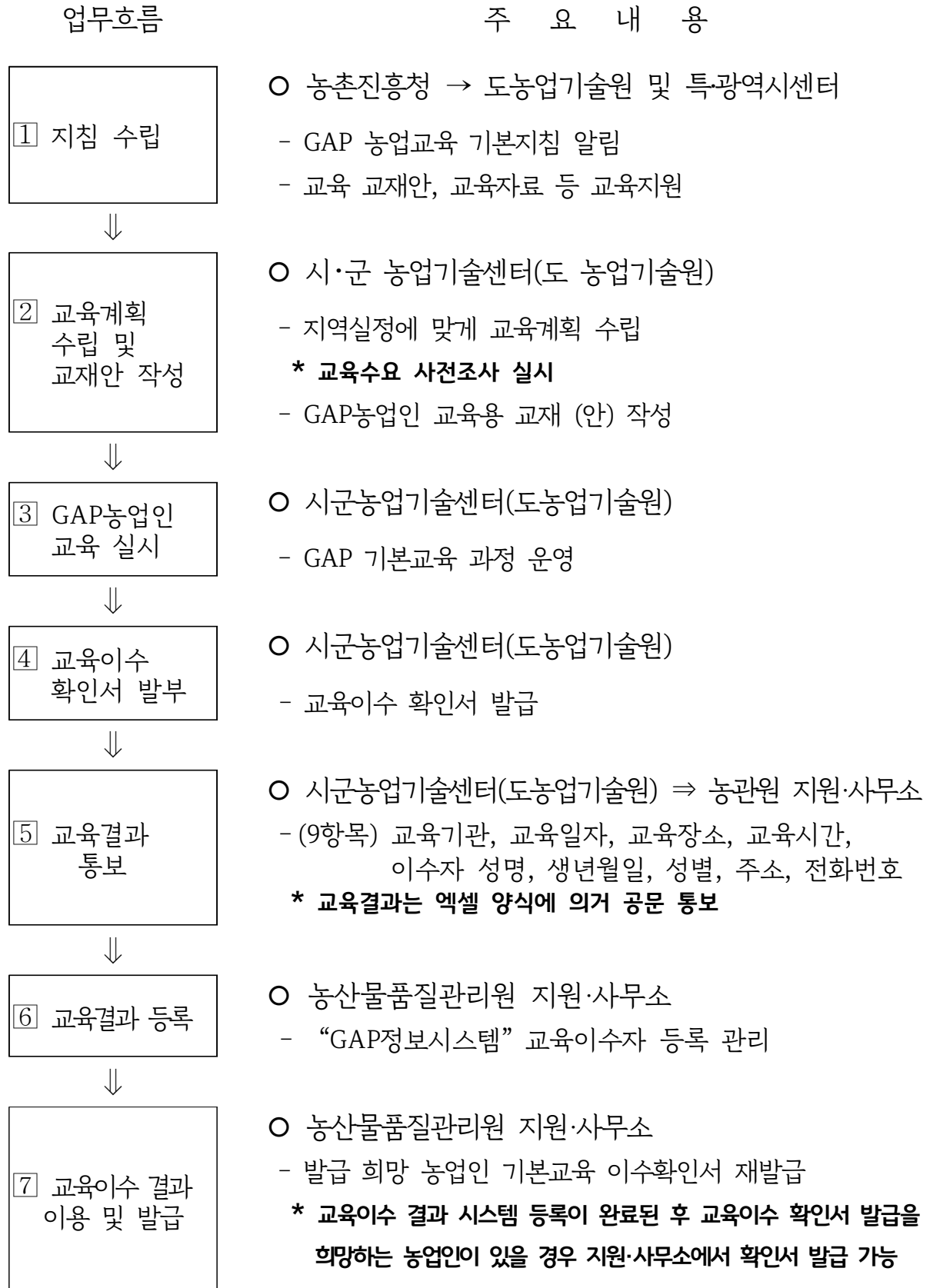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진시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교육수요 사전조사												
○ 교육 실시												

□ 행정사항

- e-HRD 시스템 입력
 - 교육과정(교육 전), 수료생등록(교육 후 2주 이내), 교육실적(교육 후 2주 이내)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GAP 교육수요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
-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대상 농업인에게 교육 일정, 장소 등을 통보·홍보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 종료 후 GAP 교육 상반기 추진실적(2026.6.30.) 및 하반기 추진실적(2026.11.30.) 등을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으로 제출
 - * GAP 기본교육 추진실적은 ASTIS 첨부 보고양식으로 제출
- 기본교육 후 이수확인서 발급자 명단을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통보

GAP 농업인 교육 및 결과 등록 체계



<참고 1>

교육이수확인서 양식

기 본 교 육 이 수 확 인 서				
교 육 명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교육일시 (이수시간)	
	주 소			
위 사람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위한 기본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 2>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15호 서식】

GAP기본교육 결과 통보서

0 0 0 기 관

(20 . . .)

GAP농업인 기본교육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GAP 기본교육 실적

기관명	교육일자	교육장소	계획인원(명)	수료인원(명)	비고

☐ 교육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항 목	문 제 점	개선방안(교육기관요구)

☐ 교육장면 사진(3매 이상)

< >	< >	< >

※ 교육 진행과정 증거 사진(3매 이상 첨부)

☐ 기타

○ GAP인증 기본교육 이수자 등록부를 파일로 제출

붙임: GAP 기본교육 이수자 등록부(엑셀로 작성) 1부. 끝.

0 0 0 기관의 장

[illegible]

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 이 사업에 대한 해석기관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서승준·지방농촌지도사 김태성 031-8008-9397, 9400)입니다.

1) 농업기계 전문인력양성 교육(도원/직접)

□ 목 적

- 청년 농업인이나 신규농업인 대상으로 농업기계 기술교육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지역의 기계화 영농을 선도할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 추진방향

- 농업기계 활용 기술 향상을 위한 체계화된 기초이론과 실습 위주 교육 운영
- 기종별 참여식 현장실습·체험형 교육 운영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편성 필수
- 안전사고예방, 자가 점검·정비 능력배양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성취감 제고

□ 근거 법령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2(안전교육),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 사업규모 및 내용

- 사 업 비: 2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교육시기: 2026년 6월(비합숙)
- 교육장소: 경기도농업기술원
- 교육인원: 30명
- 교육대상: 청년 농업인이나 신규농업인 * 여성농업인, 기계화 영농 종사자 우선
- 교육내용
 - 주요 농작업 기계 안전 및 작동원리 이해, 운전·조작 및 자가 점검·정비 기술, 밭 농업기계 활용 기술, 안전사고예방 및 교통안전 등
 - 트랙터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사고 체험, 각부 기능이해, 가상 운전 실습 등
- 교육 방법: 기초이론 및 실습·체험
 - 소모품 교환 및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주요부의 기초 정비 기술교육
 -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기종별 운전 및 농작업 요령 등 실습형 교육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교육계획 수립

- 지역 실정에 맞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에 맞춰 운영
- 총시간은 60~70시간으로 하고 그중 75%는 실습 교육으로 편성
- 농업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안전 사용 방법 등은 반드시 2~3시간 편성
- 여성농업인 등 초보자를 위한 여성 친화형 농업기계 실습 교육과정 편성
 - * 여성농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별과정 운영
- 농업기계 기능사 자격 수준의 이론 및 실기 교육과정 편성
 - * 농업기계 관련 애로사항 토의, 자격취득 이론교육 등은 가능한 야간시간 활용
- 트랙터 시뮬레이터 보급 기관: 안전사고 체험 과정 운영 및 교과 시간 편성
 - * 다수의 농업인 참여를 위해 모든 교육과정에 시뮬레이터 직·간접 체험교육 실시

○ 교육 운영

- 점검·정비 실습용 공구 및 안전장치, 교재, 실습복 등을 교육생에게 지급하여 교육 기간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분해조립 등 실습에 활용하여 마을의 농업기계 점검·정비 등 관리 운영
- 교육수강자는 2년으로 1회 수강 제한(신규신청자 우선)
- 80% 이상 출석 시 수료 가능
- 트랙터 시뮬레이터 체험교육 활용 실적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관리
 - * 트랙터 시뮬레이터 체험교육생 대상 의견 청취 등

○ 실적 보고 및 평가

< 학습 유용성 >

- 참가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수료 시 설문조사
- 조사항목(2개): ① 업무 의미, ② 개인 성장 의미
 - * 판단기준: 5점 척도(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

※ 설문 내용

- ① 업무 의미: 본 교육과정에서의 교육은 내가 직면한 업무적 이슈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가치 있고 의미가 있었다.
- ② 개인 성장 의미: 본 교육과정에서의 교육은 나의 개인적 성장 측면에서 가치 있고 의미가 있었다.

< 수혜자 만족도 >

- 참가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수료 시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성별 구분 등)
- 측정산식: $\{(\text{만족도 총합}) / (\text{참여자 수} \times \text{조사항목 수} \times 5)\} \times 100$
 - * 조사항목은 3개 항목으로 교육내용 만족, 장비 활용 만족, 영농활용 만족도
 - * 리커드 5점 척도 활용: 매우 만족(5점), 만족(4), 보통(3), 불만(2), 매우 불만(1)
 - * 수혜자 만족도 평균값은 성별 구분 없이 모든 값을 측정산식으로 계산하여 산출

< 기술 수준 향상도 >

- 사전평가(교육 입소 시)

* 평가 문제는 농업기계 국가기술자격(기능사) 수준으로 출제하고, 기종은 교육생 수준에 맞도록 선택하여 출제하며, 실기는 기종당 1~2개 출제하여 평가

* 이론평가: 농업기계 점검·정비 30문제 출제

- 사후평가(교육 수료 시)

* 사전평가와 같은 이론과 실기로 출제 후 평가하고, 두 점수 차이를 “기술 수준 향상도”로 나타냄(%로 환산 수치화할 것)

- 측정산식: (수료 시 학습평가점수 - 입교 시 학습평가점수) / 입교 시 학습평가점수 × 100

○ 예산집행 관련

- 2026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집행 철저

□ 추진 순기표

세 부 추 진 내 용	추진시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교육계획 수립 및 홍보												
○ 교육운영												
○ 실적보고(결과) 및 평가												

□ 행정사항: ASTIS 및 e-나라도움 활용

○ 교육계획 보고(1회/년): 1. 30.(금) *서식은 별도 공지

○ 교육실적 제출(2회/년): 7. 3.(금) / 12. 4.(금) *서식은 별도 공지

* 트랙터 시뮬레이터 활용실적 제출(2회/년): 7. 3.(금) / 12. 4.(금) *서식은 별도 공지

○ 교육결과 보고(1회/년): 12. 18.(금)

2) 여성농업인 농업기계교육(도원/직접)

□ 목 적

-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부담을 완화하고, 기계화 농작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농업기계 교육 지원
- 여성농업인의 농업기계 운전, 안전 기술 배양으로 영농 활용 및 농업기계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도록 함

□ 추진방향

- 운전·조작이 쉬운 중대형 승용·자동화 농업기계 위주의 실습 교육
-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기술 및 자가 점검 방법 활용 기술교육
- 수요자 맞춤형 단계별 교육(지역 주력 작목, 보유 기종 등 고려)

□ 사업규모 및 내용

- 사업비: 4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교육시기: 2026년 5월 ~ 8월(비합숙)
- 교육장소: 경기도농업기술원
- 교육인원: 20명(기수별 10명)
- 교육대상: 경기도 여성농업인
- 교육내용
 - 농업기계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법, 제도, 사례 중심의 안전교육 포함 의무화
 - 상대적으로 운전 조작이 쉬운 중·대형기종 운전 조작 및 포장 실습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교육계획 수립
 - 최소한의 이론과 사례 및 실무 중심의 과정 개설
 - 여성농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별과정 운영
 - 도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한 교육용 농업기계 등을 활용한 기술교육
 - 총시간은 4~8시간으로 하고 그중 80%는 실습 교육으로 편성
 - 농업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안전 사용 방법 등은 반드시 2~3시간 편성
- 교육 운영
 - 교육생 수준에 맞춰 교육 추진하되 현장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적극 노력
 - 80% 이상 출석 시 수료 가능

○ 예산집행 관련

- 2026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집행 철저

□ 추진 순기표

세부 추진내용	추진시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교육 계획수립 및 홍보												
○ 교육운영												
○ 실적보고(결과) 및 평가												

□ 행정사항

- 교육계획 보고(1회/년): 1. 30.(금) *서식은 별도 공지
- 교육실적 제출(2회/년): 7. 3.(금) / 12. 4.(금) *서식은 별도 공지
- 교육결과 보고(1회/년): 12. 18.(금)

3) 농업기계 교육(도원/직접)

□ 목 적

- 농업기계 취급요령, 운전 조작, 점검 정비, 안전교육 등 현장실무 기술교육을 통하여 농업기계 활용 제고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 추진방향

- 농업기계 교통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 강화
- 농업기계 운전 조작, 자가 정비 등 현장 활용 기술 능력배양
- 최신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 사용 및 농작업 활용 제고

□ 추진계획

- 교육시기: 2026년 4월 ~ 11월(3~4일간, 비합숙)
- 교육장소: 경기도농업기술원
- 사 업 량: 3과정 90명
 - 농업기계 농작업 활용반(48명), 농업기계 정비기능반(14명), 농업기계 운전기능반(28명)
- 사 업 비: 44.7백만원(도비 100%)
- 교육대상: 경기도 거주 농업인 등
- 교육내용
 - 농업기계 교통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 트랙터 안전 운전 시뮬레이터 체험 실습(직접·간접 체험)
 - 주요 농업기계 취급 요령, 운전·조작, 자가 정비, 농작업 실습 등 현장실무 실습
 - 농산업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생활 전기용접 실습 등
- 교육 방법
 - 주요 농업기계(소형, 여성 친화형 등) 안전 및 작동원리 이해, 운전·조작 및 자가 점검·정비 기술, 운전 및 정비 자격증 취득 지원 등
 - 트랙터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사고 체험 운전 기술, 기능이해, 실무실습 등
 - 개인별 실기 평가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반복 교육하여 성과

□ 추진 순기표

세 부 추 진 내 용	추진시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교육계획 수립												
○ 교육운영												
○ 실적보고(결과) 및 평가												

□ 행정사항

○ 교육운영

-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2~3시간 편성 실시
- 트랙터 안전 운전 시뮬레이터 위험사고 체험을 위한 과정 운영 및 교과 시간 편성

*** 다수의 농업인 참여를 위해 직접·간접 체험교육 실시**

*** 수요자 맞춤형 교육 추진 : 초보자, 미숙련자, 여성농업인 등 반복실습 교육**

- 교육기간의 전체 교육시간 중 실습교육 비율 70% 내외 편성
- 초보자(신규농업인 등)를 위한 승용 및 보행형 농업기계 등 교육 장비 활용

○ 수혜자 만족도 평가(연령별, 성별 등 구분 설문조사)

- 매 교육 수료 시 마다 교육생 설문조사

참고 1 ▶ 농업기계 교육지원 내역 및 편성비목_도원

□ 교육 지원내역

구분	교육인원	단가 (1개소당)	사업내용
농업기계 전문인력양성교육	30명 (2개소)	10,000천원	○ 기계화영농을 선도할 주요 농작업기계 핵심기술 능력배양 교육 ○ 최신 농업기계의 안전, 운전 및 정비기술, 기능사 수준의 기술교육 등
여성농업인 농업기계교육	20명 (2개소)	2,000천원	○ 운전·조작이 쉬운 중대형 승용·자동화 농업 기계 위주의 실습 및 사고예방 교육 등

* 단가는 1개소당 국비 기준, 전문인력양성교육: 15명 수준/1개소(과정), 여성농업인 농업기계교육: 10명 수준/1개소(과정)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성별 영향평가 대상사업)

□ 교육비 편성비목

○ 기타수당, 수용비(사무관리비), 급식비(행사실비보상금), 피복비, 연료비, 임차료, 재료비(총사업비의 30% 이내), 기타보상금, 국내여비 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을 준용하여 편성 비목 활용

* 사업 목적 외 자산취득비, 시설 등으로 예산 변경 사용금지

참고 2 2026년 트랙터 시뮬레이터 체험교육 교과 편성(안)_도원

○ 농업기계 사고체험교육(1일 과정) 배정시간(안)

과목명	배정시간				교안지침	담당강사
	계	이론	체험	기타		
계	8	1	6	1		
1.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뮬레이터 기능이해	1	1			- 농업기계 안전교육 - 시뮬레이터 기능설명 - 시뮬레이터 사고체험 및 운전조작 방법 이해	농업기계 전문가 등
2. 시뮬레이터 사고체험 교육	6		6		- 시뮬레이터 직접체험 - 모든 교육생 운전실습 - 시뮬레이터 간접체험 - 영상장치 활용(대형 TV)한 다수의 체험교육 - 시뮬레이터 수시체험 - 방문하는 모든 농업인 등에 사고 체험 및 홍보	“
3. 설문평가 및 기타행정	1			1	- 등록 및 수료 - 사고체험교육 만족도 평가 등	교육담당

※ 모든 농업기계 및 농업인 교육과정에 사고 체험 교육으로 적극 활용

○ 간접 사고체험 교육 방법(예시)

- 트랙터 시뮬레이터의 내부화면과 연동될 수 있도록 외부 모니터를 설치하여 다수의 농업인에게 간접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 교육방법 도입



시뮬레이터 내부 체험교육



시뮬레이터 내부 화면을 외부 모니터와 연동하여 간접 체험교육 운영

4) 농업기계 안전 및 현장실무 교육(시군/지원)

□ 목 적

- 최근 대형화·자동화되고 있는 농업기계의 보급 확대와 지속적인 사용 증가에 따라 현장실무 능력을 배양하여 농업기계 사고로부터 사용자 보호

□ 추진방향

- 농업기계 활용 기술 배양을 위한 기종별 참여식 현장실습·체험형 교육 강화
- 모든 농업기계 교육과정에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과목 편성 필수
- 안전 운행 홍보활동 및 주행형 기종의 안전 표지판 부착 이용 확산

□ 근거 법령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2(안전교육),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 사업규모 및 내용

- 교육시기: 영농기 이전 또는 농한기에 실시(1~2일, 비합숙)
- 교육장소: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촌 현장 등
- 교육인원: 1,800명(13개소)

(단위: 명)

구분	계	수원	용인	남양주	파주	김포	광주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계	1,800	100	100	100	100	200	100	100	500	100	100	100	100	100

- 교육대상: 농업기계 보유 농가, 임대 농업기계 이용자 또는 농업종사 희망자
* 여성농업인 대상 1개 과정(20명 수준) 및 농업기계 운전실무 1개 과정(20명 수준) 필수운영(참고2, 4)
- 담당강사: 농업기계 담당자(전문가), 일반강사(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 교육내용: 주요 농업기계 안전 수칙 및 활용,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
- 교육방법: 기초이론 및 실습·체험
 - 반복적 체험학습을 통한 지식과 기능 습득을 위해 실습 중심의 교육 실시
 -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경운기 등 밭 농업기계 운전·포장 작업 실습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등

○ 교육계획 수립

- 최소한의 이론과 사례 및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개설, 시군에 보유한 교육용 농업 기계를 활용한 기술교육 강화
- 총시간은 4~8시간으로 하고 그중 80%는 실습 교육으로 편성
- 농업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안전 사용 방법 등은 반드시 2~3시간 편성
- 여성농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별과정 운영
- 트랙터 시뮬레이터 사고 체험 교육 시간 편성(교과 편성 참고)

○ 교육 운영

- 교육교재, 안전장치 및 교육에 필요한 재료 등은 교육 시작과 동시에 지급하고 원활한 교육 추진과 일선에서 농업기계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
- 교육생 수준에 맞춰 교육 추진하되 현장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적극 노력
- 80% 이상 출석 시 수료 가능

○ 실적 보고 및 평가

< 수혜자 만족도 >

- 참가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수료 시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성별 구분 등)
- 측정산식: {(만족도 총합) / (참여자 수 × 조사항목 수 × 5)} × 100
- * 조사항목은 3개 항목으로 교육내용 만족, 장비 활용 만족, 영농활용 만족도
- * 리커드 5점 척도 활용: 매우 만족(5점)/ 만족(4)/ 보통(3)/ 불만(2)/ 매우 불만(1)
- * 수혜자 만족도 평균값은 성별 구분 없이 모든 값을 측정산식으로 계산하여 산출

○ 예산집행 관련

- 2026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집행 철저

□ 추진 순기표

세 부 추 진 내 용	추진시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교육계획 수립 및 보고												
○교육운영												
○실적보고(결과) 및 평가												

□ 행정사항: ASTIS 및 e-나라도움 활용

- 교육계획 보고(1회/년): 1. 30.(금) *서식은 별도 공지
- 교육실적 제출(2회/년): 7. 3.(금) / 12. 4.(금) *서식은 별도 공지
- 교육결과 보고(1회/년): 12. 18.(금)

5) 농업기계 순회교육(시군/지원)

□ 목 적

-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 해소 및 적기 영농 실현
- 자가 정비 기술 능력 향상을 통한 농가 생산비 절감 및 사고 예방

□ 추진방향

- 수리점과 거리가 먼 오지마을, 여성농업인, 고령·취약 농가 우선 교육
- 농번기 고장 난 농업기계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지자체별 현장지원팀 구성 운영
- 농업기계 순회 교육(임대사업 포함)에 안전사고예방 교육 추진
- 자연재해 피해지역 긴급 복구 상호협력 활동

□ 사업규모 및 내용

- 교육시기: 연중(2월~11월 중순)
- 교육장소: 현장(오지마을 중심), 내방 교육(농업기술센터)
- 교육횟수: 지자체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
- 교육대상: 농업기계를 보유한 전 농가 및 임대사업 이용자 등
 - * 농업기계에 대한 고정관념과 두려움 해소 기회 제공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및 부부가 동반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 시기별 추진내용

시기	내용	대상 지역
2월	◦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사용 전 점검	◦ 관내 전 지역
3~10월	◦ 대상 지역 선정 순회 교육	◦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 등 취약한 지역 우선실시
11월	◦ 겨울철 장기 보관에 따른 점검·손질 요령 및 보관 관리요령 교육	◦ 관내 전 지역

- 사업비: 지방비(100%)
- 교육방법
 - 분야별 전문담당자와 합동 순회지도반 편성 당면 실천 과제 병행 지도
 - 농업인 등 대상으로 고장진단 및 자가 정비, 부품교체 요령 실습 교육
 - * 농업인이 직접 실습 참여하여 자가 점검·정비 능력이 향상되도록 기술 지원
 - 농업기계 정비 교육 전에 고장 예방과 사용 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

○ 협조 사항

- 자체 농업기계 순회 교육(임대사업 포함) 운영으로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안전 사고 예방 교육 추진 철저
- 인근 재해 피해지역 상호 복구지원 협의체 구성·활동(순회 교육 장비 활용)
- * 영농 적기 농업기계 사용을 위한 응급 복구단 활동 및 지원 등 상호협력

□ 추진 순기표

세부 추진내용	추진시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교육 계획수립												
○ 교육운영												
○ 실적보고(결과) 및 평가												

□ 행정사항: ASTIS 활용

- 교육계획 보고(1회/년): 1. 30.(금) *서식은 별도 공지
- 교육실적 제출(2회/년): 7. 3.(금) / 12. 4.(금) *서식은 별도 공지
- 교육결과 보고(1회/년): 12. 18.(금) *서식은 별도 공지

참고 1 2026년 농업기계 안전교육 예산지원 내역(시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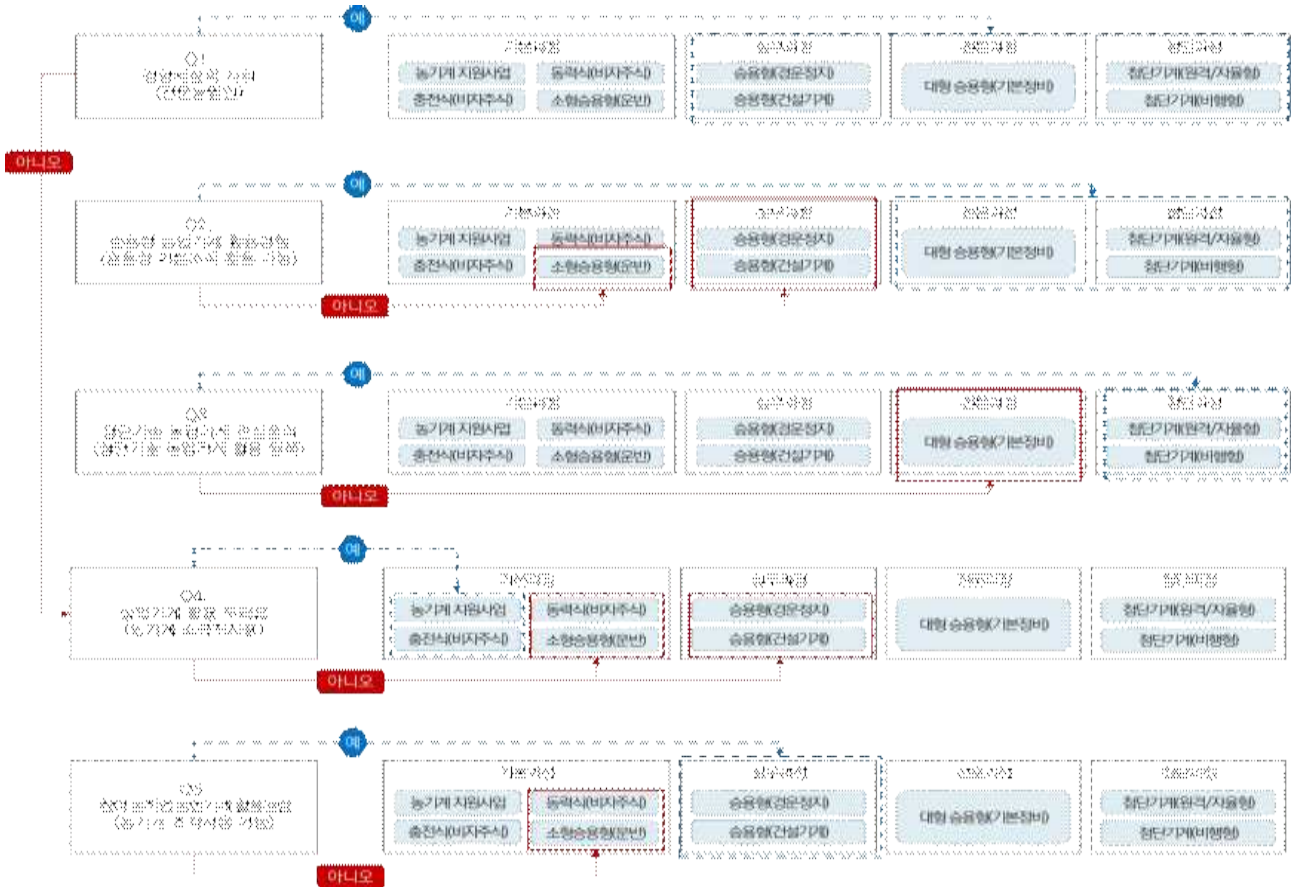
시군별	사업량 (명)	계 (천원)	국비 (50%)	지방비	
				도비 (15%)	시군 부담 (35%)
계	1,800	108,000	54,000	16,200	37,800
수 원	100	6,000	3,000	900	2,100
용 인	100	6,000	3,000	900	2,100
남양주	100	6,000	3,000	900	2,100
파 주	100	6,000	3,000	900	2,100
김 포	200	12,000	6,000	1,800	4,200
광 주	100	6,000	3,000	900	2,100
이 천	100	6,000	3,000	900	2,100
안 성	500	30,000	15,000	4,500	10,500
포 천	100	6,000	3,000	900	2,100
양 평	100	6,000	3,000	900	2,100
여 주	100	6,000	3,000	900	2,100
가 평	100	6,000	3,000	900	2,100
연 천	100	6,000	3,000	900	2,100

※ 농업기계 안전교육: 60,000원/인당

참고 2 여성농업인 농업기계 교육 교과편성 표준(안)

□ 여성농업인 농업기계 교육담당자는 여성농업인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 항목을 고려하여 적합한 교육과정을 선정·운영할 수 있음

연번	확인해야 할 항목	Y	N
Q1	교육대상인 여성농업인 집단은 전문여성농업인에 해당합니까? * 전문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 및 농작업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독립경영주, 농업파트너로서의 지위에 해당하는 농업인임. 반대로 보조적 여성농업인은 일부 농작업이나 농번기 일손이 필요한 경우에만 농작업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을 의미함		
Q2	[Q1에서 Y라고 확인된 경우] 교육대상인 여성농업인 집단은 승용형 농업기계(트랙터 등) 를 본인이 농작업에 활용한 경험 이 있습니까?		
Q3	[Q1에서 Y라고 확인된 경우] 교육대상인 여성농업인 집단은 첨단기술 농업기계 에 대한 관심과 농작업 활용에 대한 관심 이 높은 수준입니까?		
Q4	[Q1에서 N라고 확인된 경우] 교육대상인 여성농업인 집단은 농작업 시 농업기계를 사용하는데 두려움 이 높은 수준입니까?		
Q5	[Q1에서 N라고 확인된 경우] 교육대상인 여성농업인 집단은 주로 참여하는 농작업(제초방제, 수확관리)에 농업기계를 활용한 경험 이 있습니까?		



구분		과목명		배정시간					교안지침	담당강사
				계	강의	실습	토의	전학		
기본 과정 (자신감 향상 과정)	두려움 극복 과정	농업기계화 기술동향	필수	1				1	• 최신 농기계 동향 견학	농업기계 전문가 등
		농업기계 지원사업 및 보험제도 이해	선택	1	1				• 농기계 지원사업 및 보험제도 이해	해당분야 관련자 등
		농작업부담경감 농기계 활용법(전동운반차)	필수 (택2)	1.5	0.5	1			• 전동운반차 구성과 배터리 관리 요령 및 기본주행 실습	농업기계 전문가 등
		농작업부담경감 농기계 활용법 (충전식분무기)		1.5	0.5	1			• 충전식분무기 구성과 배터리 관리 요령 및 기본사용 실습	“
		농작업부담경감 농기계 활용법 (충전식예초기)		1.5	0.5	1			• 충전식예초기 구성과 배터리 관리 요령, 기본사용 실습	“
		계(선택포함)		4 (5)	1 (2)	2		1	—	—
	친밀감 형성 과정	농기계 농작업 안전사고예방	필수	2	1	1			• 농기계 농작업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수칙, 응급처치 실습 포함	농업기계 소방청 전문가 등
		소형트랙터 조작장치 이해와 기본주행 실습	필수	4	1	3			• 소형트랙터 조작장치 이해 및 기본주행 실습(작업기 부착 제외)	농업기계 전문가 등
		소형농기계 활용법 (동력운반차)	필수 (택2)	1.5	0.5	1			• 소형농기계 구조와 특징 이해 • 소형농기계 기초조작방법을 중심으로 실습	“
		소형농기계 활용법 (동력분무기)		1.5	0.5	1				“
		소형농기계 활용법 (동력예초기)		1.5	0.5	1				“
		주요참여 농작업 농업기계 활용 (보행형 정식기)	필수 (택1)	3	1	2			• 보행형/설치형 농업기계의 기본구조, 기능 이해 • 보행형/설치형 농업기계의 기본조작과 농작업 활용실습	“
		주요참여 농작업 농업기계 활용 (보행형 수확기)		3	1	2				“
		주요참여 농작업 농업기계 활용(선별기)		3	1	2				“
		계		12	4	8			—	—
		계(선택포함)		16 (17)	5 (7)	10		1	—	—
실무과정		농업기계 기본구조와 점검방법	필수	2	2				• 농기계 기본구조 및 기본점검방법 이해	농업기계 전문가 등
		농업기계 농작업 및 교통안전교육	필수	2	2				• 농기계 농작업 안전사고유형 및 예방수칙 이해	“
									• 농기계 도로교통안전 및 도로교통사고 안전수칙 이해	해당분야 관련자 등
		농용트랙터 경운정지	필수	6	1	5			• 농용 트랙터 작업기 연결·분리	“

구분	과목명		배정시간						교안지침	담당강사
			계	강의	실습	토의	견학	기타		
	활용실습								및 경운·정지작업 실습	
	농용굴착기 농지조성 실습	선택	7	1	6				• 농용굴착기 주요 조작장치 이해 및 흙파기·운반하기 실습	“
	농용지게차 화물적재 및 운반 실습	선택	4	1	3				• 농용지게차 주요 조작장치 이해 및 화물적재·운반 실습	“
	계(선택포함)		10 (21)	5 (7)	5 (14)				—	—
전문과정	농업기계 기관 및 전기장치	필수	3	2	1				• 농기계 기관구조 및 전기장치 이해하기	농업기계 전문가 등
	농업기계 정비점검 방법	필수	3	1	2				• 농기계 정비 기본원리 및 응급수리 실습	“
	농업기계 농작업 및 교통안전교육	필수	2	2					• 농기계 농작업 안전사고유형 및 예방수칙 이해	“
									• 농기계 도로교통안전 및 도로교통사고 안전수칙 이해	해당분야 관련자 등
	트랙터 운전 및 정비 실무	필수	5	1	4				• 트랙터 작업기 부착 및 다양한 농작업 실습	농업기계 전문가 등
	이앙기 활용 및 이앙작업 실무	선택 (논)	4	1	3				• 이앙기 구조와 작업 안전수칙 이해 및 작업/세척정비 실습	“
	콤바인 활용 및 수확탈곡 작업 실무	선택 (논)	5	1	4				• 콤바인 구조와 작업 안전수칙 이해 및 작업/세척정비 실습	“
	경운기 운전·정비 실무	선택	3	1	2				• 경운기 구조와 작업 안전수칙 이해 및 운전·정비 실습	“
	계(선택포함)		13 (25)	6 (9)	7 (16)				—	—

※ 첨단과정은 일반농업인 대상의 첨단기술 농업기계(자율주행/원격조종 트랙터 및 농업용 드론 등) 교육을 연계하여 운영 가능

참고 3 ▶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현장실무교육 교과편성 표준(안)

과목명	배정시간			교안지침	담당강사
	계	강의	실습		
계(시간)	8 (4)	2 (2)	6 (2)	-	-
1. 농업기계 관련 교통사고 예방(필수)	1 (1)	1 (1)		•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예방 등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해당분야 관련자 등
2. 운전·포장작업 실습 (발농업기계 위주)	6 (2)		6 (2)	• 조편성(6~10명당 강사1명) • 고장 및 사고 많은 기종 우선 실습 • 현장 문제해결 우선 실습 • 운전 및 포장작업요령 * 반복 훈련을 통한 기능을 습득하여 활용능력 향상에 초점	농업기계 전문가 등
3. 안전사고예방 교육	1 (1)	1 (1)		• 사고예방 및 안전사용 • 트랙터 시뮬레이터 이해 • 시뮬레이터 사고체험 * 시뮬레이터 미 보급지역은 안전기술 교육 시간 편성	“

※ (시군농업기술센터) 교과 편성(안)의 일부 조정은 가능하나, 교통사고 예방 과목은 필수로 운영하고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농작업 및 정비 기술 등 교육에 차질 없이 운영

※ ()는 안전교육으로 4시간 운영 시 교과 편성이며 여성농업인 농업기계 교육에도 준용

참고 4 농업기계 운전실무 교과편성 표준(안)

구분		과목명	표준기준시간						교안지침			담당강사
			계	강의	실습	토의	견학	기타	기존 농기계 운전 농업인 (운전경력 3년 이상)	농기계 초보운전자 (운전경력 3년 미만)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면허 미소지자											
농기계주행운전	농기계 기본 점검	농기계 일상점검 관리	2.0	1.0	1.0				·최소 1시간 이상 편성	·최소 1시간 이상 편성	·최소 4시간 이상 편성	농업기계 전문가 등
		농기계 장기보관 관리	2.0	1.0	1.0							”
	농기계 기본 (주행)운 전	농기계 주행 전 안전관리	1.5	0.5	1.0					·최소 4시간 이상 편성	·최소 8시간 이상 편성	”
		농기계 시동 및 출발조작	2.0	0.5	1.5							”
		농기계 주행조작	3.0	0.5	2.5							”
		농기계 정지 및 주차	1.5	0.5	1.0							”
	농기계 교통 안전 관리	농기계 안전기준 이해	1.0	1.0					·최소 1시간 이상 편성	·최소 1시간 이상 편성	·최소 3시간 이상 편성	”
		농기계 도로교통 안전사항 및 비상대처방법 이해	2.0	1.0	1.0							농업기계 전문가 및 도로교통·소 방 관련 전문가 등
		고령자 도로교통 안전사항 이해	1.0	1.0								
	농기계작업운전	농기계 농작업 운전	농기계 시운전*	2.0	0.5	1.5				·최소 1시간 이상 편성	·최소 5시간 이상 편성	·최소 10시간 이상 편성
농기계 작업내용 이해*			0.5	0.5					”			
농기계 작업기 탈부착*			2.5	0.5	2.0				”			
농기계 활용 농작업 조작*			4.0	1.0	3.0				”			
작업자간 소통 이해			1.0	1.0					”			
농기계 농작업 안전 관리		농기계 농작업 안전사항 및 비상대처방법 이해	3.0	2.0	1.0				·최소 1시간 이상 편성	·최소 1시간 이상 편성	·최소 3시간 이상 편성	농업기계 전문가 및 소방·보건·의 료 관련 전문가 등
		고령자 농기계 사용 농작업 안전사항 이해	1.0	1.0								
편성기준								·최소 4시간 이상 편성	·최소 12시간 이상 편성	·최소 28시간 이상 편성	—	

※ *는 1개 기준 기준으로 교육 대상 기준이 추가될 경우 기준별로 시간 추가 편성 필요(세부내용 별송)

참고 5 ▶ 트랙터 시뮬레이터 체험교육 교과편성(안)

○ 농업기계 사고체험교육(1일 과정) 배정시간(안)

과목명	배정시간				교안지침	담당강사
	계	이론	체험	기타		
계	8	1	6	1		
1.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뮬레이터 기능 이해	1	1			- 농업기계 안전교육 - 시뮬레이터 기능설명 - 시뮬레이터 사고체험 및 운전 조작 방법 이해	농업기계 전문가 등
2. 시뮬레이터 사고체험교육	6		6		- 시뮬레이터 직접체험 - 모든 교육생 운전실습 - 시뮬레이터 간접체험 - 영상장치 활용(대형 TV)한 다수의 체험교육 - 시뮬레이터 수시체험 - 방문하는 모든 농업인 등에 사고체험 및 홍보	“
3. 설문평가 및 기타행정	1			1	- 등록 및 수수료 - 사고체험교육 만족도 평가 등	교육담당

※ 모든 농업기계 및 농업인 교육과정에 사고 체험교육으로 적극 활용

○ 간접 사고 체험교육 방법(예시)

- 트랙터 시뮬레이터의 내부 화면과 연동될 수 있도록 외부 모니터를 설치하여 다수의 농업인에게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안전 체험교육 방법 도입



시뮬레이터 내부 체험교육



시뮬레이터 내부화면을 외부 모니터와 연동하여 간접체험교육 운영

참고 6 농업기계 교육지원 내역 및 편성비목

□ 농업기계 교육지원 내역

구분	교육인원	단가	사업내용
농업기계 안전 및 현장실무교육	1,800명	60천원	○ 농업기계 점검·정비 기술 및 사고 예방 교육 등

※ 단가는 1인 기준, 지방비(50%)가 포함된 실제 금액이며, 안전 및 현장실무교육: 100명 수준/ 1개소(과정)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성별 영향평가 대상사업)

□ 농업기계 교육비 편성비목

- 기타수당, 수용비(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피복비, 연료비, 임차료, 재료비
(총사업비의 30% 이내), 기타보상금, 국내여비 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을 준용하여 편성 비목 활용
 - 사업목적 외 자산취득비, 시설 등으로 예산 변경 사용금지

참고 7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제12조의2(안전교육),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 (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제9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추진경위	○ '62년: 농촌진흥청 발족과 함께 영농기계화 추진을 목표로 실시 ○ '70~'80년대: 농촌 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 억제를 위한 정부의 농업기계화 시책지원 강화를 위한 농업기계 교육훈련 확대 ○ '90~'05년: 대형 농업기계 보급확대 및 관련 정비수리 기술교육 실시 ○ '05~'10년: 전기전자, 유압시스템 등을 이용한 농업기계 보급 및 자가 정비수리능력 제고 교육 실시 ○ '13년: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종류 및 반영주기 기준 마련(기재부 협의) * 기준을 근거로 시·도별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 '14년: 농업기계의 자동화·로봇화 및 융복합 기술보급과 발작물 기계화 확대보급 추진 ○ '17년 이후: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인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 ○ '21 이후: 과정별 교육방식 변경, 교과 편성 전문화 및 사업 규모 재설정을 통한 실습 중심 농업기계 교육 강화 ○ '23 이후: 농업기계 안전 및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교육 강화

참고 8 ▶ 안전재해보험 할인 연계 교육과정 운영 방법

○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에 대한 보험료 추가할인 제도('23.10월~, 농식품부)

* 농업인안전보험 5%, 농기계종합보험 3% 할인

○ 보험할인 적용 ※본 사업에는 2개 과정만 적용함

교육기관	교육방법	교육과정명
농촌진흥기관	대면교육	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연계
		②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 실무 교육
		③ 농업기계 순회·임대 교육

○ 보험할인 적용을 위한 수료증 발급 방법

1)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http://hrd.rda.go.kr>)에서 e-러닝 수료 후 '나의 강의실>완료된 과정'에서 출력 가능

2) 대면교육(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의 경우, 아래의 방식으로 발급 가능

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농진청) 또는 농업교육포털(농정원)에 농업인별 수료 정보 등록 후 출력 권장

② 교육기관 자체 발급의 경우, 표준양식에 따라 작성된 수료증만이 농협창구에서 보험료 할인 적용 가능 <붙임 1, 붙임 2>

* <붙임 1>에 제시된 기관번호를 참고하여 수료증 좌측상단의 확인 코드 생성

예시 : 제0000-000-00000호 (연도 4자리-기관번호 3자리-발급번호 5자리)

<붙임 1> 대면교육 수료증의 기관별 부여 번호 (지방농촌진흥기관 해당)

번호	도농업기술원
001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022	경기	수원시	032	경기	김포시
023	경기	고양시	033	경기	광주시
024	경기	용인시	034	경기	이천시
025	경기	성남시	035	경기	양주시
026	경기	안산시	036	경기	안성시
027	경기	화성시	037	경기	포천시
028	경기	남양주시	038	경기	여주시
029	경기	평택시	039	경기	양평군
030	경기	파주시	040	경기	가평군
031	경기	시흥시	041	경기	연천군

<붙임 2> 대면교육 수료증 표준양식

제0000-000-00000호

※ 발급년도(4자리)-기관번호(3자리)-발급번호(5자리)

※ 기관번호는 반드시 <붙임 1>에 따라 부여

수 료 증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00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교육과정 : ※ 정확한 과정명 기재

교육기간 :

교육시간 :

※ 용도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할인 적용

0000년 00년 00일

00시(군)농업기술센터 (직인)

라.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 이 사업에 대한 해석기관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서승준·지방농촌지도사 박선영 031-8008-9397, 9400)입니다.

□ 목 적

- 농업기계의 자동화·정밀화에 따른 효율적 활용과 안전사고예방 등 교육 강화 및 자가 점검·정비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 추진방향

- 지역특화작목별 및 발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한 신기종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지원을 통한 여성 및 고령 농업인 참여 촉진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농업기계의 성과향상을 위한 농업기계 시범 보급

□ 근거 법령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2(안전교육),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 사업규모 및 내용

- 사업대상: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규모: 총 7종 8대, 27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사업추진 체계

- 중앙(농촌진흥청): 사업계획 및 예산, 전문교육, 평가 등 지원
- 도(농업기술원): 국고보조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 시군(농업기술센터): 국고보조 예산 편성 및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 추진

* 농사철 또는 교육시작 전에 조기 구매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사업 추진

□ 준수사항

-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기준 단가(참고)의 85% 이상의 제품으로 구입
-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추가 구입은 당초 사업추진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업부서(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승인 후 추진
- 교육용 농업기계의 처분제한 기간(내용연수)은 조달청 고시 적용

- 교육용 농업기계는 조작·취급 및 포장 기술, 점검 정비 등 안전교육용으로 활용
 - * 농업재해 등 발생 시 농업인 등의 일손 돕기, 재해복구에 지원 가능
- 발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정식기 등 장비에 대하여 주산지역 농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교육용 신기종 농업기계를 구매한 기관은 구매 후 2개월 이내에 지역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취급 조작, 안전 사용 및 포장 작업 요령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 장비 구입 시 투명한 절차 준수
 - * 농업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준용(농식품부)
- 농업기계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 규정 준수
 - 안전장치 부착 여부 및 임의 개조 금지(농용트랙터 등 9개 기종)
- 국고보조금 지원에 의한 농업기계 구입(확보) 대장 비치

구입년도	기종명	형식명	규격	관리자	교육횟수	교육인원	비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e나라도움 중요재산에 등록

□ 추진순기표

세 부 추 진 내 용	추진시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구입계획 수립 및 보고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												
○구입실적(결과) 보고												

* 농사철 전 효율적인 교육운영 및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 구입·활용

□ 행정사항: 계획·결과 및 정산 보고 시 ASTIS 및 e나라도움 활용

- 구입계획 보고(1회/년, 서식 1): 1. 30.(금)
- 구입실적 보고(2회/년, 서식 별도): 7. 3.(금) / 12. 4.(금)
- 구입결과 보고(1회/년, 서식 2): 12. 4.(금)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e나라도움 중요재산에 등재 및 보고
 - 처분제한 기간, 자원 구분, 사진 첨부 등 반드시 입력

서식 1

2026년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한글서식)

(계획보고) '26. 1. 30.(금)

시군	예산액	구입계획		수량(대)	비고
		기종명	모델명		
○○시군					

서식 2

2026년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 결과보고(한글서식)

(결과보고) '26. 12. 4.(금)

□ 사업개요

- 사업담당: ()시·군 /직 : () /성 명 : ()
- 사 업 량:
- 예 산 액(원):
- 집 행 액(원):
- 집행잔액(원):
- 활용실적

일 자	횟수(회)	인원(명)	주요내용(교육과정 등)	비고

□ 장비구입 세부내용

구입년월일	기종(모델)	규격	수량(대)	금액(원)	비고
					*추가구입은 별도 표시

□ 장비구입 사진

농업기계 사진 첨부	기대(번호)판 사진 첨부
< 기종명 >	< 모델명 >

참고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내역

시군명	사업량	기종명	예 산 액 (단위: 천원)			
			계	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계	8대	7종	270,000	135,000	40,500	94,500
용인	1	-농업용무인항공기	20,000	10,000	3,000	7,000
김포	1	-농업용파이프밴딩기 (자주식, 장착식, 정차식)	20,000	10,000	3,000	7,000
이천	1	-자율주행형장비 (부착형)	40,000	20,000	6,000	14,000
포천	1	-농업용트랙터 (소형 40마력 미만)	30,000	15,000	4,500	10,500
여주	1	-농업용굴착기 (1톤미만)	30,000	15,000	4,500	10,500
가평	1	-농업용굴착기 (1톤미만)	30,000	15,000	4,500	10,500
연천	1	-농업용트랙터 (중형 40~60마력)	60,000	30,000	9,000	21,000
	1	-농업용로더	40,000	20,000	6,000	14,000

마. 농업 신기술 시범

* 이 사업에 대한 해석기관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서승준·지방농촌지도사 박선영 031-8008-9397, 9400)입니다.

1)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 보급

□ 목 적

- 자율 직진주행기술 시범적용을 통한 승용형 농업기계 농작업 편의성 증대

□ 추진방향

- 기존 농기계(트랙터 등)에 부착하여 직진 자율주행이 가능한 무인 농작업 기계 시범보급으로 보급형 무인 농작업 기반 확립

□ 주요 관련 기술 현황

- 무인 농작업 자동조향 장치 현장 실증연구('20, 농과원)
- 자동조향장치 및 마늘, 양파 예건장치 현장 실증('22, 농과원)

□ 사업규모

- 사업량: 5개소(화성, 평택, 시흥, 이천, 연천)
- 사업비: 250백만원(국비 50%, 시군비 50)
- 사업규모: 개소당 자동조향장치 3세트(트랙터, 이앙기, 승용관리기)
- 사업대상: 시군농업기술센터(임대사업소), 영농조합법인, 공선회, 생산자 조직 등
 - 시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우선 반영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기존 승용형 농업기계(트랙터, 이앙기, 관리기)에 자동조향장치를 장착하여 자율주행하는 자율 정밀주행 기술
- 지원범위: 자동조향 장치 등
 - RTK-GPS, 관성측정장치(IMU), 전동운전대, 휠 각도센서, HMI 등

□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

- 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농촌진흥청) 기본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기술지원 및 컨설팅, 모니터링 등

- (도농업기술원) 사업이행 점검·지도·평가, 우수사례 발굴,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 (농업기술센터) 사업대상자 선정·관리, 사업계획·결과보고, 사업자 교육 등
- (사업자) 사업계획 수립·추진, 워크숍·설명회 등 교육 참여, 현장 교육장 제공 등

○ 추진요령

- 사업 추진과정의 수량, 품질, 소득 등 성과분석을 위한 경영기록장 작성
-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현장교육 및 평가회 등 개최
- 농가현황 주소 ASTIS 입력 시 장비보관 사업장이나 시범포 주소 입력

□ 기대효과

- 작업자 편이성 제고, 정밀 주행, 노동력 절감
 - 사전경로를 따라 주행 시 오차 $\pm 7\text{cm}$ * 최저 작업속도 : 0.3km/h
 - 반복적인 작업을 자율기능화하여,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 행정사항: ASTIS, e-나라도움 활용

- 사업추진 계획보고: 26. 3. 30.한(작성양식-ASTIS 참고)
- 사업추진 결과보고: 26. 10. 31.한
- 사업추진 관련 세부사항은 시범사업 기술서(농과원) 참고
- 홍보 시, 홍보내용에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기재 요청

바.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서승준·지방농촌지도사 박선영 031-8008-9397, 9400)입니다.

□ 목 적

- 주요 농업 신기술 능력배양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통하여 농업·농촌을 선도할 전문 지도인력 양성 및 경기도 농업 발전에 기여

□ 추진방향

- 농촌진흥공무원의 농촌 현장 지도 시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여 업무추진에 활용
- 농업 분야별 연구개발된 새로운 기술의 이해 및 적용으로 업무능력 향상
- 도·시군 간 정보교류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추진계획

- 교육시기: 2026년 2월 ~ 11월
- 교육장소: 경기도농업기술원 및 외부기관
- 사 업 량: 300명
- 교육대상: 경기도 공무원(도·시군 농촌진흥공무원) 및 공무원 등
- 교육내용
 - 신규지도사 역량강화 교육(50명)
 - 농업인상담소장 역량강화 교육(50명)
 - 농업현장 문제해결 교육(40명)
 - 미래대응 데이터 교육(30명)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도단위 현장강사 교육(130명)

□ 교육운영 방식

- 농업기계 교육은 안전교육 필수 편성, 그 외 과정은 농업 관련 법률·제도 등 관련 과목 편성
- 교육 접수는 공문발송을 통해 실시하며 상시학습 시간 인정(인사과 협조)

사. 신규농업인 영농기술향상

*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국 지도정책과(지방농촌지도관 서승준·지방농촌지도사 한지영 031-8008-9397, 9401)입니다.

1) 기초영농기술교육

□ 목 적

- 신규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 제공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방향

- 신규농업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 중앙(농진청)-도(도원)-시군(시군센터) 연계한 기초영농기술교육
 - 신규농업인-거주지역 기술보급전문가-전문 농업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 농업기술을 기반으로 농업경영 및 기초창업기술 지원

□ 교육규모: 252명, 126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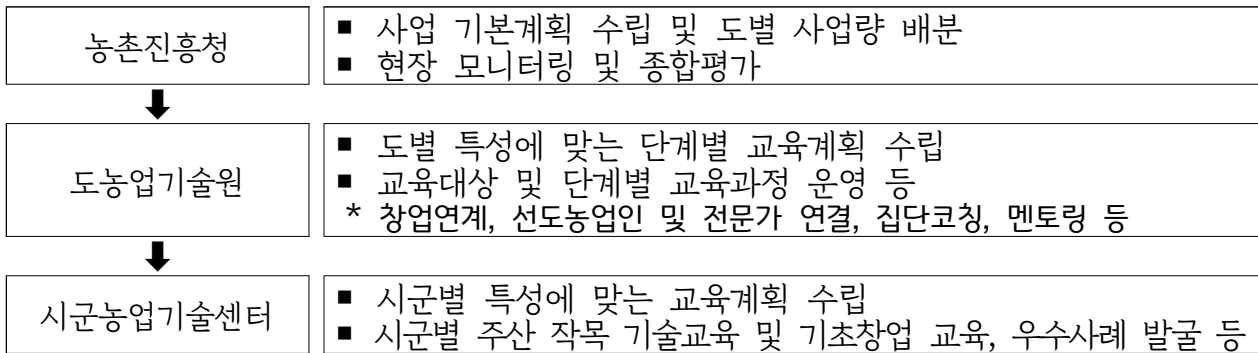
(단위: 명)

구 분	계	도원	수원	화성	남양주	평택	파주	양주	안성	포천	여주	연천
사업량	252	48	16	30	14	20	14	10	30	25	25	20

(단위: 천원)

구 분	계	국비(50%)	도비(25%)	시군비(25%)
계	126,000	63,000	37,500	25,500
도 원	24,000	12,000	12,000	-
수 원 시	8,000	4,000	2,000	2,000
화 성 시	15,000	7,500	3,750	3,750
남 양 주 시	7,000	3,500	1,750	1,750
평 택 시	10,000	5,000	2,500	2,500
파 주 시	7,000	3,500	1,750	1,750
양 주 시	5,000	2,500	1,250	1,250
안 성 시	15,000	7,500	3,750	3,750
포 천 시	12,500	6,250	3,125	3,125
여 주 시	12,500	6,250	3,125	3,125
연 천 군	10,000	5,000	2,500	2,500

□ 추진체계



□ 교육대상: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 및 청년농업인 등

□ 교육방법

- (도농업기술원) 도별 광역단위 기초영농기술교육 추진
 - 교육기간: 연중 1~2주(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 반 편 성: 귀농반(과수, 채소, 특용작물 등), 귀촌반, 농업기초반 등
 - 교육과목: 공통과목(귀농·귀촌), 과정별 과목(재배학, 토양학, 작물생리학 등)
 - *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협력에 따른 공동과정 개설 가능
(예) 공통과목(도원, 2일) + 품목별 영농기술교육(센터, 8일)
 - * 시군에서 편성하기 힘든 과정 등을 개설, 귀농·귀촌교육 연중 운영체계 구축
- (시군농업기술센터) 시군별 주력작목 중심 영농기술교육 추진
 - 교육기간: 연중 총 40시간 내외
 - * 시군별 특성에 맞게 주요 영농시기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 운영방법: 영농기술교육, 기초창업교육, 현장실습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구성을 통한 학습경험을 심화시켜 귀농 실천역량 및 자율적 역량배양

□ 주요 내용

- 신규농업인 대상 품목 중심 기초영농교육·코칭·멘토링
 - 농업기술교육: 농업의 이해, 품목별 농업기술, 농업정보 및 농업기계 활용
 - 추수교육: 기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피드백 교육 및 지원사업
- 신규농업인,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지역학습단체 등 지역의 리더와의 멘토링 지원
 - * 신규농업인의 농촌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토록 멘토링 활동비 지원
- 현장지원팀 운영: 관련 전문가(농업기술원 등 분야별 전문가 포함 등) 5명 내외 구성

□ 행정사항

- e-HRD 시스템 입력
 - 교육과정(교육 전), 수료생 등록(교육 후 2주 이내), 교육 실적(교육 후 2주 이내)
- ASTIS 등록
 - 사업계획<양식1>: 2. 20.(금)까지
 - 추진결과<양식2>: 상반기 6. 26.(금), 하반기 11. 20.(금)까지

<양식 1> 2. 20.(금) 까지

기초영농기술교육 추진계획(○○시군)						
---------------------	--	--	--	--	--	--

시군	과정명	교육사항				비 고
		횟수	시간	기간	인원	
				3.11.~11.29.		

<양식 2> 상반기 6. 26.(금), 하반기 11. 20.(금)까지

기초영농기술교육 추진실적(○○시군)						
---------------------	--	--	--	--	--	--

1. 사업비 집행실적

시군	과정명	주요내용	사 업 비(단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2. 추진실적

☐ 교육실적

시군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 시간 (h)	이수 율 (%)	만족도 (점)	입학인원			수료인원			귀농실천능력 향상도		
						계	남	여	계	남	여	교육전	교육후	향상도
		3.11. ~ 11.29.										점	점	%

☐ 현장지원팀 활동 실적

시군	인원	주 요 활 동 내 용

☐ 홍보실적

시군	보도매체	보도일자	보도제목	비고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군	문제점	개선방안

4. 주요사진

☐ 교육과정별 주요사진(3~4매 이상 첨부)

<참고> 귀농실천능력 향상도 조사표(활용 예시)

○ 귀농실천능력 향상도

$$- \{(\text{교육 후 평균} - \text{교육 전}) \div \text{교육 전 평균}\} \times 100$$

- 귀농실천능력 향상도 -

※ 본 설문지는 귀농귀촌 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해당하는 질문에 대하여 “V”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교 육 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⑤	④	③	②	①
귀농(귀촌) 실천능력 향상도					
	자유롭게 써주세요				
귀농성공 자신감					
	자유롭게 써주세요				
정보수집능력					
	자유롭게 써주세요				
문제해결능력					
	자유롭게 써주세요				
농업경영능력					
	자유롭게 써주세요				

교 육 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⑤	④	③	②	①
자유롭게 써주세요				
자유롭게 써주세요				
자유롭게 써주세요				
자유롭게 써주세요				
자유롭게 써주세요				

2)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목 적

-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및 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률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 증진

□ 추진방향

-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작목 재배기술 등을 선도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성공 농업(귀농)인 등으로부터 영농기술 습득, 정착과정 상담, 경영기법 및 창업 과정 등 연수
- 영농 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
- 농촌지역의 조기 적응은 물론, 농산업분야 창업(일자리 창출) 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

□ 교육규모: 14명, 84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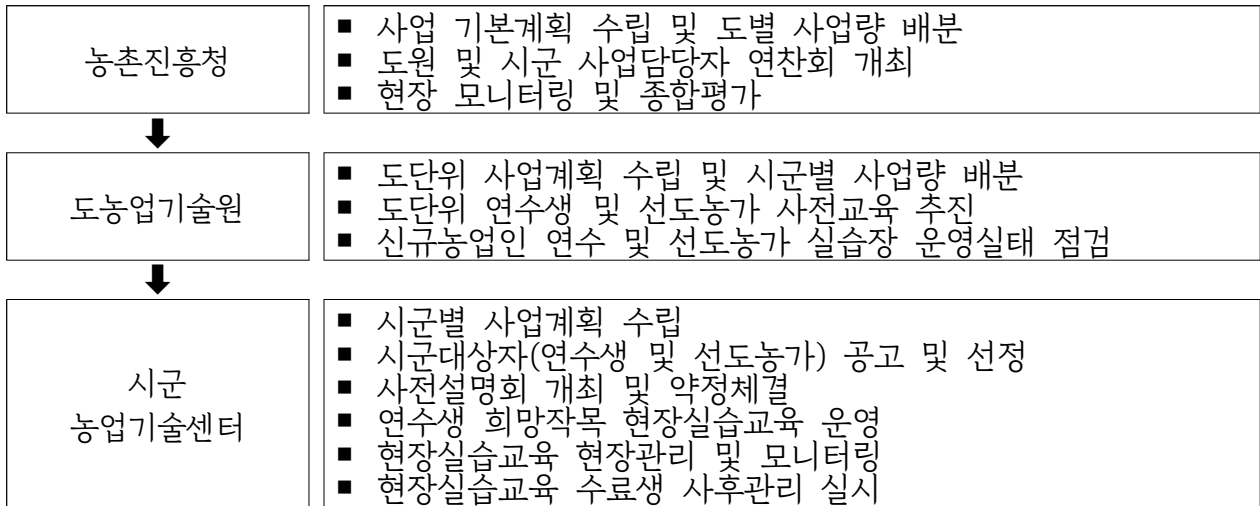
(단위: 명)

구 분	계	화성시	평택시	김포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사업량	14	1	2	1	1	4	1	1	3

(단위: 천원)

구 분	계	국비(50%)	도비(25%)	시·군비(25%)
계	84,000	42,000	21,000	21,000
화성시	6,000	3,000	1,500	1,500
평택시	12,000	6,000	3,000	3,000
김포시	6,000	3,000	1,500	1,500
양주시	6,000	3,000	1,500	1,500
이천시	24,000	12,000	6,000	6,000
포천시	6,000	3,000	1,500	1,500
여주시	6,000	3,000	1,500	1,500
연천군	18,000	9,000	4,500	4,500

□ 추진체계



□ 사업대상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자

○ 농식품부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농촌 이주 7년 이내 귀농인으로 확대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만49세 미만으로 확대 가능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도농가】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선정 시 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우대 가능)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단, 연수생이 초보 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

* 당해 시군에 연수생 관심 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생이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선도농가로 추천될 경우 우선 선정

□ 운영 방법

-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 단순노동(작업) 지양, 학습지원·기술이전·창업역량 강화에 역점 추진
- 교육 기간의 탄력적 운영: 연3~7개월, 일 4~8시간, 월 40~160시간
- 주작목+부작목 연수 가능, 선도농가 및 연수생(작목 미중복 시) 복수지원 가능
- 잔여 실습기간을 우수 실습농가 및 차순위 실습농가에 배정 가능
- 1명의 선도농가에 최대 2명의 연수생이 현장실습 가능(3명 이상 불가)
- 1명의 연수생이 2명의 선도농가에서 순차적 실습 가능(기간 중복 불가)
- 현장실습보고서(붙임 8 서식): 월 1회 e-HRD 시스템에 등록

□ 사업 신청

- 신청기간: 2026년 1월 ~ 3월(지역별 여건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신청기관: 시·군농업기술센터
- 제출서류

【연수생】

-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붙임3 서식)
 - e-HRD 시스템에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붙임4 서식) 입력
- ② 보안서약서(붙임9 서식)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10 서식)

【선도농가】

-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5 서식)
- 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붙임6 서식)
 - e-HRD 시스템에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붙임7 서식) 입력
- ③ 보안서약서(붙임9 서식)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10 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

【연수생】

-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 선정기준(붙임 2 서식)과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연수생 선정
 - * 연수생 선정 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또는 농정심의회에서 선정 가능
- 연수생 선정 시 다음 대상을 우대할 수 있음
 - 농식품부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
 - 청년농업인
 - 여성농업인
- 연수생 선정은 연수시행자(선도농가)와의 약정체결(붙임 12 서식)을 통해 최종 확정
- 연수생은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용은 연수생 직접 부담

【선도농가】

- 공모를 통해 접수된 선도농가 후보자 대상,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선정 기준 (붙임 1 서식)에 의해 연수시행자를 최종 선정
-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선정된 선도농가와 연수생 간 약정을 체결(붙임 12 서식)하여 사업 추진
-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 약정체결은 3~7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생 및 선도농가 동의하에 연장 희망 시 사업담당기관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장하여 약정 가능

□ 연수생 및 선도 농가 관리

-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연수생 선정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장 지정 완료 후 약정체결 전 선도농가가 제출한 연수운영계획서, 현장실습교육장 관련 각종 자료 등과 연수생이 제출한 연수신청서를 서로 교환·열람하도록 하여 사전 충분한 판단 기회 제공으로 약정체결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사전설명회』 개최(필수)

-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약정기간 중 쌍방의 약정 이행 여부를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장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서(붙임 13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비치하여야 함
- 연수생과 선도농가는 현장실습교육 동안 각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가 불성실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지정 기관(시군센터)에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연수생과 선도농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처리해야 함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 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지원금액 전체 회수
- ★ 허위연수 적발 시 그 즉시 약정을 해지하며, 해당 월부터 지원비 미지급
- ★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연수생에 대한 약정금액 미지급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체결 추진

- 연수생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재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약정을 체결해야 함
- 연수생 및 선도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선도농가·연수생 pool 구축 및 연수생과 선도농가에 대한 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함
- 현장실습교육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모든 연수생에게 스마트기기(휴대폰)을 활용한 「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을 사용하게 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야 함 *<http://hrd.rda.go.kr>
 - 모든 연수생은 반드시 『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결관리를 해야하며,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수생 선정단계에서 시스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연수생을 선발해야 함
 - * 단, 시스템 점검, GPS 미작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당일에 한하여 수기 출근부(붙임 15 서식) 인정 가능
- 농작업 안전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점검
- 교육생을 노동자로 인식하여 부당한 작업지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의 목적과 의미를 사전 교육 및 공지 후 상호 약정 체결
 - * 연수신청 작목 외 연수생과 협의하지 않은 작목(기술)에 대한 교육 및 작업, 단순노동, 휴식시간 미제공 등
- 화계연도 변경과 맞물리는 작목의 경우(예: 딸기(9~4월)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선도농가연수생 합의 하 동일 작목 2년 연속 선발 가능

□ 교육지원비 지급

【연수생】

- (지원금액) 월 80만원 한도(3~7개월간) 지급
 - * 지원금액 한도는 시군별 예산·운영 형태에 따라 조정 가능(월 최대 160만원 이내)
- (지원조건) 매월 10일 이상 연수한 경우만 지원하며, 이때 교육지원비는 1일 4시간 이상 연수한 일자에 비례하여 지급
 - * 월 10일 미만 연수 시 해당 월 교육지원비는 지급하지 않음
 - * 1일 지급단가(4시간 기준): 4만원(교통비, 식비 등 포함 시간당 1만원)
- (1일 교육시간 인정 한도) 8시간
 - * 최소 연수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하되, 초과(한도)시간은 시군별 예산·운영 형태에 따라 조정 가능
- (신청방법) 연수생은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현장실습보고서(붙임 8 서식)를 시스템에 등록 후, 입금 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교육지원비 청구서(붙임 14 서식)를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함
 - * 최초 신청 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약정서도 함께 제출
- (지급시기 및 방법) 월별 현장실습보고서(시스템) 확인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교육지원비를 연수생 명의의 계좌에 입금
 - * 출석 및 연수일 확인은 『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선도농가】

- (지원금액)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3~7개월) 지급
 - * 지원금액 한도는 시군별 예산·운영 형태에 따라 조정 가능(월 최대 80만원 이내)
- (지원조건) 지원비는 연수일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이는 연수생에게 현장 실습에 필요한 실습포장과 재료 등을 제공하는 조건임
 - * 단,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
 - * 1일 지급단가(4시간 기준): 2만원(식비, 실습재료비 등 포함)
- (신청방법) 선도농가는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현장실습보고서(붙임 8 서식)를 시스템에 등록 후, 입금 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교육지원비 청구서(붙임 17 서식)를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함
 - * 최초 신청 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약정서도 함께 제출
- (지급시기 및 방법) 월별 현장실습보고서(시스템) 확인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교육지원비를 선도농가 명의의 계좌에 입금
 - * 출석 및 연수일·시간 확인은 『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 예산 편성 기준

- 자치단체경상보조(교육훈련비, 행사실비보상금, 수용비 등)

□ 제재조치

- 중대한 허위사실로 약정체결하여 약정 무효된 자 또는 허위연수 적발 등으로 약정 취소된 자는 추후 사업대상에서 영구제외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연수생 및 선도농가) 선발 또는 실습 교육 시작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 참여를 포기하는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당해 사업대상에서 제외

□ 연수생 사후관리

-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장실습교육 종료 후 3년간 수료생에 대하여 관리대장(붙임 20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사후관리 내용: 귀농 여부, 영농종사 현황 등

□ 행정사항

- e-HRD 시스템 입력
 - 교육과정 등록(담당자): 교육 전
 - 회원가입(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선정 후 1주 이내
 - 사업대상자 매칭(담당자): 연수생·선도농가 약정 후 1주 이내
 - 월별보고서 등록(사업대상자): 매월
 - 수료생 등록(담당자): 교육 후 2주 이내
- ASTIS 등록
 - 사업계획: 2026. 2. 20.(금)까지(시군별 여건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시)
 - 결과보고: 2026. 11. 13.(금)까지

<양식 1> 시군별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시·군)

센터	구 분	성 명	성별	연령	주소	이메일	휴대폰	연수작목	연수기간 (개월)	영농현황			선도농가 구분					
										영농중	영농지입준비	추후결정	선농인	도농인	농법	업인	W P L	신식인
경기 00시 1조	선도 농가																	
	연수생																	
	선도 농가																	
	연수생																	

* 영농현황은 연수생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사항에 ○표

* 선도농가 구분은 선도농가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사항에 ○표

<양식 2> 하반기 11. 13.(금)까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실적(○○시·군)

○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명단

센터	구 분	성 명	성 별	연 령	주 소	이 메 일	휴 대 폰	연 수 작 목	연 기 간 (개 월)	영농현황			선도농가 구분					
										영농중	영농지입준비	추후결정	선도농인	도농인	농법	업인	W P L	신지식인
경기 00시 1조	선도 농가																	
	연수생																	
	선도 농가																	
	연수생																	

* 영농현황은 연수생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사항에 ○표

* 선도농가 구분은 선도농가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사항에 ○표

○ 소요예산

시군	국비배정액 (천원)	집행액(천원)		
		계	국비	지방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군	문제점	개선방안

○ 우수사례(시군별 1건)

우 수 사 례												

○ 2023~2025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생 관리대장 * (붙임 20 서식) 참조

No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주소	연수 작목	연수 기간 (개월)	영농현황 (실습종료시)			영농현황 (실습종료 1년 후)			영농현황 (실습종료 2년 후)		
								평양중	영농 지인 비준비	추후 결정	평양중	영농 지인 비준비	추후 결정	평양중	영농 지인 비준비	추후 결정
1	홍길동	남	2000.1.1.	010-0000-0000	포천시	사과	2024.5.6. ~9.27. (5개월)			○		○		○		
2																

*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 후 3년간 사후관리 실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참고서식】

< 목 차 >

- (붙임 1) 선도농가 선정기준(안)
- (붙임 2) 연수생 선정기준(안)
- (붙임 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 (붙임 4)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시스템 입력)
- (붙임 5)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 (붙임 6)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 (붙임 7)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시스템 입력)
- (붙임 8) 현장실습보고서(시스템 입력)
- (붙임 9) 보안서약서
- (붙임 10)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붙임 1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현황
- (붙임 12)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표준)약정서
- (붙임 1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
- (붙임 14) 연수생 교육지원비 청구서
- (붙임 15) 연수생 출근부
- (붙임 16) 연수생 현장실습교육 실습일지
- (붙임 17) 선도농가 교육지원비 청구서
- (붙임 18)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추진실적(결과) 보고서
- (붙임 19)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 증명서
- (붙임 20)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생 관리대장

[붙임 1]

선도농가 선정기준(안)

평가항목	배점	평점	비고
○ 연수시행 기반 및 수행능력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수행 경험 * 고용부 농산업인턴제, 농식품부 WPL 등 - 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및 교육이수실적 - 영농규모 및 관련분야 기술보유 현황 *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시설 등 - 실습포장, 교육장 위치 및 효율성, 교재 등 구비여부	30		
○ 연수계획의 적절성 및 실효성 - 연수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월별 실습내용의 실천 가능성 - 연수 후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40		
○ 기타여건 - 농업기업, 유관기관 등 연수 관련 협력 수준 - 작목반, 타 농가와의 협력 및 참여도 -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 여부 - 현장실습 코칭 및 지도계획(시스템 활용 등) - 여성농업인 여부	30		
합 계	100		
종 합 의 견			

* 시군별 여건에 따라 재구성 가능

[붙임 2]

연수생 선정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계	100점		
신청자 자격 (40점)	○ 신청자 연령(10) ○ 본인 포함 가족수(10) ○ 귀농 후 농촌거주기간(10) ○ 2026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5) ○ 여성 또는 부부참여(5)	○ 만 30세 이하(10), 31~40세(7), 41~50세(5), 51~60세(3), 61세 이상(1) ○ 4명 이상(10), 3명(7), 2명(5), 1명(3) ○ 3년 이상(10), 1~2년(7), 1년 미만(5) ○ 신청자(5), 미신청자(0) ○ 여성 또는 부부참여(5), 그 외(0)	() () () () ()
		※ 증빙서류: 주민등록 관련자료(주소이력 포함)	
귀농교육 (15점)	○ 귀농교육 이수시간(15)	○ 100시간 이상(15), 71~99시간(10), 51~70시간(5), 21~50시간(3), 20시간 이하(1) * 사이버교육은 수료시간의 50% 인정	()
		※ 증빙서류: 교육수료증 등	
사업규모 (10점)	○ 농지보유 및 임차규모(5) ○ 농업시설 및 임차규모(5)	○ 농지 6,000㎡, 대가축 2두 이상(5) ○ 농지 6,000㎡, 대가축 2두 미만(3) ○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이상(5) ○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미만(3) * 임차농지 및 시설 포함	() ()
		※ 증빙서류: 농지원부 등 관련증빙자료	
사업계획 (20점)	○ 사업계획 수립(10) ○ 시스템 활용의지 및 사업화 방안(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증빙서류: 사업계획서(시스템활용계획 등)	
기타여건 (15점)	○ 신청자 영농 및 사업의지(10) ○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 기여도(5)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5), 보통(3), 미흡(1)	() ()
		※ 증빙서류: 자율양식	

* 시군별 여건에 따라 재구성 가능

<알면>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① 연 령(만)		② (이주 전) 거주지	예) 경기 수원
③ 기 이수 귀농 교육 과정명	예) 농촌진흥청 제대예정군인 귀농교육('19)		
현 주소지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④ 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⑤ 연수희망지역	(최우선 지역)	(우선 지역)	(차선 지역)
⑥ 연수희망기간			
⑦ 자기소개 및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			
⑧ 만 40세 미만의 경우	농식품부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사실 여부		☐ 신청 ☐ 미신청
⑨ 기타 특이사항			
⑩ 추천기관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신 청 일: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별첨: 작성 시 유의사항(뒷면)

<뒷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작성요령

- ① 연 령(만):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 ② (이주 전) 거주지: 귀농 전에 거주했던 지역을 간략하게 기재
- ③ 기 이수 귀농교육 과정명: 우선순위 선정 시 활용, 해당 시군은 필요 시 귀농 교육기관에 사실 여부 확인
- ④ 연수희망작목: 연수를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 ⑤ 연수희망지역: 연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읍·면 단위로 기입
- 희망 선도농가(농업법인)가 있을 시 기재 가능
- ⑥ 연수희망기간: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 수로 표기 하되, 연수 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3월~12월)
- ⑦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 선도농가와 의 약정체결 시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별지 사용 가능)
- ⑧ 만 40세 미만의 경우: 농식품부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사실 여부에 반드시 체크
- ⑨ 기타 특이사항: 선도농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⑩ 추천기관 확인란: 신청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 총괄부서에서 연수신청서 사전 확인·보완 후 추천 가능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4]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시스템입력)

☐ 연수개요

시군명	연수생		선도농가 성명(예상)	현장실습기간 (희망기간)	희망 연수작목
	성명	귀농연월			
		ex)2022.3		ex)4.1 ~ 9.30	

☐ 현장실습교육 동기(목적)

☐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3가지 이상)

【농업기술, 사업화기술, 사업마인드, 관계강화 등】

-
-
-
-

☐ 선도농가에게 바라는 점

[붙임 5]

<알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① 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② 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 연수가능지역						
④ 연수가능기간						
⑤ 자기소개	1. 주작목의 영농규모 2. 전체 영농규모 3. 영농경력(년)					
⑥ 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						
⑦ 기타 특이사항						
⑧ 추천기관(단체)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2026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침에 따라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별첨: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뒷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 ① 신청자: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② 연수가능작목: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 기입
- ③ 연수가능지역: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
- ④ 연수가능기간: 연수가능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 수로 표기 하되, 연수 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3월~12월)
- ⑤ 자기소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근거로 이용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농규모, 영농경력, 매출액 등을 상세히 기재(필요시 별지에 작성 가능)
- ⑥ 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 현장실습교육의 연수 과정 및 연수 방법 등을 기재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 ⑦ 기타 특이사항: 연수에 있어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⑧ 확인란: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연수시행자(선도농가) 후보자를 확인할 시 후보자의 자질과 소양, 영농기술 수준, 연수 관련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함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6]

<앞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① 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 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 연수가능기간				
④ 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⑤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⑥ 월별 실습사항				
⑦ 실습 기대효과				
⑧ 추천기관(단체)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2026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일: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뒷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작성요령

- ① 신청자: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② 연수가능작목: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 기입
- ③ 연수가능기간: 연수가능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 수로 표기 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3월~12월)
- ④ 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연수생이 선도농가를 선택하는 판단 자료로 이용 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
- ⑤ 교육의 주요 내용 및 목표: 연수생에게 제공하는 연수 내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⑥ 월별 실습사항: 연수가능기간 내에 월별로 진행할 주요 현장실습사항 기재
- ⑦ 실습 기대효과: 연수가능기간 내에 현장실습 수행시 기대되는 영농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재
- ⑧ 확인란: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선도농가 후보자의 운영계획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선도농가 후보자와 협의·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7]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시스템 입력)

구 분	주 요 내 용							기타 사항
개 요	시군명	선도농가		연수생 성명 (예상)	연수희망기간		연수 지원 작목	
		성명	영농연월		시작일	종료일		
핵심 생산기술								
경영·유통 및 창업								
농촌적응 노하우								
견학·지인 소개								
기대효과								

[붙임 8]

현장실습 보고서(시스템 입력)

○ 사업개요

구분	이름	작목	계약기간	월 교육일 수	규모(m ³)
연수생					
선도농가					

○ 경영계획, 실천, 점검(To Do List)

* 연수생 작성

번호	경영계획	경영실천(창업접목)
1		
2		
3		
4		
5		

○ 향후 계획 및 시사점

선도농업인	연수생

○ 농업경영 코칭

* 시군 담당자 작성

	담당자 확인 (서명)
2026년 월 일	

[붙임 9]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농촌진흥청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현장실습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협약 기간 중은 물론, 협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절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농촌진흥청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담당공무원의 운영지침 상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3. 농촌진흥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현장실습교육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현장실습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성실한 자세로 현장실습교육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붙임 10]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상기 본인은 농촌진흥청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붙임 1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현황

(단위: ha, 마리, 년)

성명	연령 (만)	전화번호	이메일	영농규모 등			
				주작목명	주작목 영농규모	전체 영농규모	영농 경력

< 작성요령 >

- 성명: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기재
- 나이: 2026년 1월 1일 기준
- 영농규모: 농지·시설하우스·축사 등은 평 또는 ha 기준, 가축은 두수
- 영농경력: 년 단위

[붙임 12]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표준)약정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장을 “갑”이라 하고, 선도농가 ()를 “을”이라 하며, 연수생 ()을 “병”이라 하며,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개월)

2. 약정내용

제1조(총칙) “을”은 “병”에 대하여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상의 내용을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 “병”은 “을”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이수한다.

제2조(약정의 해약) ① “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 할 수 있다.

1. “을” 또는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약정을 무효로 한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허위연수 적발 등 “을” 또는 “병”의 귀책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4.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약정이 무효화 되었을 경우 “갑”은 “을” 또는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기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한다.

③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을” 또는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연수생과 선도농가) ① “병”은 당초 “을”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실제 연수 내용 등이 현저히 다를 경우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 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은 “병”이 당초 “을”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연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 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을”과 “병”간에 연수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을”과 “병”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을”은 현장실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고 예방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병”은 “을”의 지시에 따라 현장실습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 ⑤ “병”은 현장실습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을”은 “병”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손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을”과 “병”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 “을”과 “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보조금의 지급 중단, 연수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특약)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촌진흥청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 “을”,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 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 특약사항: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갑”, “을”, “병”이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갑”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을” 선도농가 성명:
 “병” 연 수 생 성명: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붙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1부.

[붙임 13]

<앞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

① 선도농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 연수생	(성명)	(생년월일)
③ 연수작목	(주작목)	(부작목)
총 연수기간		
④ 보고연수기간		
⑤ 교육의 주요 내용		
⑥ 기타 특이사항		
⑦ 종합검토의견		

2026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인)

〇〇〇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뒷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 작성요령

- ① 선도농가: 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② 연수생: 연수생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 ③ 연수작목: 연수를 제공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 ④ 보고연수기간: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하는 연수 기간을 기입(결과 보고서에서는 전체 연수기간과 동일)
- ⑤ 교육의 주요 내용: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 ⑥ 기타 특이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 * 추진상황 점검시 연수생이 없을 경우 부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외출계 등)
- ⑦ 종합검토의견: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할) 사항을 기입

[붙임 14]

()월 연수생 교육지원비 청구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은행계좌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				
	총연수기간	~ (개월)		교육일수	(일)	
				교육시간	(시간)	
연수작목	(주작목) (부작목)					

교육훈련 내용	
------------	--

위와 같이 연수생 현장실습에 따른 교육지원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연수생 (서명 또는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연수약정서 사본(기 제출 시 생략)
2. 통장 사본
3. 현장실습보고서(시스템 입력)

[붙임 15]

* 출석관리시스템 오류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사용

[illegible]

※ 확인란에 선도농가가 일일 출결 확인(출·퇴근시간 기입) 후 직접 서명

[붙임 16]

현장실습교육 실습일지(연수생 작성)

(※ 해당 작업내용에 ☒ 표시후 학습내역 작성)

일 자	학 습 구 분		확 인
월 일	☐ 농약 ☐ 비료 ☐ 제초 ☐ 파종 ☐ 작물관리 ☐ 환경관리 ☐ 수확·선별 ☐ 기타 ()		
	학습시간	학습내용	
	※ 필요시 사진 첨부		
월 일	☐ 농약 ☐ 비료 ☐ 제초 ☐ 파종 ☐ 작물관리 ☐ 환경관리 ☐ 수확·선별 ☐ 기타 ()		
	학습시간	학습내용	
	※ 필요시 사진 첨부		

* 시군센터 여건에 맞게 경영일지 등으로 대체 가능

[붙임 17]

()월 선도농가 교육지원비 청구서

사업장명		대표자	
------	--	-----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소재지		연락처	()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	---------------------

신청 대상기간	신청금액	원
연수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연수기간
	교육일수	교육시간
	청구금액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연수생 현장실습 교육시행에 따른 교육지원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선도농가

(서명 또는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연수약정서 사본(기 제출시 생략)
2. 통장 사본
3. 현장실습보고서(시스템 입력)

[붙임 18]

<앞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추진실적(결과) 보고서

① 선도농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 연수생	(성명)	(생년월일)
③ 연수작목	(주작목)	(부작목)
전체연수기간		
④ 보고연수기간		
⑤ 교육의 주요 내용		
⑥ 기타 특이사항		

2026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추진 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선도농가는 매월 추진실적 보고, 사업종료 시에는 결과보고서로 제출
(단, 시스템 보고자는 생략 가능)

2026년 월 일

보고자(선도농가):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뒷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실적(결과) 보고서 작성요령

- ① 선도농가: 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② 연수생: 연수생이 2인일 경우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
- ③ 연수작목: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 ④ 보고연수기간: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 기간을 기입
(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 연수기간과 동일)
- ⑤ 교육의 주요 내용: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 ⑥ 기타 특이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붙임 19]

제 호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 증명서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연 수 기 간 : ~ (총 시간)

연 수 작 목 :

위 사람은 농촌진흥청이 시행하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참가하여 그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붙임 20]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생 관리대장

No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주소	연수작목	연수기간(개월)	영농현황 (실습종료시)			영농현황 (실습종료 1년 후)			영농현황 (실습종료 2년 후)		
								영농중	영농진입준비	추후결정	영농중	영농진입준비	추후결정	영농중	영농진입준비	추후결정
1	홍길동	남	2000.1.1.	000-0000-0000	전주시	사과	2021.5.1.~9.30. (5개월)			○		○		○		
2																
3																
4																
5																
6																
7																
8																
9																
10																
11																
12																

*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 후 2년간 사후관리 실시

참고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 계획 및 실적 종합관리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교육 추진 계획 및 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양식 1, 2 활용>

□ 행정사항

○ 공문 제출

- 농업인교육 추진결과 종합<양식 1>: 상반기 '26. 6. 12.까지, 하반기 '26. 11. 13.까지

<관리 총괄표>

구 분	e-HRD 시스템 등록	ASTIS 등록
농업인대학 운영	○교육과정 등록(필수): 교육 전 ○수료생 등록: 교육 후 2주 이내 ○교육실적 입력: 교육 후 2주 이내	○계획: 3.14. ○결과보고: 2회(상반기 6.13, 하반기 11.14.)
농업기술전문교육	○교육과정 등록(필수): 교육 전 ○수료생 등록: 교육 후 2주 이내 ○교육실적 입력: 교육 후 2주 이내	○계획: 3.13. ○결과보고: 2회(상반기 6.12, 하반기 11.13.)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육과정 등록(필수): 교육 전 ○수료생 등록: 교육 후 2주 이내 ○교육실적 입력: 교육 후 2주 이내	○계획: '25.11.17. ○결과보고: 3회(월 1회) (25년 12월 말, 26년 1월 말, 26년 2월 말)
신규농업인 영농기술향상		
기초영농기술교육	○교육과정 등록(필수): 교육 전 ○수료생 등록: 교육 후 2주 이내 ○교육실적 입력: 교육 후 2주 이내	○계획: 2.20. ○결과보고: 2회(상반기 6.26, 하반기 11.20.)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과정 등록(담당자): 교육 전 ○회원가입(사업대상자): 선정 후 1주 이내 ○사업자 매칭(담당자): 약정 후 1주 이내 ○월별보고서 등록(사업대상자) ○수료생 등록(담당자): 교육 후 2주 이내	○계획: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시 ○결과보고: 1회 (하반기 11.13.)

○ ASTIS(농촌지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사업계획 등록·승인: 농진청 등록(~1월 중순)→도원등록(~2월 중순)→ 시군센터 등록(~3월 중순)→도원승인(~3월 하순)→농진청 승인(3월 말)

- 결과보고: '26. 11. 13.까지

<양식 1>

농업인교육 추진결과 종합(○○도/○○사·군)

○ 농업인교육 추진결과(종합): 2026년 11월 13일까지 제출(ASTIS 및 공문)

구 분			인원(명)			예산(천원)		주요내용
			계	남	여	국비	지방비	
합계								
도 농 업 기 술 원	대분류	소계						
	심화	농업인대학						도별 농업인대학 교육
	전문	품목기술교육						품목교육, 자격교육 등
		스마트농업교육						스마트농업 공통, 품목별 교육 등
		지역특화품목교육						지역특화소득품목 교육
	실용	신규농업인교육						기초영농기술 등
	입문	농업기초소양교육						친농업 마인드, 초중고생 및 일반 소비자 교육 등
	기타교육							이러닝 등
시 군 농 업 기 술 센 터	대분류	소계						
	심화	농업인대학						시군별 농업인대학 교육
	전문	품목기술교육						품목연구회 등 품목교육
		스마트농업교육						스마트농업 공통, 품목별 교육 등
		당면과제 현장교육						당면과제, 애로기술해결
		경영·마케팅교육						컨설팅 등
		GAP교육						GAP관련제도 및 기술
		농식품 가공						농식품가공 이용방법
		농약안전관리						농약안전사용 및 관리기술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실용	신규농업인교육						신규농업인교육 및 멘토링 등
		디지털정보화교육						인터넷, SNS활용 마케팅, 정보화 교육
	안정	영농체험교육						원예치유 기술 교육 등
		여성농업인교육						농촌자원활용 및 영농기술, 전통 식문화 등
		지역융합활성화교육						축제, 박람회, 체험활동 등
	입문	농업기초소양교육						친농업 마인드, 초중고생 및 일반 소비자 교육 등
	기타교육							공익직불제 교육 등

- ※ 1. 농업인대학은 5개월~1년과정(70~150시간)의 교육으로 인원은 수료생 인원으로 표기
 2. 신규농업인교육은 기초영농기술교육과 현장실습교육 인원을 합산하여 표기(누적인원 아님)
 3. 농업기계 안전교육 실적은 제외
 4. 기타교육: 대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농업·농촌 관련교육
- ※ 농업인 기술수준별 교육체계에 따라 입문·안정·실용은 초급, 전문·심화는 중급 적용
- ※ 양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양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교육 참여자의 학습이력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연락처, 성별, 주소	교육이력관리 및 교육정보제공	교육 종료 후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정보는 교육 이력 관리 필수적인 항목으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교육이력관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된 농업인 교육 이력관리 및 교육만족도 조사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연락처, 성별	교육 종료 후 2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교육 이력 관리 이용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업기술센터 귀하

2026년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2026년 2월 일 인쇄

2026년 2월 일 발행

발행인 | 농업기술원장 성 제 훈

감수인 | 기술보급국장 조 정 주

편집인 | 지도정책과장 최 하 영

지도기획팀장 이 광 빈

기획담당자 윤 대 훈

발행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

전화 (031) 8008-9382
